

# 이주배경 아동·청소년 행정자료 연계 및 법제화방안 연구

양계민



---

연구보고 21-R25

---

# 이주배경 아동·청소년 행정자료 연계 및 법제화방안 연구

---

저 자 양계민

연구진 연구책임자\_양계민(한국청소년정책연구원 선임연구위원)  
연구보조원\_정진영(한국청소년정책연구원 연구사업운영원)



## 연구요약

### 1. 연구목적

- 이주배경 아동·청소년의 현황파악을 위한 행정통계 연계결과를 점검하고 정확성 제고방안을 모색함.
- 이주배경 아동·청소년 현황파악 및 실태조사를 위한 법제화방안을 도출함.

### 2. 연구방법

- 문헌연구

문헌연구에서는 기존의 이주배경 아동·청소년 현황통계 생성과 관련한 선행연구, 부처의 자료, 청소년복지 지원법, 초·중등교육법, 출입국관리법 등 관련 법안 및 시행령을 검토함.

- 전문가자문회의

전문가 자문회의는 이주배경 아동·청소년 전문가, 통계전문가, 법률전문가 등을 대상으로 총 5회 실시되었고, 이주배경 아동·청소년 현황통계 데이터의 정밀성 제고를 위한 구체적 방안 및 법제화방안 모색을 중심으로 추진됨.

- 전문가의견조사

이주배경 아동·청소년 전문가, 이주 및 통계전문가, 탈북청소년 전문가, 법률전문가 등 총 35명의 국내 전문가들을 대상으로 이주배경 아동·청소년의 통계 구축 정확성 제고를 위한 방안, 추후 개선과제, 현재 행정통계의 한계, 법제화방안의 방향성 등에 대하여 서면의견조사를 실시함.

- 정책실무협의회

통계청, 여성가족부와 정책실무협의회를 통하여 이주배경 아동·청소년 행정자료 연계 추진과정을 모니터링하고 현재 자료의 한계를 파악하였으며 현재의 행정 데이터로 산출되지 않는 사각지대 규모를 파악하기 위한 방안을 논의하였고, 여성가족부와 의 실무협의회에서는 청소년복지 지원법 개정과 이주배경 아동·청소년지원법 제정의 방향과 주요 내용을 논의함.

### 3. 주요결과

#### 1) 이주배경 아동·청소년 현황통계 정확성 제고방안

- 이주배경 아동·청소년 통계구축 관련 연구추진 결과, 교육부와 여성가족부간 대상에 대한 정의를 논의하였고, 통일부와 교육부의 통계조사시점을 통일하게 되었으며, 행정통계 연계를 통한 이주배경 아동·청소년의 규모 파악을 시도함.
- 이를 통해 기존의 조사통계로 산출되던 교육부의 다문화학생 통계를 행정자료를 근거로 산출할 수 있는 기반을 마련했다는 점, 데이터의 정확성을 제고할 수 있게 되었다는 점, 교사들의 업무를 경감시키는 데 기여했다는 점, 특히 교육부의 경우 행정통계를 활용하여 이주배경 아동·청소년의 학업중단율을 산출하게 되는 등의 성과를 도출함.
- 그럼에도 불구하고 현재의 행정자료로는 외국인가정자녀의 경우 부모의 배경특성과 본인의 출생지를 정확히 파악하기 어려운 상태이고, 제3국 출생 탈북청소년의 규모와 국내출생 미등록 이주아동의 규모를 파악하는 데는 한계가 있는 것으로 나타남.

- 결론적으로 다음과 같이 세 가지 방안을 제시함.

첫째, 외국인가정의 가족관계를 파악할 수 있는 방안으로 통계청의 이민자·

외국인통계등록부를 가구단위로 생성하는 방안

둘째, 제3국 출생 탈북청소년 통계구축을 위하여 통일부 하나넷에 있는 북한

이탈주민자료를 가구단위 통계로 생성하는 방안

셋째, 국내출생 미등록 이주아동의 규모를 파악하기 위하여 출생등록제와

개인식별번호부여, 한시적 체류자격부여 등 다각적 모색

## 2) 이주배경 아동·청소년 통계구축을 위한 법제화방안

- 법제화방안에서 이주배경 아동·청소년지원법의 통계작성 관련 조항을 제안함.

- 이주배경 아동·청소년지원법의 제정(안)에서 제시한 조항은 다음과 같음

- 이주배경 아동·청소년지원법의 목적
- 이주배경 아동·청소년지원법의 정의
- 국가와 지방자치단체의 책무
- 기본계획 수립 등
- 이주배경 아동·청소년에 대한 지원
- 현황조사 및 실태조사
- 이주배경 아동·청소년통계센터 지정 및 업무위탁



# 이주배경 아동·청소년 행정 자료 연계 및 법제화방안 연구

연구보고 21-R25

## I. 서론

- 1. 연구의 필요성 및 목적 ..... 3
- 2. 연구내용 ..... 5
- 3. 연구방법 ..... 6

## II. 이론적 배경

- 1. 이주배경 아동·청소년의 개념과 범위 ..... 13
- 2. 이주배경 아동·청소년 관련 통계현황 ..... 16
- 3. 소결 ..... 19

## III. 이주배경 아동·청소년 통계 정확성 제고방안

- 1. 이주배경 아동·청소년 통계구축 관련 연구 추진경과 · 23
- 2. 이주배경 아동·청소년 행정자료 연계의 성과와 한계 · 31
- 3. 이주배경 아동·청소년 행정자료 연계의 정확성  
제고방안 모색 ..... 35
- 4. 행정통계 연계를 통한 이주배경 아동·청소년 현황통계  
정확성 제고방안 ..... 60

#### **IV. 이주배경 아동·청소년 통계작성을 위한 법제화방안**

1. 이주배경 아동·청소년 현황통계 및 실태조사  
법제화의 필요성 ..... 65
2. 이주배경 아동·청소년 현황통계 및 실태조사  
관련법 검토 ..... 66
3. 전문가 의견조사 ..... 67
4. 이주배경 아동·청소년 현황통계 및 실태조사  
법제화방안 ..... 89

**참고문헌** ..... 97

**국문초록** ..... 101

**ABSTRACT** ..... 102

## 표 목차

표 Ⅰ-1. 전문가 자문회의 현황	6
표 Ⅰ-2. 전문가 의견수렴 참여자 명단 (영역별, 가나다순)	7
표 Ⅰ-3. 정책실무협의회 현황	9
표 Ⅱ-1. 이주배경 아동·청소년 정의에 따른 유형	14
표 Ⅱ-2. 이주배경 아동·청소년의 하위범주별 포함대상 및 특성	15
표 Ⅱ-3. 이주배경 아동·청소년 관련 통계 비교	18
표 Ⅲ-1. 이주배경 아동·청소년 통계구축 관련 연구추진경과	25
표 Ⅲ-2. 이주배경 아동·청소년 행정자료 연계를 위한 부처관계자 실무협의회 추진경과	27
표 Ⅲ-3. 이주배경 아동·청소년 현황통계 집계항목(안)	29
표 Ⅲ-4. 행정자료 연계를 통한 이주배경 아동·청소년 통합자료(예시)	31
표 Ⅲ-5. 부처별 행정통계 연계 결과활용방안 협의 결과	33
표 Ⅲ-6. 보건복지부 자료 연계방안에 대한 의견	37
표 Ⅲ-7. 기타 이주배경 아동·청소년 현황파악을 위한 행정통계 연계방안	43
표 Ⅲ-8. 제3국 출생 탈북배경 청소년 규모파악의 필요성과 근거	45
표 Ⅲ-9. 현재의 행정통계 연계 이외의 이주배경 아동·청소년 규모 파악 방안	50
표 Ⅲ-10. 임시식별번호 활용확대방안에 대한 의견	53
표 Ⅲ-11. 출생등록제 도입에 대한 의견	56
표 Ⅲ-12. 탈북자와 외국인가정 자녀의 분류에 대한 의견	59
표 Ⅳ-1. 이주배경 아동·청소년 관련 법률 특성 비교	66
표 Ⅳ-2. 전문가 의견수렴 참여자 명단 (영역별, 가나다순)	68
표 Ⅳ-3. 이주배경 아동·청소년 관련 기존 법안의 특성 및 한계	71
표 Ⅳ-4. 이주배경 아동·청소년의 통계 관련 조항 포함에 적합한 법안	78
표 Ⅳ-5. 탈북배경청소년을 포함할 경우의 주요 이슈	82

표 IV-6. 이주배경 아동·청소년지원법 제정 시 포함범위 .....	86
표 IV-7. 이주배경 아동·청소년지원법 제정 시 포함해야 할 내용 .....	88

## 그림 목차

그림 Ⅲ-1. 이주배경 아동·청소년 현황통계 생성을 위한 자료연계(안) ... 30



# ○ — 제 I 장 서 론

- 1. 연구의 필요성 및 목적
- 2. 연구내용
- 3. 연구방법



## 1. 연구의 필요성 및 목적

국내 이주배경을 지닌 인구의 수는 매년 증가하고 있다. 그 중 아동·청소년의 연령층에 속하는 이주배경 아동·청소년의 수 역시 증가하고 있으며, 이들의 올바른 성장은 그들의 기본적인 권리 측면에서 뿐 아니라 한국사회의 사회통합과 발전 측면에서도 중요한 문제라는 점에서 우리 사회의 중요한 이슈로 다루어지고 있다. 이주배경 아동·청소년이 우리사회에 등장했던 초기에는 이주배경 아동·청소년정책의 방향성이나 원칙에 근거하기 보다는 그때그때 현장에서 발생하는 문제를 해결하는 방식으로 정책과제들이 추진되었고, 이주배경 아동·청소년들을 하나의 동질적인 집단으로 인식하여 이들 집단에 대한 고정관념에 근거한 정책들이 추진되었다. 그러나 시간이 지나고 이주배경 아동·청소년 정책도 15년 이상 꾸준히 발전한 결과, 최근에는 이주배경 아동·청소년의 배경특성에 따른 발달특성의 차이를 인식하고, 고정관념에 근거한 일률적 지원은 지양되어야 한다는 사회적 인식이 어느 정도 자리 잡힌 것으로 보인다.

우리 사회의 이주배경 아동·청소년정책이 현재보다 더 발전하기 위하여 현재 시점에서 해야 할 일은 근거기반 정책추진의 기반을 마련하는 일이다. 지금까지의 이주배경 아동·청소년정책은 객관적 자료에 근거했다기보다 현장과 전문가들의 의견 및 사례에 근거한 정책이었다고 볼 수 있다. 그러나 이제는 그러한 정책들이 어느 정도 정착되어 큰 틀은 마련된 것으로 평가할 수 있다. 이제는 좀 더 근본적으

로 이주배경 아동·청소년에 대한 별도의 지원정책이 필요한가에 대한 근거부터, 별도의 지원정책이 필요하다면 어떤 특성을 지닌 집단이 지원을 필요로 하는지, 어떤 영역에서 지원이 필요한지 등 정확한 정책지점을 찾아 집중하는 정책효율화 방안에 대한 모색이 필요한 단계에 이르렀다. 이를 위해서는 이주배경 아동·청소년의 실태를 객관적으로 파악하는 일이 필요하고, 그보다 먼저 국내에 이주배경 아동·청소년이 얼마나 되는지를 정확히 파악하는 작업이 선행될 필요가 있다. 물론, 현재에도 이주배경 아동·청소년의 규모는 매년 산출되고 있다. 그러나 부처마다 대상의 범위와 연령, 통계기준시점 등이 서로 다르며, 국내의 모든 이주배경 아동·청소년을 포괄하지 못한다는 한계를 지니고 있다.

이에 한국청소년정책연구원에서는 이주배경 아동·청소년 대상 근거기반 정책 추진을 위해서 정확한 현황을 파악하는 작업을 우선적으로 추진할 필요성을 인식하고, 2021년도 경제인문사회연구회 협동과제로「이주배경 아동·청소년 현황통계 생성을 위한 행정자료 연계방안연구」를 수행하였다. 이 연구를 통하여 행정안전부, 법무부, 교육부, 통일부의 이주배경 아동·청소년 관련 행정자료를 연계하는 작업을 추진하였다. 그 결과 통계청의 주도로 연계작업을 추진하였고, 어느 정도 성과가 있었으나 현실적인 한계로 여전히 규모를 파악할 수 없는 사각지대가 존재하고 있는 바, 보다 정확한 행정자료가 연계되기 위하여 추가적으로 필요한 부분에 대해 고민하고, 이를 위한 법적 기반을 더 구체화할 필요가 있다.

이주배경 아동·청소년 관련 업무는 다부처 정책인 관계로 행정통계 연계를 통한 현황데이터 구축을 위해서는 각 부처와의 개별적 의사소통과정 등 많은 절차와 시간이 필요한 작업이다. 따라서 이미 부처별 합의가 이루어졌음에도 불구하고 단계별로 세밀하게 추진해야 할 부분이 여전히 존재한다. 따라서 본 과제를 통하여 현재까지 연계된 데이터의 현황을 파악하고, 기존의 연계된 데이터 이외의 부처데이터를 연계하는 작업 및 법제화방안까지를 추진함으로써 이주배경 아동·청소년의 현황통계 구축을 위한 실질적 성과를 도출하고자 하였다.

이러한 필요성에 근거하여 연구의 목적을 요약하면 다음과 같다.

첫째, 이주배경 아동·청소년의 현황파악을 위한 행정통계 연계 결과를 점검하고 정확성 제고방안을 모색한다.

둘째, 이주배경 아동·청소년 현황파악 및 실태조사를 위한 법제화방안을 도출한다.

## 2. 연구내용

본 연구의 주요 내용은 크게 두 가지이다.

### 1) 국내 이주배경 아동·청소년 현황통계의 정확성 제고방안 모색

첫째는 국내 이주배경 아동·청소년 현황통계의 정확성 제고방안을 모색하는 것으로, 현재까지 구축된 통계청, 교육부, 통일부 행정자료의 연계현황을 분석하고, 현재 수준에서 나타난 데이터의 사각지대를 해소하고 통계의 정확성을 제고하기 위한 방안을 모색하고자 하였다.

### 2) 이주배경 아동·청소년 통계 생성 및 공표를 위한 법제화방안 모색

두 번째는 이주배경 아동·청소년의 통계 생성 및 공표를 위한 법제화방안을 모색하는 것으로, 현재까지 연계된 데이터 이외에 추가로 필요한 부처데이터를 연계하고, 안정적으로 현황통계 생성을 추진하기 위한 법제화방안을 마련하고자 하였다. 또한 현황통계뿐 아니라 이주배경 아동·청소년 실태를 파악하기 위한 근거도 포함하는 법적기반을 마련하기 위하여 청소년복지 지원법의 개정방안과 이주배경 아동·청소년지원법의 신규 제정방안을 모색하고자 하였다.

### 3. 연구방법

#### 1) 문헌연구

문헌연구에서는 기존의 이주배경 아동·청소년 현황통계 생성과 관련한 선행연구, 부처의 자료, 청소년복지 지원법, 초·중등교육법, 출입국관리법 등 관련 법안 및 시행령을 검토하였다.

#### 2) 전문가 자문회의

전문가 자문회의는 이주배경 아동·청소년 현황통계 데이터의 정밀성 제고를 위한 구체적 방안 및 법제화방안의 내용을 중심으로 추진되었다. 이주배경 아동·청소년 전문가, 통계전문가, 이주배경 아동·청소년 관련 법전문가 등을 대상으로 총 5회 추진되었다. 전문가 자문회의를 통하여 현재까지 구축된 데이터의 한계를 극복하고 더욱 정확한 이주배경 아동·청소년 통계를 구축할 수 있는 방안 및 이주배경 아동·청소년 관련 현황통계 및 실태조사 등 정기적 통계산출을 위하여 필요한 법적 근거를 마련하고자 하였다.

표 1-1. 전문가 자문회의 현황

연번	날짜	주제	참석자(연구진 제외)
1	2021.11.22	이주배경 아동·청소년 관련 법제화의 주요 이슈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강○○(○○시건강가정다문화가족지원센터, 센터장)</li> <li>허○○(○○시글로벌청소년드림센터, 부센터장)</li> </ul>
2	2021.12.7	이주배경 아동·청소년 행정자료 지속적 연계를 위한 과제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장○○(○○대학교, 조교수)</li> </ul>
3	2021.12.7	이주배경 아동·청소년 행정자료 연계를 위한 차후 정책방안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임○○(○○개발원, 선임연구위원)</li> </ul>
4	2021.12.8	이주배경 아동·청소년지원법 제정을 위한 요건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최○○(한국○○연구원, 연구위원)</li> </ul>
5	2021.12.8	미등록 이주아동 행정통계 연계방안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마○○(사단법인 ○○, 변호사)</li> <li>이○○(이주민지원기관○○, 변호사)</li> </ul>

### 3) 전문가 의견조사

세 번째로, 본 연구의 목적을 위하여 이주배경 아동·청소년 전문가, 이주 및 통계전문가, 탈북청소년 전문가, 법전문가 등 총 35명의 국내 전문가들을 대상으로 이주배경 아동·청소년의 통계구축의 정확성 제고를 위한 방안, 추후 개선과제, 현재 행정통계의 한계, 법제화방안의 방향성 등에 대한 서면의견조사를 통하여 연구의 타당성을 확보하고자 하였다.

표 1-2. 전문가 의견수렴 참여자 명단 (영역별, 가나다순)

영역	연번	이름	소속
이주배경 청소년 전문가	1	강○○	□□건강가정다문화가족지원센터, 센터장
	2	김○○	□□연구소, 연구위원
	3	김○○	서울□□청소년센터, 센터장
	4	김○○	□□청소년지원재단, 소장
	5	김○○	한국□□연구원, 연구위원
	6	신○○	서울시□□개발원, 원장
	7	오○○	경기도□□지원센터, 소장
	8	이○○	□□시청소년센터, 센터장
	9	장○○	□□대학교, 교수
	10	전○○	□□대학교, 교수
	11	조○○	□□대학교 교육대학원, 교수
	12	최○○	□□도여성가족재단, 부연구위원
	13	최○○	한국□□연구원, 연구위원
	14	허○○	□□시청소년드림센터, 부센터장
이주 및 통계 전문가	15	변○○	한국□□연구원, 연구위원
	16	오○○	한국□□개발원, 연구사업운영원
	17	유○○	한국□□연구원, 선임연구위원
	18	이○○	□□연구원, 연구위원
	19	임○○	한국□□개발원, 선임연구위원
	20	정○○	□□대학교 사회발전연구소, 객원연구원

영역	연번	이름	소속
	21	조○○	한국○○연구원, 부연구위원
	22	최○○	○○정책연구원, 연구위원
탈북청소년 전문가	23	김○○	한국○○개발원, 연구위원
	24	김○○	○○대학교, 연구교수
	25	윤○○	○○플랜, 연구원
	26	이○○	○○대학교, 교수
	27	장○○	○○재단, 조사개발팀장
	28	조○○	○○연구원, 선임연구위원
	29	최○○	○○도청, 평화대변인
법전문가	30	권○○	○○대학교 대학원, 조교수
	31	마○○	사단법인 ○○루, 변호사
	32	이○○	이주민센터 ○○, 변호사
	33	이○○	이주민센터 ○○, 변호사
	34	최○○	○○연구원, 연구위원
	35	최○○	○○연구원, 연구위원

#### 4) 정책실무협의회

마지막으로 본 연구에서는 통계청, 여성가족부와 정책실무협의회를 실시함으로써 이주배경 아동·청소년 행정자료 연계 추진과정을 모니터링하고 현재 자료의 한계를 파악하였으며 현재의 행정데이터로 산출되지 않는 사각지대 규모를 파악하기 위한 방안을 논의하였고, 여성가족부와 청소년복지 지원법 개정과 이주배경 아동·청소년지원법 제정의 방향과 주요 내용 및 향후 협조방안을 논의하였다.

표 | -3. 정책실무협의회 현황

연번	날짜	주제	참석자
1	2021. 9.10	이주배경 아동·청소년 통계 세부유형 검토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조○○(통계청 인구총조사과, 사무관)</li> <li>• 나○○(통계청 인구총조사과, 주무관)</li> <li>• 전○○(여성가족부 학교밖청소년지원과, 사무관)</li> <li>• 양○○(한국청소년정책연구원, 연구책임자)</li> </ul>
2	2021. 9.14	이주배경 아동·청소년 현황통계 지속적 연계 기반 마련 방안 논의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김○○(여성가족부 학교밖청소년지원과, 과장)</li> <li>• 전○○(여성가족부 학교밖청소년지원과, 사무관)</li> <li>• 김○○(한국청소년정책연구원, 기초본부장)</li> <li>• 양○○(한국청소년정책연구원, 연구책임자)</li> </ul>
3	2021. 12.6	이주배경 아동·청소년 현황통계 생성 및 실태 조사를 위한 법제화방안 및 정확성 제고방안 논의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전○○(여성가족부 학교밖청소년지원과, 사무관)</li> <li>• 김○○(이주배경청소년지원재단, 소장)</li> <li>• 양○○(한국청소년정책연구원, 연구책임자)</li> </ul>



## ○ ————— 제 II 장 이론적 배경

- 1. 이주배경 아동·청소년의 개념과 범위
- 2. 이주배경 아동·청소년 관련 통계현황
- 3. 소결



## 1. 이주배경 아동·청소년의 개념과 범위

본 연구의 목적은 앞에서 제시한 바와 같이 첫째, 이주배경 아동·청소년의 현황 파악을 위한 행정통계 연계의 결과를 점검하고 정확성 제고방안을 모색하며, 둘째, 이주배경 아동·청소년 현황파악 및 실태조사를 위한 법제화방안을 도출하는 것이다. 이를 위하여 우선적으로 이주배경 아동·청소년의 개념과 범위가 어떠한지를 먼저 정의할 필요가 있다. 이주배경 아동·청소년이란 “부모 또는 본인이 국경을 넘는 이주의 경험을 지닌 만 24세 이하의 연령에 속하는 자”로, 여기서의 국경을 넘는 이주란 반드시 외국만을 의미하는 것은 아니고 북한으로부터의 이주도 포함하는 개념이다(양계민 외, 2020: 21). 따라서 부모나 본인의 이주 경험이 외국뿐 아니라 북한인 경우도 포함이 되며, 탈북가정 자녀도 이주배경의 아동·청소년에 포함된다. 이주배경 아동·청소년들은 집단 내에서 매우 다양한 특성을 지니고 있는 집단으로 부모의 출신국(출신지)과 본인의 출신국(출신지)에 따라 다음과 같이 총 7개의 유형으로 구분될 수 있다.

1) 본 연구는 2021년도 경제인문사회협동과제로 추진된 「이주배경 아동·청소년 현황통계 생성을 위한 행정자료 연계방안 연구」의 연장선장에서 추진되는 과제로 해당 보고서의 2장 내용을 요약 제시함.

표 II-1. 이주배경 아동·청소년 정의에 따른 유형

본인출생지 부모배경	국내출생	국외출생
부모 중 한 명이 한국인	① 국내출생 국제결혼가정자녀	② 국외출생 국제결혼가정자녀
부모 모두 외국인	③ 국내출생 외국인가정자녀	④ 국외출생 외국인가정자녀
본인출생지 부모배경	남한출생	남한 외 출생
부모 중 한 명 이상이 북한이탈주민	⑤ 남한출생 탈북배경 아동·청소년	⑥ 북한출생 아동·청소년
북한이탈주민과 외국인 결혼가정		⑦ 제3국 출생 탈북배경 아동·청소년

출처 : 양계민 외(2020: 22). 포용사회구현을 위한 이주배경 아동·청소년 성장기회격차 해소방안연구: 통계구축방안을 중심으로

이 7가지 범주의 특성 및 포함되는 대상을 설명하면 다음과 같이 요약될 수 있다. 첫째는 국내출생 국제결혼가정자녀인데, 이들은 기존의 ‘다문화아동’ 또는 ‘다문화청소년’이라고 지칭되는 집단으로 부모 중 한 명은 한국인, 다른 한 명은 외국출신인 가정의 자녀로 본인이 국내에서 출생하였고 국적은 한국인인 청소년들이다. 이들은 이주배경 아동·청소년 중 가장 많은 분포를 차지하고 있는 집단이다. 두 번째 범주는 국외출생 국제결혼가정 자녀로, 교육부의 분류기준으로 ‘중도입국청소년’이라고 지칭되는 집단이다. 이들은 부모 중 한 명은 한국인이고 다른 한 명은 외국출신자인데, 본인이 외국에서 태어나서 일정 연령 이후 한국에 입국한 경우를 말한다. 이들 중 일부는 귀화를 통하여 한국 국적을 취득하기도 하고, 외국 국적을 그대로 가지고 있기도 하며, 따라서 체류의 안정성이 개인에 따라 다른 특징을 지닌다. 세 번째는 국내출생 외국인가정자녀로 부모 모두 외국 국적인 가정의 자녀로 본인 국적은 외국이나, 경우에 따라 미등록 무국적자도 있으며, 난민이나 유학생 자녀도 포함될 수 있다. 네 번째는 국외출생 외국인가정자녀인

데, 이들은 부모도 외국국적자이고, 본인도 외국 국적이며, 외국에서 태어나서 한국에 입국한 사례로, 최근 증가하고 있는 동포 자녀들이 해당된다. 이들 역시 미등록이나 난민, 유학생 자녀 등이 포함되며, 연령상 유학생도 포함될 수 있다. 이들 네 집단은 부모와 본인의 이주경험이 외국인 집단이고 나머지 세 집단은 북한 배경인 집단으로 다섯 번째 범주는 남한에서 출생하고 부모 중 한 명 이상이 탈북배경을 지닌 가정의 자녀이고, 여섯 번째는 「북한이탈주민의 보호 및 정착지원에 관한 법률」에서 정의하는 북한이탈주민으로 북한에서 출생을 하여 본인이 직접 남한으로 넘어온 집단을 말한다. 이들은 통일부의 지원대상이다. 마지막으로 일곱 번째에 제시된 제 3국 출생 탈북배경아동·청소년 범주는 북한을 이탈한 주민이 남한이 아닌 제 3국에서 해당국 주민과 결혼 후 자녀를 출산한 후 거주하다가 중간에 남한으로 입국한 가정의 자녀로, 대부분 부모 중 외국출신자의 국적은 중국인 경우가 많고, 본인도 중국에서 온 경우가 많아 중국인의 정체성을 지니기도 한다. 이들은 부모 중 한쪽은 북한이탈주민이지만 다른 한 쪽은 중국 등 외국이기 때문에 국외출생 국제결혼가정자녀로 구분되기도 한다.

표 II-2. 이주배경 아동·청소년의 하위범주별 포함대상 및 특성

하위 범주	포함 대상 및 특성
① 국내출생 국제결혼가정자녀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부모 중 한 명은 한국인인 국제결혼가정의 자녀</li> <li>• 국내출생자이며 한국인</li> <li>• ‘다문화청소년’이라고 지칭하기도 함.</li> </ul>
② 국외출생 국제결혼가정자녀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부모 중 한 명은 한국인인 국제결혼가정의 자녀</li> <li>• 외국출생자로 어느 정도 성장 후 한국에 입국</li> <li>• 귀화를 통한 한국국적자와 외국국적자 모두 존재</li> <li>• ‘중도입국청소년’이라고 지칭하기도 함.</li> </ul>
③ 국내출생 외국인가정자녀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부모 모두 외국 국적인 가정 자녀</li> <li>• 본인의 국적은 외국</li> <li>• 미등록, 무국적자, 난민, 유학생자녀 포함.</li> </ul>

하위 범주	포함 대상 및 특성
④ 국외출생 외국인가정자녀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부모 모두 외국 국적인 가정 자녀</li> <li>• 본인의 국적은 외국</li> <li>• 미등록, 난민, 유학생, 유학생 자녀 포함.</li> </ul>
⑤ 남한출생 탈북배경 아동·청소년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부모 중 한 명 이상이 북한이탈주민인 가정의 남한출생 자녀</li> </ul>
⑥ 북한출생 아동·청소년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북한에서 출생한 후 탈북한 아동·청소년</li> </ul>
⑦ 제3국 출생 탈북배경 아동·청소년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부모 중 한 사람이 북한이탈주민이고 다른 한 사람은 외국인</li> <li>• 남한, 북한 이외의 제 3국에서 출생</li> <li>• ‘중도입국청소년’으로 범주화되기도 함.</li> </ul>

출처 : 양계민 외(2020: 23). 포용사회구현을 위한 이주배경 아동·청소년 성장기회격차 해소방안연구 : 통계구축방안을 중심으로

본 연구에서는 2021년 초 경제인문사회연구회 협동과제로 추진한 「이주배경 아동·청소년 현황통계 생성을 위한 행정자료 연계방안 연구」에서 위 범주에 근거한 7개 범주에 따른 현황통계를 연계하여 산출하고자 하였다. 앞서서도 언급한 바와 같이 이 범주는 자신의 출생지와 부모의 출신지를 고려하여 구성한 이론적 틀로, 사실상 이 외에도 다른 더 구체적인 유형이 존재할 수 있다. 그러나 모든 소수의 유형들을 범주로 구성하는 것은 간명성 측면에서 바람직하지 못하고, 현재의 틀도 충분히 구체적이라고 생각되어, 현재로서는 이 범주를 통계 생성의 틀로 활용하고자 한다.

## 2. 이주배경 아동·청소년 관련 통계현황

이주배경 아동·청소년과 관련하여 국내 생산되는 현황통계로는 1)행정안전부의 지방자치단체 외국인주민 현황, 2)법무부의 출입국자 및 체류외국인 통계, 3)통계청의 인구주택총조사 등록센서스, 4)통일부의 북한이탈주민 통계, 5)교육부의

다문화학생 통계, 그리고 6)탈북학생 통계가 있다. 각각의 특성에 대해서는 이미 「이주배경 아동·청소년 현황통계 생성을 위한 행정자료 연계방안 연구」(양계민 외, 2021: 20-38)에서 분석 제시하였으므로, 본 연구에서는 본 연구와 관련한 결론만 간략히 요약 제시하고자 한다. 아래의 <표 II-3>에 나타난 바와 같이 이주배경 아동·청소년의 현황을 파악하는 통계는 총 6개로 요약될 수 있다. 이들 통계는 각 부처별로 통계의 목적에 따라 집계 대상이 서로 다르고 대상을 구분하는 기준도 다르며, 집계의 일자가 다르다. 또한 교육부의 다문화학생 통계와 탈북학생 통계는 행정통계가 아닌 조사통계로 행정안전부, 법무부, 통계청, 통일부의 통계와는 다르다. 따라서 본 연구에서 보고자 하는 이주배경 아동·청소년의 현황을 파악할 수 있는 통계는 현재 존재하지 않고 있으며, 각 통계별로 연계성이 낮아 기존의 통계를 통하여 이주배경 아동·청소년의 정확한 현황을 파악하는 일은 불가능한 상황이다. 아마도 본 연구에서 정의하는 이주배경 아동·청소년의 현황을 가장 정확히 파악하고 있는 통계는 교육부의 다문화학생 통계와 탈북학생 통계일 것이다. 물론 이들 통계는 학교에 재학 중인 학생들만이 포함된다는 점에서 한계가 있으나 가장 다양한 범주가 포함되어 있는 통계라고 볼 수 있다. 그러나 교육부의 다문화학생 통계와 탈북학생 통계는 매년 학교별로 교사가 조사를 하여 교육청으로 보고하고, 이 자료를 교육부에서 취합하는 과정을 거치고 있다. 따라서 조사의 정확성과 현장조사의 어려움이 문제로 제기되고 있다. 물론 매년 다문화학생 통계의 추이로 볼 때 신뢰할 수 없는 통계라고 보기는 어렵다. 그러나 초기와 달리 학교에서 다문화학생이나 탈북학생의 정체성을 드러내는 일이 민감한 문제로 취급되어 교사가 직접적으로 조사를 하는 일이 더 어려워졌고, 특별히 자신의 정체성을 드러내야 할 이유가 없고 외현 상 드러나지 않는 경우는 다문화 및 탈북정체성을 숨기는 일도 있는 등 더 이상 조사를 통한 현황통계를 작성하는 데는 한계가 있는 것으로 생각된다. 따라서 학교현장을 통한 조사통계가 아닌 행정통계로 보다 정확한 규모를 파악하는 일이 필요하며, 각각의 통계가 상호 분절적으로 제시되기

보다 하나의 연계성 있는 현황통계로 생성되어 정확한 이주배경 아동·청소년의 규모를 파악할 필요가 있다. 이를 통해 기존의 행정통계와 교육부의 행정통계를 연계하여 더 이상 조사를 하지 않아도 이주배경 아동·청소년의 전체 규모와 그 중 학교에 재학 중인 아동·청소년의 수, 학교밖 아동·청소년의 수 등을 유형별로 파악할 수 있는 시스템을 구축하는 것이 본 연구의 목적이었다.

표 11-3. 이주배경 아동·청소년 관련 통계 비교

구분	지방자치단체 외국인주민 현황	출입국자 및 체류외국인 통계	인구주택총조사 등록센서스	북한이탈 주민 통계	다문화학생 통계	탈북학생 통계
담당 부처	행정안전부	법무부	통계청	통일부	교육부	교육부
목적	국내 거주 중인 외국인주민 현 황 파악과 지역 사회 정착지원 을 위한 정책수 립의 기초자료 제공	출입국관리 업무 와 체류 외국인 의 관리 및 사회 통합 정책수립의 기초자료 제공	국내 거주 중인 모든 내·외국인 규모 및 특성 파 악과 정책수립 및 각종 조사의 표본 추출 관련 기본정보 제공	북한이탈주 민의 안정적 인 정착 및 자립지원을 위한 정책수 립의 기초자 료 제공	국내 교육기 관에 재학 중인 다문화 학생 현황 파악 및 교육 정책수립 기 초자료 제공	국내 교육 기관에 재학 중인 탈북 학생 현황 파악 및 정책 수립 기초 자료 제공
통계 대상	90일 초과하여 국내에 체류 중 인 외국인주민	수송수단 불문 출·입국절차를 필한 모든 내·외 국인(통과여객을 제외) 및 단·장기 체류 외국인	대한민국 영토 에 3개월 이상 체류 중인 모든 내·외국인	북한이탈주 민의 보호 및 정착지원에 관한 법률 제2조에 의해 정의되는 북한이탈주민	초·중·고, 각종학교에 재학 중인 다문화 학생	초·중·고, 기타학교, 전일제대안 교육시설에 재학 중인 탈북학생
통계 대상 구분	한국국적을 가지지 않은 자 /한국국적취득자 /외국인주민 자녀 /다문화가 가구원	출입국자 /등록외국인 /단기체류외국인 /외국국적동포 국내거주 신고자	일반가구/ 집단가구/ 외국인가구/ 다문화가구	탈북자	국제결혼가정 국내출생자녀 / 국제결혼가정 중도입국자녀 / 외국인가정 자녀	북한출생/ 제3국 출생
기준 시점	11월 1일 0시	12월 31일	11월 1일 0시	3월 말	4월 1일	매년 4월
통계 유형	행정통계	행정통계	행정통계	행정통계	조사통계	조사통계

출처: (양계민 외, 2021: 38)\*이주배경 아동·청소년 현황통계 생성을 위한 행정자료 연계방안연구\*의 표 2-12수정

### 3. 소결

지금까지 살펴본 바와 같이 본 연구에서 개념화하고 있는 이주배경 아동·청소년의 현황통계를 파악할 수 있는 통계는 존재하지 않는다. 그러나 이주배경 아동·청소년에 대한 근거기반 정책추진을 위해서는 이주배경 아동·청소년의 모집단을 파악할 수 있는 현황통계가 기본적으로 작성되어야 하고, 정확한 현황통계를 기반으로 대표성을 담보할 수 있는 실태조사가 추진될 필요가 있다. 따라서 그 첫 번째 단계로 기존의 여러 부처에서 각각 생산되고 있는 이주배경 아동·청소년 관련 행정통계를 연계하고자 2020년에서 2021년 초, 본 연구원에서 추진된 「이주배경 아동·청소년 현황통계 생성을 위한 행정자료 연계방안연구」에서 통계청의 인구주택총조사 등록센서스를 기본으로 하여 교육부의 나이스(NEIS), 통일부의 북한이탈주민현황(하나넷) 자료를 연계하고자 하였다. 그 결과 일차적으로 연계가 가능하였으나 부처별 개념정의 및 범주의 차이, 통계공표시점 등에서 차이가 있었고, 본 연구가 개념화한 7개 범주에 부합하는 유형으로 행정자료를 구분하기 어려운 점이 있었다. 따라서 3장에서는 현재까지 추진된 성과와 한계, 그리고 개선방안을 중심으로 기술하고자 한다.





# 제Ⅲ장 이주배경 아동· 청소년 통계 정확성 제고방안

- 1. 이주배경 아동·청소년 통계구축 관련 연구 추진경과
- 2. 이주배경 아동·청소년 행정자료 연계의 성과와 한계
- 3. 이주배경 아동·청소년 행정자료 연계의 정확성 제고방안 모색
- 4. 행정통계 연계를 통한 이주배경 아동·청소년 현황통계 정확성 제고방안



## 1. 이주배경 아동·청소년 통계구축 관련 연구 추진경과

본 연구는 2020년 한국청소년정책연구원 책임으로 추진된 경제인문사회연구회 협동과제 「포용사회구현을 위한 이주배경 아동·청소년 성장기회격차 해소방안 연구: 통계구축방안을 중심으로」부터 시작되었다. 당시 연구의 목적은 이주배경 아동·청소년의 성장기회 격차를 해소하기 위한 방안을 모색하는 것이었고, 이를 위한 방안 중 가장 기초적이고 근본적인 것으로 통계구축관련 방안을 모색하고자 하였다. 해당 연구에서는 이주배경 아동·청소년의 개념을 정의하고 하위 유형을 구분하여 정리하는 작업을 추진하였고, 당시 존재하는 이주배경 아동·청소년이 비(非)이주배경 아동·청소년과 실제 격차가 있는지를 분석하였으며, 국내 이주배경 아동·청소년의 규모를 파악할 수 있는 행정자료 연계방안을 모색하였다. 연구결과, 부처별로 생산되는 자료들이 서로 포함하는 대상과 명칭, 조사시기 등이 서로 다르며, 자료에 따라 행정자료이거나 조사자료 등 조사의 특성이 서로 다른 등 각각의 목적에 따라 서로 다르게 수집되고 있어 현재로써는 통계간의 연계가 되지 못하는 현실임을 확인하였다. 이에 부처별 행정자료를 연계하기 위한 방안을 모색하였고, 부처별 실무 담당자들과의 합의를 도출하였다. 또한 현재로써는 본 연구에서 개념화하고 있는 이주배경 아동·청소년 전체의 성장기회격차를 파악할 수 있는 조사가 존재하지 않고 있어 이주배경 아동·청소년과 비(非)이주배경 아동·청소년의 비교가 가능한 실태조사의 필요성을 제시하였다.

이와 같이 위 연구에서 제안한 내용이 사회적으로 매우 중요한 문제이고, 부처별 합의 사안이 지속적으로 추진될 필요가 있으며, 구체적 추진방안을 마련하여 실질적 성과를 도출해야 한다는 판단 하에 한국청소년정책연구원에서는 2021년 다시 경제인사회연구회 협동과제로 「이주배경 아동·청소년 현황통계 생성을 위한 행정자료 연계방안 연구」를 실시하였다. 이 연구는 두 가지 내용을 중심으로 추진되었다. 첫째는 이주배경 아동·청소년의 행정자료 연계방안과 관련하여 전년도 연구에서 합의된 내용을 현실화하는 작업을 여성가족부와 함께 추진하는 작업이었다. 그 결과 통계청, 교육부, 통일부 등의 데이터 연계에 착수하였고, 부처별 데이터 연계의 걸림돌이 될 수 있는 개인정보 보호법을 검토하였다. 두 번째로는 이주배경 아동·청소년의 현황통계와 실태조사 등 통계작성을 안정적으로 하기 위해서는 법적 근거가 필요하다는 전문가 의견과 연구진의 판단 하에 이주배경 아동·청소년 통계작성을 위한 법적 근거를 검토하였다.

이어서 여성가족부와 이주배경청소년지원재단의 수탁으로 본 연구원에서 이주배경 아동·청소년 실태조사를 실시하였는데, 본 연구에서 정의하고 있는 이주배경 아동·청소년 7개 유형에 근거한 총 4,089명을 대상으로 실태조사를 하고, 국내 청소년을 대표할 수 있는 조사인 여성가족부 ‘2020년 청소년종합실태조사’(김기현 외, 2021) 자료와 비교하였다. 그 결과 비(非)이주배경 아동·청소년과 발달상 차이가 있는 부분이 나타났고, 하위유형에 따라 발달특성이 서로 차이를 보여주었다.

마지막으로 본 연구인 「이주배경 아동·청소년 행정자료 연계 및 법제화방안 연구」는 이러한 연구들의 마지막 작업으로, 그 간 추진된 행정자료 연계작업의 현황을 검토하고, 여전히 해결되지 않은 문제들을 검토함으로써, 추후 이주배경 아동·청소년의 현황통계 생성을 위한 과제들을 도출하고, 안정적으로 통계를 생성할 수 있는 법적 근거를 보다 명확히 제시하고자 하였다.

표 III-1. 이주배경 아동·청소년 통계구축 관련 연구추진경과

연번	연구명	연구지원	주요연구 내용	제언 및 성과
1	포용사회구현을 위한 이주배경 아동·청소년 성장기회격차 해소방안연구 (2020년, 1월)	경제인문·사회 연구회 (협동과제)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이주배경 아동·청소년의 개념 및 유형 정리</li> <li>국내 이주배경 아동·청소년 규모추정</li> <li>국내 이주배경 아동·청소년 규모파악의 한계 분석</li> <li>기존 통계에 나타난 아동·청소년의 분야별 성장기회격차 현황파악</li> <li>해외 국가별 사례 분석</li> </ul>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이주배경 아동·청소년 개념정의</li> <li>이주배경 아동·청소년의 유형별 규모파악을 위한 행정자료 연계방안 제시</li> <li>부처별 행정자료 연계를 위한 합의 도출</li> <li>이주배경 아동·청소년 실태조사의 필요성 제시</li> </ul>
2	이주배경 아동·청소년 현황통계 생성을 위한 행정자료연계방안 연구 (2021년, 2월)	경제인문사회 연구회 (협동과제)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이주배경 아동·청소년 행정자료 연계방안 모색</li> <li>이주배경 아동·청소년 통계생산을 위한 법적 근거 방안 모색</li> </ul>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통계청 인구주택총조사 등록센서스 자료, 교육부의 NEIS, 통일부의 하나넷 데이터 연계추진</li> <li>이주배경 아동·청소년 행정자료 연계를 위한 개인정보 보호법, 통계법 검토</li> <li>이주배경 아동·청소년 통계작성을 위한 법적 근거방안 제시</li> </ul>
3	이주배경 아동·청소년 실태조사 (2021년 9월)	여성가족부 이주배경청소년 지원재단 (수탁과제)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이주배경 아동·청소년 7개 유형별 총 4,089명 대상 실태조사 실시</li> </ul>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이주배경 청소년의 유형별 다양한 특성 분석</li> <li>비(非)이주배경 아동·청소년과 비교</li> </ul>
4	이주배경 아동·청소년행정자료연계 및 법제화방안 연구 (2021년, 12월)	한국청소년정책연구원 (수시과제)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이주배경 아동·청소년 행정자료 연계를 위한 추후 과제</li> <li>이주배경 아동·청소년 통계생산을 위한 법적 근거 도출</li> </ul>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행정자료 현황분석 및 정밀화 방안 모색</li> <li>청소년 기본법과 이주배경 아동·청소년지원법(안) 제시</li> </ul>

## 1) 이주배경 아동·청소년 행정자료 연계를 위한 부처관계자 실무협의회 추진 경과

이주배경 아동·청소년 행정자료 연계를 위한 과제는 각 부처 담당자들과의 협의를 도출하는 일이 매우 중요하다. 실무자들의 실질적 협의가 없이는 서로 다른 부처의 행정자료를 연계하는 것은 불가능한 일이기 때문이다. 따라서 본 연구원에서는 여성가족부와 함께 연계를 위하여 아래의 <표 III-2>에 제시된 바와 같이 총 12차례의 실무협의회를 추진하였다. 1단계에서는 법무부, 통일부, 교육부 등에서 보유하고 있는 행정통계 현황을 파악하고, 행정자료 연계의 필요성을 공유하였으며, 최종적으로 통계청 주도로 각 부처의 행정자료를 연계하는 것에 대한 협의를 도출하였다.

2단계에서는 1단계에서 합의한 사항을 근거로 통계청, 교육부, 통일부의 데이터를 실질적으로 연계할 수 있는 방안을 논의하고, 실제 연계를 추진하도록 하였다. 그 결과 2021년 하반기에 통계청 인구주택총조사 등록센서스 자료와 교육부, 통일부의 데이터를 연계하는 1차 작업을 완수하였다. 1차 작업 완료 결과를 통계청과 검토한 결과 현재의 행정자료를 통하여 도출되기 어려운 유형들이 산출되었고, 이주배경 아동·청소년 집단의 다양성으로 인하여 특정한 범주에 포함시키기 어려운 유형이 발견되었으며, 국내출생 미등록 이주배경 아동·청소년의 파악은 여전히 어려운 상황임이 발견되었다.

따라서 본 연구에서는 현재 상황의 성과와 한계를 분석하고 그에 따른 개선점을 도출하고자 하였다.

표 III-2. 이주배경 아동·청소년 행정자료 연계를 위한 부처관계자 실무협의회 추진경과

1 단계	일시	부처	논의 내용	참석자(연구진 제외)
	2019.9.6	법무부 여성가족부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법무부 출입국외국인통계 마이크로데이터 협조요청</li> <li>이주배경 아동·청소년 연령 별 통계표 작성 협조요청</li> </ul>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전○○(여성가족부 학교밖청소년 지원과, 사무관)</li> <li>윤○○(법무부 이민정보과, 사무관)</li> <li>장○○(법무부 이민정보과, 주무관)</li> </ul>
	2019.9.18	통계청 여성가족부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인구주택총조사 마이크로 데이터 협조요청</li> <li>이주배경 아동·청소년 규모 추정을 위한 통계구축방안 논의</li> <li>이주배경 아동·청소년 규모추 정을 위한 통계표 작성 협조</li> </ul>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전○○(여성가족부 학교밖청소년 지원과, 사무관)</li> <li>임○○(통계청 조사관리국 인구총조 사과, 사무관)</li> </ul>
	2019.12.11	통일부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이주배경 아동·청소년 규모 추정을 위한 통계구축방안 논의</li> <li>이주배경 아동·청소년 규모추 정을 위한 통계표 작성 협조</li> </ul>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김○○(통일부 정착지원과, 사무관)</li> </ul>
	2019.12.13	통계청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이주배경 아동·청소년 규모 추정을 위한 통계구축방안 논의</li> </ul>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임○○(통계청 조사관리국 인구총조 사과, 사무관)</li> <li>손○○(통계청 조사관리국 인구총조 사과, 주무관)</li> </ul>
	2020.1.15	통계청 법무부 교육부 통일부 여성가족부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부처별 행정통계연계에 대한 필요성 이해 및 추진에 대한 실무자 합의</li> </ul>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김○○(여성가족부 학교밖청소년지원 과, 과장)</li> <li>전○○(여성가족부 학교밖청소년지원 과, 사무관)</li> <li>임○○(통계청 인구총조사과, 사무관)</li> <li>장○○(법무부 이민정보과, 주무관)</li> <li>지○○(교육부 교육기회보장과, 사무관)</li> <li>김○○(통일부 정착지원과, 사무관)</li> </ul>
2 단계	2020.9.25	교육부 여성가족부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이주배경 아동· 청소년 현황통 계 생성을 위한 NEIS 연계방안 논의</li> <li>교육부 행정자료 연계를 위한 선행요건 및 추진절차 논의</li> </ul>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지○○(교육부, 교육기회보장과, 사무관)</li> <li>전○○(여성가족부, 학교밖청소년 지원과, 사무관)</li> </ul>
	2020.11.4	통계청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이주배경 아동· 청소년 현황통 계 생성을 위한 통계청 등록센 서스자료 활용가능성 및 연계방 안 모색</li> </ul>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임○○(통계청 인구총조사과, 서기관)</li> <li>손○○(통계청 인구총조사과, 주무관)</li> <li>송○○(통계청 통계데이터기획과, 주무관)</li> <li>박○○(통계개발원, 경제사회통계 연구실, 사무관)</li> <li>홍○○(통계개발원, 통계방법연구실, 주무관)</li> </ul>

	2020.11.25	교육부 통일부 여성가족부 통계청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이주배경 아동· 청소년 관련 부처별 통계 데이터 연계를 위한 관계부처 협의</li> </ul>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김○○(여성가족부, 학교밖청소년 지원과, 과장)</li> <li>■ 전병길(여성가족부, 학교밖청소년 지원과, 사무관)</li> <li>■ 지○○슬(교육부, 교육기회보장과, 사무관)</li> <li>■ 여○○(교육부, 교수학습평가과, 연구사)</li> <li>■ 강○○호 (통일부, 정착지원과 사무관)</li> <li>■ 성○○(통일부, 정착지원과 주무관)</li> <li>■ 김○○(하나넷 유지보수기관, 이사)</li> <li>■ 임○○(통계청 조사관리국 인구총조사과, 서기관)</li> <li>■ 송○○(통계청 조사관리국 인구총조사과, 주무관)</li> </ul>
	2021. 02. 17	교육부 여성가족부 통계청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NEIS 연계를 위한 구체적인 절차 및 방안 논의</li> </ul>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전○○(여성가족부, 학교밖청소년 지원과, 사무관)</li> <li>■ 임○○(통계청 조사관리국 인구총조사과, 서기관)</li> <li>■ 여○○(교육부, 교수학습평가과, 연구사)</li> <li>■ 김○○덕(교육부, 교수학습평가과, 사무관)</li> <li>■ 유○○범(교육부, 교수학습평가과, 연구관)</li> <li>■ 고○○석(교육정보화과, 연구관)</li> <li>■ 이○○재(교육정보화과, 주무관)</li> <li>■ 강○○(한국교육학술정보원, 나이스교육행정부)</li> </ul>
	2021.02.24	통일부 여성가족부 통계청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하나넷 데이터 연계를 위한 구체적인 절차 및 방안 논의</li> </ul>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전○○(여성가족부, 학교밖청소년 지원과, 사무관)</li> <li>■ 임○○(통계청 조사관리국 인구총조사과, 서기관)</li> <li>■ 강○○ (통일부, 정착지원과 사무관)</li> <li>■ 성○○(통일부, 정착지원과 주무관)</li> <li>■ 박○○(통일부, 정착지원과 주무관)</li> <li>■ 이○○(하나넷 유지보수기관, 대표)</li> </ul>

3 단 계	2021. 09. 10	통계청 여성가족부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이주배경 아동· 청소년통계 세부유형 검토</li> <li>•행정자료로 파악되지 않는 범주 및 분류가 명확하지 않은 대상에 대한 논의</li> </ul>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조○○천(통계청 인구총조사과, 사무관)</li> <li>■ 나○○(통계청 인구총조사과, 주무관)</li> <li>■ 전○○길(여성가족부 학교밖청소년 지원과, 사무관)</li> </ul>
	2021. 09. 14	여성가족부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이주배경 아동· 청소년 현황 통계의 지속적 연계기반 마련방안논의</li> </ul>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김○○(여성가족부 학교밖청소년 지원과, 과장)</li> <li>■ 전○○(여성가족부 학교밖청소년 지원과, 사무관)</li> </ul>
	2021. 12. 06	여성가족부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부처별 연계절차 추진경과 검토 및 향후 추진사항 논의</li> <li>•이주배경 아동· 청소년 현황통계 생성을 위한 법적 근거 관련 의견 수렴</li> </ul>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전○○(여성가족부, 학교밖청소년 지원과, 사무관)</li> </ul>

※ 출처: 양계민 외(2020). p. 12의 <표 1-2>와 양계민 외(2021). p. 9의 <표 1-2>를 수정 보완함.

## 2) 이주배경 아동·청소년 현황통계 연계 항목 및 절차

이주배경 아동·청소년 현황통계 연계를 위하여 「이주배경 아동·청소년 현황통계 생성을 위한 행정자료 연계방안연구」에서는 전문가 자문회의를 근거로 현황통계 집계항목을 다음과 같이 도출하였다. 이 때 특히 학령기 연령의 아동·청소년들의 재학현황과 본 연구의 정의 및 하위 유형을 산출할 수 있는 정보들을 도출하는 것을 목적으로 하였다. 따라서 다음과 같은 항목들이 포함될 수 있는 데이터를 구성하고자 하였다.

표 III-3. 이주배경 아동·청소년 현황통계 집계항목(안)

구분	집계 항목
① 기본 현황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연령별, 성별 이주배경 아동·청소년 전체 규모</li> <li>■ 지역별(17개 시·도 / 지역규모) 이주배경 아동·청소년 분포</li> <li>■ 7개 유형 이주배경 아동·청소년 규모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유형에 따른 연령, 성별, 지역별 세부 현황</li> </ul> </li> </ul>
② 아동·청소년 관련 정보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이주배경 아동·청소년 유형별 세부 정보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국적, 체류자격(등록외국인 / 불법체류자), 탈북배경 여부 등 세부 현황</li> </ul> </li> <li>■ 이주배경 아동·청소년 현황 재학 정보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학교 급, 학년, 학교 소재지 별 이주배경 아동·청소년 현황</li> <li>- 학교 밖 이주배경 아동·청소년 현황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재학학교 종류(일반학교, 대안학교, 외국인학교 등)</li> </ul> </li> </ul> </li> </ul>
③ 부모 관련 정보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부모의 국적, 체류자격(등록외국인 / 불법체류자), 탈북배경 여부 등 세부 현황</li> </ul>

\* 출처: 양계민 외, 2021: 112, <표 4-8>

위와 같은 정보가 포함된 데이터를 구성하기 위해서 통계청의 인구주택총조사 등록센서스를 기준으로 교육부의 교육행정정보시스템(NEIS), 통일부의 북한이탈주민 종합관리시스템(이하 ‘하나넷’이라 함)을 연계하고자 하였다. 이들의 정보를 연계하기 위해서는 주민등록번호나 외국인등록번호와 같이 개인 고유 식별번호를

사용하여 매칭을 하고자 하였다. 이 때 데이터 간 매칭을 위한 개인식별번호는 암호화된 키코드로 전환되어 사용되었고 데이터결합지정기관인 통계청이 추진함으로써 보안상 안전한 결합이 가능하도록 하였다.

**기준자료 : 통계청 등록센서스(행정안전부, 법무부 연계자료)**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매칭변수 주민번호, 외국인등록번호, 성별</li> </ul>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청소년 및 부모 정보변수 국적, 체류자격, 입국시기, 거주지, 귀화정보</li> </ul>
--	---

**연계자료 1 : 교육부 NEIS**

+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매칭변수 주민번호, 외국인등록번호, 성별</li> </ul>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청소년 정보변수 재학여부, 학교 유형, 학교 급, 학년, 학교 소재지</li> </ul>
--	--

**연계자료 2 : 통일부 하나넷**

+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매칭변수 주민번호, 성별</li> </ul>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청소년 및 부모 정보변수 탈북 여부, 입국시기</li> </ul>
---	---

**통합자료**

↓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매칭변수 주민번호, 외국인등록번호, 성별</li> </ul>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청소년 정보변수 국적, 체류자격, 입국시기, 거주지, 귀화정보, 탈북 여부, 재학여부, 학교 유형, 학교 급, 학년, 학교 소재지</li> <li>■ 부모 정보변수 국적, 체류자격, 입국시기, 거주지, 귀화정보, 탈북 여부</li> </ul>
--	--

**그림 III-1. 이주배경 아동·청소년 현황통계 생성을 위한 자료연계(안)**

\* 출처: 양계민 외, 2021: 113 [그림 4-19]

이 방법을 통하여 데이터를 결합한 결과 도출하고자 한 데이터 구성은 아래의 <표 III-4>와 같다. <표 III-4>에 제시된 방식으로 데이터를 구성할 경우 본 연구에서 정의하는 이주배경 아동·청소년의 7개 하위유형이 도출될 수 있다. 따라서 통계청에 이 데이터 구성안을 제시하였다.

표 III-4. 행정자료 연계를 통한 이주배경 아동·청소년 통합자료(예시)

ID	청소년 본인 정보											부 정보			모 정보						
	성별	만 나이	국적	체류 자격	귀화 전 국적	입국 시기	탈북 배경	거주 지	지역 규모	재학 여부	재학 학년	학교 소재 지	국적	체류 자격	입국 시기	귀화 전 국적	국적	체류 자격	입국 시기	귀화 전 국적	
1	남	10	한국				X	서울	대도시	O	초4	서울	한국					베트남	F6		
2	여	17	한국		중국	2015	X	충북	읍면	O	고1	충북	한국					한국		중국	
3	여	8	태국	F2			X	경기	시	O	초2	경기	태국	F2	2017			태국	F2	2017	
4	남	19	미국	F2		2017	X	서울	대도시	O	고3	서울	미국	F2	2017			미국	F2	2017	
5	여	9	한국				X	광주	대도시	O	초2	광주	한국					한국		2013	북한
6	여	15	한국		북한	2014	O	인천	대도시	X	중1	인천	한국		2014	북한					
7	남	11	중국	F2		2019	X	경기	읍면	X			한국		2018	북한	중국	F2	2019		

※ 1. 국내출생 국제결혼가정 자녀; 2. 국외출생 국제결혼가정 자녀; 3. 국내출생 외국인가정 자녀; 4. 국외출생 외국인가정 자녀; 5. 국내(남한)출생 탈북배경 청소년; 6. 탈북 아동·청소년; 7. 제3국 출생 탈북배경 청소년.

\* 출처: 양계민 외, 2021: 114 <표 4-9>

## 2. 이주배경 아동·청소년 행정자료 연계의 성과와 한계

### 1) 이주배경 아동·청소년 행정자료 연계의 성과

앞에서 제시한 바와 같이 본 연구는 2019년부터 지속적으로 이주배경 아동·청소년의 행정자료 연계를 추진하는 과정에 있는 연구로, 통계청과 교육부, 통일부가 데이터 공유에 대해 상호 합의를 하였고, 그 결과 1차 데이터가 산출되었다.

그 후 교육부 사회정책관실, 사회정책분석팀의 주관으로 교육부의 교육기획보장과, 교육통계과, 여성가족부 학교밖청소년지원과, 통계청 인구총조사과, 한국교

육개발원 교육통계팀 등이 1차 도출된 데이터를 근거로 활용할 수 있는 내용에 대한 부처협의를 추진하였다. 협의 내용은 관련 부처의 공통 활용방안, 대상의 정의, 대상의 범주, 조사기간의 일치 등에 대한 부처별 입장이었다. 그 결과, 교육부 다문화학생통계의 조사시점(4월 1일)과 통계청 인구주택총조사의 조사시점(11월 1일)이 일치하지 않는 부분에 대하여 통계청의 기준으로 일치시키기로 협의하였고, 통계청에서 데이터를 결합한 후 교육부에 전달하기로 하였다. 또한 개인 정보를 제외한 후 산출된 이주배경 아동·청소년 현황통계를 여성가족부에 제공하기로 하였다. 이러한 성과는 기존의 조사통계로 산출되던 교육부 다문화학생 통계를 더 이상 조사가 아닌 행정자료로 산출할 수 있는 기반을 마련하였고, 데이터의 정확성을 제고하는 데 기여를 하였으며, 현장 교사들의 업무를 경감시키는 데에도 기여했다고 볼 수 있다. 또한, 통계청 데이터와 교육부 데이터 조사시점을 맞추므로써, 현재 포함되지 못한 대상자들을 추가적으로 통계청 데이터에 포함할 경우 전체 이주배경 아동·청소년 중, 학교에 재학하지 않는 학교밖청소년의 규모를 파악할 수 있는 기반을 마련했다는 점에서도 역시 성과가 있고, 이주배경 아동·청소년의 학업중단율을 행정통계를 활용하여 산출하게 되었다는 점 등 많은 성과가 있다고 평가할 수 있다.

표 III-5. 부처별 행정통계 연계 결과활용방안 협의 결과

일시	참석	주요논의 내용
2021.9.10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통계청(인구총조사과)</li> <li>여성가족부(학교밖청소년지원과)</li> </ul>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이주배경 아동·청소년 통계 세부유형 검토</li> <li>행정자료로 파악되지 않는 범주 및 분류가 명확하지 않은 대상에 대한 논의</li> </ul>
2021.10.06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교육부(사회정책분석팀, 교육기획보장과, 교육통계과)</li> <li>통계청(인구총조사과)</li> <li>한국교육개발원(교육통계센터)</li> </ul>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교육부, 여성가족부 간 정책대상 및 기준 일치를 위한 논의</li> <li>여성가족부-통계청 공동 추진 중인 '이주배경 아동·청소년 현황통계' 관련 교육부 협업 논의</li> <li>현재의 수기조사 방식과 통계청 자료의 비교 및 향후 교육부 이주배경 아동·청소년 산출방안 논의</li> </ul>
2021.11.16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통계청(인구총조사과)</li> <li>여성가족부(학교밖청소년지원과)</li> <li>교육부(사회정책분석팀, 교육기획보장과)</li> <li>한국교육개발원(교육통계센터)</li> </ul>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교육부 자료(NEIS)와 통계청 기초데이터베이스 공유방안 논의</li> <li>통계청과 교육부의 조사시점 일치 합의(11월 기준)</li> <li>학업중단자 비율 산출예정(22년 4월~6월 예정)</li> <li>개인정보를 제외한 후 통계를 산출하여 여성가족부에 제공</li> <li>이주배경 아동·청소년통계 작성하여 교육부 및 여성가족부에 제공</li> </ul>

## 2) 이주배경 아동·청소년 행정자료 연계의 한계

한국청소년정책연구원에서 여성가족부와 함께 추진한 이주배경 아동·청소년 행정자료 연계 노력의 결과, 앞에서 언급한 여러 성과들이 있었으나 그럼에도 불구하고 현재 존재하는 행정자료로 찾지 못하는 사각지대가 존재하는 등 향후 해결해야 할 과제들은 여전히 존재하였다. 그 중 가장 주요한 몇 가지만 제시하면 다음과 같다.

첫째, 외국인가정 자녀의 경우 행정자료를 통하여 본 연구가 정의하는 7개 하위 유형을 구분하는 것이 불가능하였다. 국제결혼가정자녀나 북한출생청소년의 경우와 같이 가족관계정보가 있는 경우는 연계가 가능하나, 외국인들의 경우 가족단위가 아닌 개인단위로 등록이 되고 있기 때문에 외국인가정자녀들의 경우는 그 숫자

자체를 집계할 수는 있어도 본 연구에서 구성하고자 하는 데이터 세트의 항목을 구성하기 위한 정보, 특히 부모의 정보가 누락되기 때문이다. 이를 극복할 수 있는 방안은 현재는 존재하지 않는 것으로 파악된다. 그러나 통계청에서도 이민자외국인통계를 작성하는 작업에 착수하는 등의 움직임이 있기에 당장은 아니어도 찾을 수 있는 방법은 있을 것으로 생각된다. 예로 외국인 사증발급신청서(Visa Application Form)에 작성하는 가족현황을 명확하게 기재하고, 추가로 가족의 여권번호 등을 기재하여 전산화 하는 방안 등을 생각해 볼 수 있다. 현재 외국인 사증발급신청서는 전산화가 되어 있지 않은 상태로, 이를 추진하기 위해서는 추가적인 예산과 업무담당을 위한 추가 인원 배정이 필요하다.

둘째, 출생미등록 아동의 경우는 행정통계를 통해 찾아질 수 없다는 문제가 있다. 출생미등록의 경우는 국내에서 출생을 하였으나 출생신고를 하지 못하여 적이 없는 사례를 말하는데, 이들의 규모를 정확히 파악할 수 있는 방법은 지금까지 존재하지 않는 것으로 파악된다. 외국의 사례에서도 이들의 규모는 추산할 뿐, 실제 규모를 파악한 통계를 가지고 있는 국가는 없는 것으로 생각된다. 이들에 대한 문제는 사실상 최근에 제기된 문제가 아니고 오래 전부터 제기된 문제이다. 최근 「사회관계장관회의 2021-21(1호)」에서 미등록 이주아동의 사회적 기본권보장을 위하여 임시식별번호활용확대와 출생등록제도입에 대한 방안을 제시한 바 있다. 그러나 이 두 가지 방안이 실제 실효성이 있는지 분석할 필요가 있다.

셋째, 탈북배경청소년 중 제3국 출생 탈북청소년을 행정통계로 파악하는 것에 어려움이 있었다. 탈북배경청소년 중 북한출생자와 남한출생자는 행정자료를 통하여 산출이 될 수 있으나 부모 중 한쪽이 탈북자이고 다른 한쪽이 외국인이며 본인은 외국에서 출생한 제3국 출생 탈북청소년의 규모를 행정자료를 통하여 파악하지 못하였다. 이는 통일부의 적극적 협조가 필요한 부분으로 하나넷의 수집정보 항목을 수정하는 등의 작업이 필요할 수 있다. 또한 현재 제3국 출생 탈북청소년은 법적으로 통일부 「북한이탈주민의 보호 및 정착지원에 관한 법률」의 직접적 대상

은 아니기 때문에 실제로는 지원정책이 이루어지고 있다 할지라도 통일부의 정책 대상이라고 공표하는 데 어려움이 있을 수 있다. 제3국 출생 탈북배경 청소년들은 한국청소년정책연구원에서 수탁과제로 수행한 「이주배경 아동·청소년 실태조사」 결과, 7개 하위 유형 중 가장 취약한 특성을 지닌 집단 중 하나로 이들에 대한 집중적 지원이 필요하며, 일반적인 외국배경의 국제결혼가정과 차이가 있어, 이들만의 독특성이 존재하는 집단이라고 할 수 있다. 따라서 행정통계 연계를 통하여 이들 집단 전체에 대한 현황통계를 파악할 필요가 있다.

### 3. 이주배경 아동·청소년 행정자료 연계의 정확성 제고방안 모색

지금까지 추진된 국내 이주배경 아동·청소년 현황파악을 위한 행정자료 연계의 성과와 한계를 간략히 기술하였다. 현재 상태에서 조금이라도 더 정확한 통계를 구축하기 위한 방안들을 모색하기 위하여 이주배경 아동·청소년전문가, 이민자 등 이주전문가, 통계전문가, 북한이탈주민전문가, 법전문가 등 총 35명의 관련분야 전문가들을 대상으로 주요 사안별 의견을 수렴하였다. 이주배경 아동·청소년 행정자료 연계의 정확성 제고를 위한 다양한 대안 및 주요 이슈에 대한 전문가 의견수렴 결과를 제시하면 다음과 같다.

#### 1) 보건복지부 자료 연계에 대한 의견

첫 번째는 보건복지부의 건강보험, 사회보장정보 또는 예방접종번호 등을 통하여 미등록 이주배경 아동·청소년의 규모를 파악하는 방안으로 주로 외국인가정에 해당되는 내용이다. 외국인가정의 경우 가구단위로 통계가 작성되어 있으나 그것이 이 반드시 가족관계가 아니기 때문에 외국인의 경우 가족관계를 정확히 파악할 수 있는 방법은 없다. 이에 대한 대안으로 건강보험의 피부양자로 등록된 외국인가

구 구성원을 포함하는 방안을 생각해 볼 수 있다. 이와 관련한 전문가들의 의견으로는 일부 가능한 부분도 있으나 사실상 건강보험은 현재 경제활동을 하는 사람들에만 해당되기 때문에 일하지 않는 경우 등 사각지대가 존재하여 정확한 통계를 파악하는 데는 한계가 있다는 의견이 대부분이었다. 실제로 한 전문가는 외국인 건강보험이 의무화 되어 있지만 실제로는 50% 정도밖에 되지 않는다고 하였다. 또한 국가필수예방접종 서비스 역시 제한된 인원만 받고 있기 때문에 연계를 해도 한계가 많다는 것이 전반적인 의견이었다. 예방접종을 위한 임시번호의 경우 역시 모든 외국인들이 예방접종을 받고 있다고 보기 어렵기 때문에 미등록 이주아동의 전수를 파악하는 방법으로는 여전히 한계를 지닌다는 의견이었는데, 특히 현재 사용되고 있는 예방접종을 위한 임시번호는 외국인등록번호와 상관없이 임의로 부여되는 것이기 때문에 통계로 사용하기에는 적절치 못하다는 의견들이었다.

이에 대한 대안으로 다수의 전문가들이 보편적 출생등록, 출생통보제, 출생등록제 등을 제안하였고, 한 전문가는 출입국 관서와는 별도로 거주지인 '시·군·구'에 출생아동을 등록하게 하는 '외국인아동 출생등록제' 도입을 방안으로 제시하기도 하였다. 그러나 이러한 제안이 실효성이 있으려면 출생미등록 아동들과 부모의 신분이 보장될 수 있는 방안이 동시에 마련되어야 한다는 의견이 다수였다. 즉, 해당 집계 업무를 하는 공무원의 통보의무(출입국관리법 제84조 제1항)를 면제하는 예외규정이 필요하고, 미등록 이주아동의 보건소 예방접종 기록이 법무부에 보고되지 않는다는 것이 법제화 될 필요가 있다는 점을 선행조건으로 들고 있었다.

그 외의 방법으로 청소년을 포함하여 장기 체류한 미등록 외국인에 대해서도 건강보험 가입이 가능하도록 제도개선을 한다거나, 미등록 체류자라도 이주배경 아동·청소년(최소한 미성년자)의 연령에 해당하는 자에게는 건강보험 가입을 허용하는 방안 등을 제시하기도 하였다.

표 III-6. 보건복지부 자료 연계방안에 대한 의견

의견	전문가 의견
한계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보건복지부 자료의 활용이 의미를 가질 수 있으려면, 건강보험에 가입한 이주민(특히 미등록 체류자)의 비율, 이주민의 사회보장 수급자(마찬가지로 특히 미등록 체류자) 비율, 예방접종 참여 이주민(특히 미등록 아동) 비율 등이, 알려진 정보를 수정할 수 있을 정도로 유의미하게 다수이라는 전제가 필요함. 그러나 안타깝게도 그러한 전제는 충족되기 어려움.</li> <li>● 외국인 건강보험이 의무화 되었으나, 전체 외국인 가운데 건강보험가입자는 50% 남짓임. 사회보장에 포용되는 이주민의 비율은 아마도 훨씬 낮을 것으로 생각됨.</li> <li>● 국가필수예방접종 서비스를 이용하는 외국인의 규모도 50%를 상회하지 않음. 그 자료들을 100% 활용하는 경우에도, 매우 제한적인 정보만을 얻을 수 있다고 생각됨.</li> <li>● 현재 연계가능한 통계청, 교육부, 통일부의 자료로 파악할 수 있는 범위가 한정적 이므로 가능하다면 보건복지부의 자료를 연계하는 것이 매우 좋은 방안이라 생각함. 특히 보건복지부의 보건복지데이터포털, 보건의료빅데이터개방시스템 등을 통해 유관기관들의 자료가 일정 수준 연계되어 있음. 그러나 해당 자료도 모든 국민을 대상으로 하는 것이 아니라 서비스를 제공받은 사람만 해당된다는 한계가 있음.</li> <li>● 미등록 외국인 자녀의 예방접종번호를 활용하여 규모를 파악하는 방법은 가능할 것으로 보이나, 접종당사자의 부모 동의를 받을 수 있을 것인지 실효성에 의문이 들며, 접종과정에서 충분한 설득이 필요할 것으로 보임.</li> <li>● 보건복지부 자료는 예방접종을 받았거나 건강보험, 사회보장서비스를 받은 수혜자 명단이기 때문에 ‘국내출생 미등록 이주배경 아동·청소년’을 모두 포괄하고 있지는 못하다고 생각됨. 또한 예방접종번호의 경우 외국인등록번호 유무와 상관없이 임의 번호를 부여하여 관리하고 있는 것으로 아는데, 외국인등록번호를 기반으로 한 건강보험, 사회보장정보와 현실적으로 연계가 가능할지 의문임.</li> <li>● 미등록 청소년의 경우 이민당국의 단속에 대한 두려움으로 보건복지부 서비스를 받는 것에 두려움을 느껴서 서비스 수혜를 위한 등록을 하지 못하기도 함. 따라서 전체 규모 파악에는 한계가 있음.</li> <li>● 보건소 예방접종 또는 진료기록을 통한 파악할 수는 있음. 다만, 보건소에서 미등록 아동·청소년들에게 부여하는 임의번호와 나이스에 부여하는 임의번호가 동일할지 파악필요(중복 카운트 될 수 있음). 장기적으로는 임의번호를 동일하게 사용할 수 있는 제도마련 필요</li> <li>● 미등록 이주배경 아동·청소년의 정보를 건강 관련 정보와 연계하여 파악하는 것이 현실적인 것으로 판단됨. 특히 출생 기록과 예방접종 기록을 활용하는 것은 중요함.</li> <li>● 미등록 이주배경 아동·청소년의 규모 파악을 위해서는 보건소를 통해 예방접종한</li> </ul>

의견	전문가 의견
	<p>기록을 조사하는 것이 가장 현실적일 것이라고 생각함. 일반적으로 등록이든 아니든 시기에 맞춰 접종을 해야 한다는 것을 인식하고 있기 때문임.</p>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건강보험, 사회보장정보, 예방접종번호 등을 통해 일부 미등록 이주배경 아동·청소년들이 대상에 더 포함될 수 있으나, 건강보험미가입자, 사회보장 관계법 제외자, 미 접종자 등은 대상에서 제외되어 있기 때문에 전체 규모를 파악하는 데 한계가 있을 수밖에 없음.</li> <li>• 건강보험, 사회보장정보는 미등록자와는 관련이 없을 것이고, 제시한 것 중에는 그나마 예방접종번호가 국내에서 영유아기(예방접종이 집중적으로 이루어지는 시기)를 보낸 일부 집단을 파악할 수 있는 단서가 될 수는 있을 것으로 생각됨. 그러나 이 경우에도 어디까지나 일부여서 이것으로 전체를 파악하는 것은 불가능할 것으로 생각됨.</li> <li>• 미등록 이주배경 아동·청소년 정보와 관련하여 보건복지부 정보가 정확할지 의문임. 미등록이면 사회보장번호도 없어, 다른 사람 건강보험을 활용하기도 하고, 예방접종도 제대로 맞지 못하는 것이 현실임.</li> <li>• 미등록 자녀라 하더라도 '예방접종번호'는 모의 출산증명서가 있다면 발급받을 수 있으므로 보건소를 통해 파악할 수 있을 것으로 보임.</li> <li>• 건강보험 자료는 건강보험에 가입이 되어 있어야 파악이 될 텐데, 부모가 불법체류자인 경우 건강보험에 들어 있을 가능성이 없을 것 같고, 사회보장정보시스템(행복e음) 같은 것들도 우리나라에 주민등록이 되어 있어야 복지 혜택 대상이 되고, 혜택을 받아야 통계에 잡힐 텐데 그렇지 않으니 이러한 자료들로 미등록 이주배경 아동·청소년의 규모가 파악이 될지 의문임.</li> <li>• 현재로서는 보건복지부 자료를 제외하고는 미등록 이주배경(아동)청소년의 규모를 파악하기 어렵기 때문에 (물론 한계가 분명히 존재하겠지만) 이 방식을 통해 규모를 추정하는 것은 의미 있는 작업이라고 생각이 됨.</li> <li>• 예방접종번호를 제외한 다른 자료에서 이주배경(아동)청소년을 파악하는 것이 가능할지 의문임. 일부 유학생 등의 경우를 제외하고 현재 이주배경(아동)청소년의 체류자격은 부모의 자격에 귀속되기 때문에 부모가 사회보험에 가입되지 않으면 그 자녀의 정보도 확인되기 어려울 것으로 생각됨.</li> <li>• (해외출생자 외 국내출생)미등록자 확인은 사실상 어려우니 학교밖 (아동)청소년 규모만이라도 확인할 수 있으면 큰 성과라고 생각함.</li> <li>• 미등록 이주아동은 건강보험 가입이 불가능하며, 만약 등록 상태일 때 가입자였다가 미등록이 되면서 자격상실이 된 경우라면 이미 출입국통계에 (과거에) 외국인등록을 했던 미등록 체류자로 포함될 것임. 따라서 건강보험 자료는 미등록 이주아동 규모 파악에 별 도움이 안 될 것으로 생각됨.</li> <li>• 사회보장정보는 부모가 한국인이 아닌 게 분명한 경우 발급해주지 않는 걸로 알고 있음. 혹시 기아로 발견되어 사회복지 관리번호를 받았다가, 이후에 부모가 외국인임이 밝혀져서 관리번호가 말소된 경우가 있을 수도 있겠지만 매우 소수일</li> </ul>

것이라 생각됨.

- 어린이 국가 예방접종 시 보건소에서 부여하는 관리 번호는 외국인등록 면제자, 단기체류자, 외국인등록번호가 없는 장기체류자로 구분된 코드를 부여하는데, 이 번호가 이후 보육정보시스템이나 교육정보시스템에 연계되어 사용되는 것도 아니고 지속적으로 관리되는 것이 아니기 때문에, 해당 번호를 부여받은 사람이 출국을 했는지 여부도 파악하기 어려울 것으로 생각됨.
- 어린이 국가 예방접종 지원 사업에 대해 모르는 미등록 체류자들도 많고, 그 경우 보건소가 아닌 일반 병원에서 별도의 관리 번호 없이 접종하기 때문에 전체 규모 파악에 큰 도움은 되지 않을 것으로 생각됨.
- 미등록 이주배경 아동·청소년 중 건강보험, 사회보장, 예방접종 등에 기록이 있는 청소년의 비율을 알아야 하는데, 모수를 알 수 없는 상황에서 미등록 이주배경 아동·청소년의 몇 %가 건강보험, 사회보장, 예방접종 등의 기록에 포함되는지 알기가 어려움.
- 예방접종을 미등록 이주아동이 할 수 있다는 정보를 외국인 부모가 모두 아는지, 알라도 접종을 시키는 것을 행동에 옮기는지 알 수 없기 때문에 이 또한 정확한 규모는 파악할 수 없다는 한계가 있음.
- 건강보험은 미등록 외국인이 가입하지 않는/못하는 경우가 많고, 사회보장정보도 외국인인 경우 기록되지 않는 경우가 많아 미등록 이주배경 아동·청소년이 얼마나 추출될지 불확실함.
- 건강보험 또는 사회보장정보는 장기체류자격을 소지한 아동·청소년, 국민과 일정한 가족관계가 있는 외국 국적 아동·청소년 등을 파악할 수 있으므로, 그 외의 체류자격 보유자 또는 미등록 이주아동·청소년은 파악이 안 됨.
- 예방접종번호를 부여받은 아동의 경우, 정확한 생년월일 등이 확인 및 등록될 수 있다면 정확한 통계 작성에 도움이 될 수 있으나, 현재 코로나19로 인하여 보건소 등에서 예방접종관리번호 부여 및 필수예방접종 서비스 등을 제공하지 않고 있고, 민간 병원에서 비용을 납부하고 예방접종을 하는 경우에도 예방접종 관리번호를 부여하고 있는지 여부는 확실치 않아, 이에 대한 확인이 필요함.
- 애초에 미등록 체류자의 미등록 이주배경 아동·청소년의 경우, 건강보험에 가입을 할 수 없음. 다만, 사회보장정보나 예방접종번호를 대체적으로 사용할 수 있을 것이라 기대됨. 또한 적어도 사회보장정보나 예방접종번호를 사용하거나 통용되는 부서(ex.보건소 등)에서 제공하는 서비스의 경우, 미등록 이주배경 아동·청소년들에게도 제공·관리할 수 있는 기본 식별정보가 될 수 있을 것 같음.
- 현재 사회보장정보나 예방접종번호는 매우 제한적이거나 다른 부처에서 통용되는 것이 힘든 상황임. 나아가, 미등록 이주배경 아동·청소년의 문제는 단순히 예방접종이나 복지 서비스 등 몇 개의 서비스를 이용하지 못 한다는 것에 국한되는 것이 아니라 그 존재 자체가 사회적으로 인정되지 않아 각종 위험에 노출되어 있다는 점과 그 존재와 정체성을 증명하는 내용이 없다는 점임.

의견	전문가 의견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보건복지부 자료를 활용한다고 하더라도, 그 규모가 과소 추정될 가능성이 매우 높아 그 데이터로 사실상 말할 수 있는 것에는 한계가 있다고 봄. 솔직히 이를 통해 규모 추정이 가능하다고 생각되지는 않음. 해당 집단에 대한 실태조사적 특성 파악에는 도움이 될 수도 있다고 보임.</li> <li>• 흑여 이와 같은 방법이 미등록 자녀들의 복지 접근성마저도 저해하게 되는 것은 아닌지 우려가 있음. 사실상 국가가 어떤 방식으로든 파악하고 있다는 의미이므로 부모가 자녀를 더욱 폐쇄적으로 가두게 되는 것은 아닌지에 대한 우려.</li> </ul>
대안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한계의 극복 방안 또는 발전 방안은 좀 더 장기적이고, 진정성 있는 접근이 요청됨. 일단 보건복지부 서비스를 받는 것의 안전성 등에 대한 적극적이고 정성 어린 홍보가 필요함. 예를 들면, 코로나 상황에서, 백신 접종 및 PCR 검사 관련, 적극적인 홍보가 있었지만, 참여 외국인은 그리 많지 않았음.</li> <li>• 미등록 이주배경 아동·청소년 규모 파악을 어렵게 하는 것은 ‘국내출생’ 미등록 이주배경 아동·청소년임을 명확히 인식하는 것이 좋을 것 같음. 체류 기간초과자로서 미등록 이주배경 아동·청소년의 총량적 규모는 출입국 및 체류통계를 통해 가능함.</li> <li>• 미등록이 아니라 그 지역에서 태어난 모든 아동들을 등록신고할 수 있도록 법적 화방안 마련도 필요함. 등록신고를 하고 번호가 있으면 통계조사도 용이하고 대상자 발굴·관리가 훨씬 수월해지기 때문임.</li> <li>• 국내출생 미등록 이주배경 아동·청소년이 제대로 파악되지 않는 문제는 출입국 관서와는 별도로 거주지인 ‘시·군·구’에 출생아동을 등록하게 하는 ‘외국인아동 출생등록제’ 도입을 통해서 어느 정도 해결가능하다고 생각함.</li> <li>• 기본적으로 미등록 청소년에게는 보건복지부 서비스를 받는 것과 이민당국의 단절을 알려야 하는데, 행정자료를 부처 간 연계하지만 이민당국이나 법무부 등에는 철저히 비밀로 이루어짐을 확실히 해야 함.</li> <li>• 미등록 부모에 대한 제재나 강제조치로 아동·청소년의 성장환경이나 인권이 침해되지 않도록 법적·제도적 장치 마련이 선결되어야 함.</li> <li>• 미등록의 경우 대부분 보호자들도 불법체류거나 좋지 않은 환경에 있으므로 학교에 진입해서 공교육을 받을 경우 신고하지 않는 것처럼 보건소 예방접종 기록이 법무부에 보고되지 않는다는 것이 법제화 되거나 안전성을 담보해야함.</li> <li>• 해당 집계 업무를 하는 공무원의 통보의무(출입국관리법 제84조 제1항)를 면제하는 예외규정이 필요하고, 미등록 외국인이라는 이유로 개인정보가 과다하게 수집되지 않도록 개인정보보호규정에 대한 섬세한 구성 및 용도의 엄격한 제한도 필요함.</li> <li>• 보편적 출생등록, 출생 통보제 도입으로 국내에서 출생하는 아이들이 등록될 수 있도록 하는 법이 통과되길 바램.</li> <li>• 보건복지부가 미등록 체류자이더라도 이주아동·청소년(최소한 미성년자)에게는 건강보험 가입을 허용하는 방안.</li> </ul>

의견	전문가 의견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미등록 이주배경 아동·청소년이 포함된 조사통계를 통해서 건강보험, 사회보장, 예방접종번호 등의 비율을 파악할 수 있으면 그 비율을 적용하여 규모를 추정할 수도 있음.</li> <li>• 부모가 불법체류를 해도 아동의 병원이용이나 학교에서는 예외적으로 불법체류 사실 통보 의무가 면제되어 아동의 교육권 및 건강권은 철저히 보호될 수 있는 시스템을 갖추고, 이러한 인식이 보편적으로 알려지는 것이 중요함.</li> <li>• 20세 이상의 청소년에 대해서는 아동복지법, 아동권리협약 등 건강권에 관한 근거가 빈약하고, 실제 현 제도 하에서 미등록 청소년이 건강보험 가입을 할 수 있는 가능성도 없으므로, 사실상 아동에 한하여만 건강보험가입에 따른 규모 파악이 가능할 것으로 생각됨. 청소년을 포함하여 장기 체류한 미등록 외국인에 대해서도 건강보험 가입이 가능하도록 제도개선을 한다면 실효성 있는 조사가 가능할 것으로 생각됨.</li> <li>• 보건복지부 자료를 통해 미등록 이주배경 아동 및 청소년을 파악하고자 하는 경우, 아동에 대하여 보편적으로 건강보험 수급자격을 부여하는 등의 제도적 조치가 선행되어야 정확한 규모 파악에 도움이 될 것으로 생각됨.</li> <li>• 가장 근본적으로는 보편적 출생등록제도가 도입되어 모든 아동(이주배경 아동·청소년을 포함한 모든 아동)이 출생과 동시에 이 사회에서 고유한 존재로 등록되고 인식되어야 하는 것이 필요할 것임.</li> <li>• 법무부나 출입국관리사무소에서 관리하는 것이 아니고 기존의 한국 사회 시스템에 맞추어 한 사람의 신원과 존재의 증빙을 하는 대법원에서 관리하는 것이 맞다고 생각함. 이러한 시스템이 갖추어져야 국내에 체류하는 모든 미등록 이주배경 아동·청소년의 실태를 정확히 파악할 수 있을 것임.</li> <li>• 법무부의 (한시적) 조치에 의한 정보 등록을 통해 규모를 파악하는 것이 보다 현실적임.</li> </ul>

## 2) 이주배경 아동·청소년 현황파악을 위한 기타 행정통계 연계 방안

다음으로 이주배경 아동·청소년의 현황을 파악하기 위하여 알고 있는 행정통계 연계방안에 대하여 질문하였다. 그 결과 아래와 같이 통계청, 법무부, 통일부의 자료에 대한 정보를 제시하였는데, 우선 첫 번째로 통계청에서 구축한 아동가구통계등록부를 아동·청소년등록부로 확대하고, 동일한 방식을 이주배경 아동·청소년에게 적용하는 방안을 제안하였다. 아동가구통계등록부는 통계작성의 기준을 아동으로 두고 아동의 부모와 가족 등으로 확대 조사하는 방법으로, 이주배경

아동·청소년에게도 적용할 수 있다면 바람직한 방법이 될 수 있는데, 이 역시 외국인등록번호 등 적(籍)이 있는 경우는 가능하나 출생미등록자의 경우는 포함되지 못한다는 한계를 여전히 지닌다. 그러나 적(籍)이 있는 외국인가구만이라도 일차적으로 연계할 수 있다면 바람직할 것으로 생각된다. 두 번째는 현재 통계청 행정자료 관리과에서 추진하고 있는 이민자·외국인통계등록부를 제시한 경우가 있는데, 이 경우는 가구단위의 정보수집이 여전히 어려운 상태로, 부모와 자녀가 하나의 가구 내에 가족관계로 등록되어 있는 것이 아니기 때문에 현재로써는 어려운 상황이다. 이에 대한 대안으로 앞에서 언급한 바와 같이 일부는 외국인가구의 가구주와의 관계를 일부 보완하고, 법무부 사증발급신청서의 데이터를 연계할 경우 외국인가정자녀의 데이터를 구성할 수 있는 방안이 될 수 있다. 그러나 결정적으로 법무부 사증발급신청서의 경우 전산화가 되어있지 않은 상태이기 때문에 이를 전산화하는 작업이 선행될 필요가 있다. 이 때 배우자와 자녀의 외국인등록번호나 여권번호 등 개인 ID를 적는 란을 추가로 포함하여 전산화 할 경우 좀 더 손쉽게 데이터를 연계할 수 있을 것으로 생각된다.

또 다른 통계에 대한 의견으로 현재 법무부에서 준비 중인 외국인 종합정보 플랫폼을 제시한 전문가가 있었는데, 이 경우는 아직 추진되지 않고 있고, 외국국적자의 경우 개인단위로 데이터가 수집되고 있기 때문에 가족단위의 데이터 수집은 어렵다는 한계를 지닌다,

마지막으로 통일부 자료와 관련하여 북한출생 청소년과 남한출생 청소년들은 통일부에서 모든 부모의 자료를 가지고 있기 때문에 부모의 건강보험, 사회보장정보, 출생지 정보를 확인하고 이들의 자녀를 연계한다면 전수를 파악할 수 있을 것이라는 의견이었고, 제3국 출생 청소년의 경우 역시 북한이탈주민의 자녀 중 출생지가 남북한이 아닌 경우를 파악하면 현황통계가 가능하다는 의견이었다. 이 제안은 이론적으로 볼 때는 타당한 것으로 보이는데, 이를 위해서는 하나넷에 북한이탈주민들의 가족관계, 자녀의 출생지 정보 등이 포함되어야 하고, 이를 건

강보험 등 사회보장정보와 연계하는 것에 대하여 통일부가 수용해야 한다는 점을 고려할 필요가 있다.

지금까지 제시한 전문가들의 의견은 모두 당장 활용할 수 있는 방안은 아니고, 장기적으로 가능성이 있는, 그것도 이주배경 아동·청소년의 배경특성을 포함할 수 있도록 가족단위의 조사방식을 각 부처가 받아들여야 하는 사안들로 다소 시간이 걸리고 추가적인 노력이 필요한 방법들로 생각된다.

표 III-7. 기타 이주배경 아동·청소년 현황파악을 위한 행정통계 연계방안

부처	전문가 의견
통계청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통계청에서 '아동가구 통계등록부'라는 것을 구축하여 2021년 8월부터 제공하고 있음. 이를 활용하거나 해당 등록부를 '아동·청소년 통계등록부'로 확대하는 방안이 필요함.</li> <li>• 통계청의 외국인 행정자료 연계 DB구축작업을 하고 있는데, 이러한 작업들이 진전이 되면 장기적으로 가능할 것으로 생각됨.</li> </ul>
법무부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법무부에서도 외국인 종합정보 플랫폼을 구축하여 기관 간 데이터 공동 관리를 하고자 준비하고 있는데, 우선적으로 나이스와의 연계를 통해 이주배경 아동·청소년 통계 생산이 가능하지 않을까 생각됨. 현재 법무부의 외국인정보공동이용시스템을 통해서 특정 외국인 집단에 대한 정보만 송수신할 수 있기 때문에 가족구성원 중심으로 세대를 넘나드는 정보 생성은 어려울 것으로 보임. 다만 외국인 종합정보 플랫폼 구축은 시간이 소요될 수 있기 때문에 우선적으로 가용한 행정자료를 통해 1차 이주배경 아동·청소년 통계를 생산하고 점차 통계항목을 확대하는 방향으로 계획을 마련하는 것이 좋을 듯함.</li> <li>• 외국인등록을 했고, 부모에게 수반되는 체류자격(F-1, F-3, G-1-12 등)을 부여받은 경우, 출입국의 '외국인등록 사실증명'을 통해 동거가족 사항을 파악할 수 있음. 다만, 미등록으로 체류하고 있거나, 부모와 무관하게 독립적인 체류자격을 받은 아동·청소년은 제외됨.</li> <li>• 법무부는 외국인빅데이터과를 신설하여 이런 부분을 해결하고자 하고 있어 장기적으로는 가능할 것으로 생각됨.</li> </ul>
통일부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북한출생 탈북청소년의 경우는 통일부에서 자료를 가지고 있으며, 제3국 출생이나 남한출생 청소년의 경우 탈북민 전수에 대한 리스트를 통일부가 보유하고 있기 때문에 부모들의 건강보험, 사회보장 정보, 출생 정보 등을 연계한다면 전체 규모 파악이 가능할 것임.</li> <li>• 하나넷을 통해 이들의 자녀에 대한 정보를 파악할 수 있으면, 제3국 출생 탈북배경 아동·청소년의 통계를 확보할 수 있을 것으로 생각됨.</li> </ul>

### 3) 제3국 출생 탈북배경 청소년 규모파악의 필요성과 근거

세 번째로 앞에서 한계로 지적했던 제3국 출생 탈북배경 청소년의 규모파악의 어려움과 관련하여 현재 파악이 어려운 상황인 것으로 나타났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별도의 현황파악이 필요한지, 그 근거는 무엇인지에 대하여 전문가들의 의견을 수렴하였는데, ‘필요하다’는 의견을 제시한 경우는 제3국 출생 탈북배경 청소년들의 특성이 북한출생자나 남한출생자와도 다르고 일반적인 국제결혼가정 자녀들과도 확실히 다른 측면을 지니고 있는데, 통일부의 지원에서 소외되고 있는 집단이기에 그들을 위한 세밀한 지원정책이 필요하다는 점을 강조하였다. 또한 이들 집단이 다른 탈북배경청소년들과 비교해 볼 때 점점 증가추세에 있기 때문에, 세밀한 지원정책을 위해서는 우선적으로 별도의 범주로 현황통계를 파악할 필요가 있다는 것이 핵심이었다.

이에 비해 필요하지 않다는 입장을 제시한 전문가들은 주로 통계전문가와 이주배경청소년전문가들로 그 특성 자체가 일반적인 이주배경 아동·청소년과 크게 다르지 않고 통계구축이 어려운데, 그 어려움을 극복하기 위해 노력할 만큼의 규모는 아니라고 판단하기 때문이었다. 또한 이주배경 아동·청소년의 규모를 파악하는 이유는 이들을 지원하기 위한 것이 주요 목적이 될 것인데, 제3국 출생 탈북 청소년에 대한 지원이 다른 이주배경 아동·청소년의 지원과 크게 다를 이유가 없다고 판단하고 있었다. 그러나 탈북전문가들에 따르면, 제3국 출생 탈북 청소년은 기본적으로 이주배경 아동·청소년 하위 유형 중 외국배경자들과도 다를 뿐 아니라 같은 탈북배경 집단 중에서도 북한출생자나 남한출생자와는 다른 특성을 지니고 있고, 더 취약하다고 판단하고 있었다. 실제로 본 연구원에서 2021년 추진한 이주배경청소년 실태조사에서도 제3국 출생 탈북배경 청소년은 여러 영역에서 가장 취약한 집단인 것으로 나타난 바 있다(양계민 외, 2021). 따라서 현재로써는 행정자료 연계가 어렵다 할지라도 지속적으로 연계하고자 노력할 필요가 있다고 생각된다.

표 III-8. 제3국 출생 탈북배경 청소년 규모파악의 필요성과 근거

	전문가 의견
필요함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북한이탈청소년과 연장선상에서 정책대상으로 지원받을 수 있도록 하기 위해서는 이들의 입국과정에서 파악되어야 할 필요가 있음</li> <li>• 제3국 출생 탈북배경 청소년은 중도입국청소년과 유사한 정책적 수요를 갖는 집단이라고 생각됨. 단지 탈북민의 자녀로서 국내 유입 시 국민의 자녀로서 지위를 갖는 것이 결혼이민자의 중도입국청소년과는 다른 점이라고 생각됨. 어떤 측면에서는 해외 출생 국민의 자녀로서 청소년기에 국내로 들어오면서 겪는 국내 적응 문제를 유사하게 갖고 있다고도 볼 수 있음.</li> <li>• 분명히 이들 제3국 출생 탈북배경 청소년들이 국내에 잘 정착하기 위한 정책적 수요가 존재하기 때문에 그 규모를 파악하려고 노력하는 것은 중요하다고 생각됨.</li> <li>• 탈북의 경로가 탈북청소년의 교육과 삶에 미치는 영향이 적지 않다고 생각됨. 따라서 제3국 출생에 대한 자료 수집이 필요함. 어느 국가 어느 지역을 얼마나 경유하여 국내로 이주하였는지, 그 과정에서의 경험 등이 중요한 영향을 미칠 것으로 생각되기 때문임.</li> <li>• 현행 북한이탈주민 보호 및 정착지원에 관한 법률은 개개인을 보호결정자로 하고 있으나 국내 정착과 사회통합 등을 고려한 정책에서는 가족 단위로 접근할 필요가 있음. 실제로 통일부는 법 개정을 통해 2017년부터 제3국 출생 자녀 대상 400만원의 양육가산금을 지급하기 시작했음. 또한, 정책 개선 차원에서 2019학년도부터 대학 정원 내 특별전형에 ‘제3국 출생 북한이탈주민 자녀’를 포함시켰으며, 남북하나재단의 기금을 통한 첫 학기 등록금 지원도 추진하고 있음. 뿐만 아니라 삼죽초등학교와 대안교육시설 등에 이중언어 강사 배치도 하고 있음.</li> <li>• 제3국 출생 탈북배경 청소년은 남한출생 탈북배경 청소년과도 다르고, 북한에서 출생한 후 탈북한 청소년과도 차이가 있음. 이들의 정확한 규모를 파악할 수 있다면 탈북배경에 외국거주배경, 외국인 부모의 경우까지 고려하여 더욱 세밀한 서비스 및 복지 체계 구축 및 제공이 가능할 수 있으므로 파악할 수만 있다면 매우 바람직하겠음.</li> <li>• 가정 내 탈북의 경험이 있는 구성원이 있는 경우는 일반 국제결혼가정의 중도입국 자녀와는 또 다른 환경이라고 생각됨. 따라서 제3국 출생 탈북배경 청소년의 규모를 파악할 필요가 있음. 일부 당사자들은 별도의 지원을 제공하는 것을 오히려 차별이라고 생각할 수도 있겠지만 소수라도 지원이 꼭 필요한 대상자를 파악하여 이들을 지원하는 것이 필요하다고 생각함.</li> <li>• 제3국 출생 탈북배경 청소년의 규모 파악은 필요함, 이들은 탈북민 가정에서 성장하고 있기 때문에 한국사회 적응에 대한 지원이 필요하며, 또한 외국에서 중도입국 하는 경우가 대부분이기 때문에 한국어교육 지원 등 별도의 지원이 필요한 경우가 대부분임.</li> <li>• 이주배경청소년 실태조사 결과에 따른 이 집단에 대한 두드러진 특성이 나타나</li> </ul>

## 전문가 의견

고 있음을 발견함. 이들에 대한 규모의 파악과 함께 심층연구도 필요하다고 생각됨.

- 중국출생 북한배경 청소년이 북한 출생 청소년보다 많아졌고, 앞으로도 북한배경 청소년 중 중국(또는 제3국)출생 청소년의 비율이 더욱 증가할 것으로 판단됨. 이들은 학업적응 등의 측면에서 지원이 필요한 대상이지만, “북한이탈주민의 보호 및 정착지원에 관한 법률”에 의거한 통일부 지원은 거의 받지 못하고 있음. 따라서 이들의 규모와 실태를 정확히 파악하고 이에 기초하여 필요한 정책을 수립하여야 할 것으로 생각함.
- 제3국 출생 탈북배경 청소년의 경우 한국어의 어려움이 크고, 외모의 차이로 인한 차별 대상이 될 수 있다는 점을 고려하면 이주배경청소년 범주에 포함하여 지원정책 대상이 되어야 하므로 규모 파악이 필요함.
- 제3국 출생 탈북배경 청소년에 대한 규모 파악은 필요함. 탈북학생 통계 현황(교육부, 한국교육개발원)에 따르면 국내에 입국하는 제3국 출생 탈북학생 수는 매년 증가하고 있으며, 이러한 제3국 출생 탈북배경 청소년의 정책지원을 위해서는 규모 파악이 반드시 선행되어야 함. 만약 제3국 출생 탈북배경 청소년에 대한 조사가 이루어지지 않을 경우 기존의 탈북학생 통계를 대체할 수 없어서 중복조사가 이루어질 가능성이 높기 때문에 통일부와 협의하여 제3국 출생 탈북배경 청소년 조사방안 마련이 필요할 것으로 생각됨.
- 이주배경 아동·청소년의 통계를 구축하는 이유는 이들의 인권을 보호하고 국내에서 건강한 성장을 돕기 위한 것이므로, 출생환경에 장애를 받지 않고 필요한 지원을 제공할 수 있어야 함. 탈북배경청소년은 출생지가 어디이든 숙민주의 원칙에 의해 대한민국 국민이므로 이들에 대한 정확한 파악을 통해 복지사각지대로 남지 않게 해야 할 것임.
- 「북한이탈주민 보호 및 정착지원에 관한 법」 제 4조 2의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의 책무에 관한 내용에 따르면, 북한이탈주민의 성공적인 정착을 위해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적극적인 노력을 해야 한다고 되어 있는데, 그 노력에는 탈북배경청소년의 규모를 파악하는 것도 포함이 되어야 한다고 생각함. 이들의 규모를 파악하지 못하면 필요하고 적절한 지원을 제공하는 것에도 한계가 따를 수밖에 없기 때문임.
- 규모를 파악할 필요가 있음. 국내 거주 가능성이 높은 반면 언어와 문화차이로 인해 적응상의 어려움을 가지고 있으므로 지원제도와 법이 필요함.
- 이주배경 아동·청소년지원법이 제정이 된다면, 법의 적용 대상에 포함하여 실태조사를 해나가야 할 것으로 보임.
- 국적 부여나 지원에서 일반적인 이주배경 아동·청소년과는 달라야하기에 파악할 필요가 있을 것으로 생각됨.
- 다른 탈북배경청소년(북한이탈주민 청소년, 남한출생 탈북배경 청소년) 또는 국외출생 국제결혼가정 청소년과는 이미 받을 수 있는 지원이나 보장되는 사회

	전문가 의견
	<p>서비스 권리가 다른데 당연히 정책대상으로서라도 따로 파악해야 함.</p>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이런 고민과 논의들로 인해 제3국 출생 탈북배경 청소년은 그동안 우리 사회 정책지원의 사각지대에 놓여 있음. 이번 연구와 향후 행정연계 및 법제화에서 제3국 출생 탈북배경 청소년에 대한 규모 파악이 가능해지면, 정책 수요 파악과 정책 수립까지 이어질 것으로 기대됨.</li> <li>• 제3국 출생 탈북배경 청소년에 대한 규모 파악의 필요성은 크다고 생각됨. 다른 탈북배경청소년과 달리 제3국 출생 탈북배경 청소년의 문제는 국제외교문제, 국적판정문제, 강제송환문제, 본인의 신원을 증명하기 어려움으로서 발생하는 문제 등이 함께 따라오는 문제가 있음. 이런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는 정부나 관계 부처의 관심이나 역량 투입이 필요한데, 그 기반을 마련하기 위해 서라도 제3국 출생 탈북배경 청소년에 대한 규모파악, 실태파악을 하여 그 문제의 중요도나 사회적 환기를 해야 하는 것이 필요함.</li> <li>• 규모 파악이 필요하다고 생각함. 국내 입국한 다수의 탈북여성들은 제3국에 자녀가 있는 경우가 많으며, 그녀들의 삶의 희망이 자녀들을 국내에서 교육시키고자 하는 열망이 큼. 위험한 길에 자녀를 동반할 수 없거나 '부'의 반대로 '모'가 입국 한 후 자녀와 '부'를 데려오는 경우가 일반적이는데, 그 과정에서 가족의 해체와 재결합 등이 이루어지며 발생하는 다양한 문제들을 겪고 있음. 그 어떤 유형보다 다각도의 정책적 지원이 필요한 대상자이기 때문에 대상자를 발굴하고 지원을 통한 안정적인 정착을 도모하기 위해 규모 파악이 필요함.</li> </ul>
필요하지 않음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외국출생 탈북배경 청소년의 규모가 크지 않고, 이를 행정자료로 파악할 수 있는 방법이 명확하지 않다면, 굳이 이를 분류하여 규모를 파악할 필요는 없다고 봄. 오히려 실태조사 등을 통해 이들을 파악하는 것이 더 효율적임. 굳이 규모를 파악할 필요가 있다면, 기존 행정정보와 실태조사 정보를 이용하여 통계적 추정을 하는 것이 비용/효과 측면에서 더 효율적임.</li> <li>• 제3국 출생 탈북배경 청소년을 별도로 규모를 파악하는 것이 어렵다는 현실적인 문제가 있으며 또한 제3국 출생이며 부모 중 일방이 탈북자이지만 다른 일방은 외국인이기도 하다는 점에서, 이 집단을 '외국출생 국제결혼자녀' 범주에 포함하는 것이 바람직할 것으로 생각됨.</li> <li>• 필요가 크게 없음. 제3국에서 '출생'했기 때문에 당사자인 청소년 스스로가 탈북보다는 제3국에 대한 정체성이 더 강할 것으로 판단됨.</li> <li>• 이주배경청소년 전체에서 차지하는 규모가 상대적으로 매우 적은 반면 해당 청소년들만의 뚜렷하게 차별되는 특징이 보인다고 하기엔 어려움이 있음. 따라서 비효율적 측면이 있음.</li> <li>• 제3국 출생의 경우 탈북배경을 증명하는 게 어려운 경우가 많이 있음.</li> <li>• 국정원 이외에는 제3국 출생 탈북배경 자녀의 규모를 파악할 수 없는 것 같음. 제3국 출생 탈북배경 자녀의 경우 한국 국적으로 바뀌었으면 모르겠으나 그러지 않고 중국 국적을 그대로 유지하고 있다면 결국 외국출생 국제결혼 자녀로</li> </ul>

### 전문가 의견

분류가 되어야 할 것 같음.

- 탈북청소년 중 제3국에서 출생할 경우 여타의 탈북민과 질적인 차이가 있는 것은 분명함. 하지만 이들은 아버지의 이주 배경을 본다면 외국인(중도입국청소년)일 수도 있음. 북한이탈주민에 대한 정책적 고려가 없다면 제3국 출생 북한이탈청소년은 중도입국청소년 범주로 포괄하는 것이 타당함.
- 제3국 출생 탈북배경 청소년의 경우 모나 부의 국적에 따라 한국 국적 취득이 용이하고 한국인으로 살아가는데 있어 크게 어려움이 없음. 그리고 그러한 경우 외부에 북한 배경을 가진 것을 드러내지 않으려고 하는 경향이 있음. 경계심이 높고 그 부분을 감추려고 하는 편이 더 강하고 필요 시 행정복지센터에 도움 요청이 가능할 것이므로 조사를 굳이 할 필요가 없다고 생각함. 다만 언어문제, 경제적 어려움, 학교 교육 적응 문제 등이 발생할 경우 이를 위한 도움을 전달체계에 참여할 수 있으면 좋겠음.
- 지원내용이나 성격이 탈북이라는 문화적 요소에 의한다면 제3국 출생을 구별할 필요는 없다고 생각됨.
- 굳이 제3국 출생 탈북배경 청소년의 정확한 규모를 파악할 필요는 없다고 생각함. 통계를 산출하는 이유 중의 하나는 정책 입안을 위해서 실태 및 규모를 파악하는 것이라 할 수 있는데, 이들이 북한에서 태어나든 제3국에서 태어나든 동일한 정책 대상이 될 것이라 생각되기 때문에 한국출생과 국외출생으로만 나눠도 충분하지 않을까 생각됨.
- 현재는 탈북배경청소년의 정확한 규모만 파악해도 괜찮다고 생각함. 한국 입국을 기준으로 보면 한국에 중도에 들어오는 청소년을 파악할 때 탈북배경, 비탈북배경으로 구분하는 것이 관리차원에서 정확할 것이고 탈북청소년에 대한 통계에서도 주요 관심사라 생각함, 어디에서 출생한 탈북인지에 대한 정보는 이 청소년들의 한국 생활에 큰 영향을 미치지 않을 것이라 생각함.
- 시간이 더 지나 그 규모가 매우 크거나, 중요한 영향력 있는 요인이 된다면, 또는 더 상세히 아는 것이 매우 쉽다면 알아서 나쁠 것은 없다는 차원에서는 파악하면 좋겠지만 그것을 구분하는데 필요한 노력만큼의 가치가 있을지 현재로는 미지수임.

#### 4) 현재의 행정통계로 연계가 어려운 경우의 대안

다음으로 행정통계로 연계가 어려운 경우 대안적인 방안을 질문한 것에 대해서는 크게 6가지 방안을 제시하였는데, 첫째는 통계에 포함되도록 하기 위해서는 체류 및 신분보장이 선행되어야 한다는 점을 들고 있었다. 행정자료라 할지라도

일단 통계에 포함되는 한, 정부 차원의 관리에 들어가는 것이고, 이 과정에서 강제 퇴거 등을 당할 수 있을 것이라는 불안감을 가질 수 있기 때문이다. 따라서 미등록 이주아동들이 발견되어도 부모를 강제로 출국시키지 않는다는 단서조항 등이 필요하고, 등록시 아동·청소년에게 필요한 서비스를 받을 수 있다는 점 등을 강조하는 방식으로 통계에 들어올 수 있는 분위기를 만들어야 한다는 의견이었다. 또는 미국처럼 일정 기간 국내에서 교육을 받고 자란 청소년들이 성인이 되었을 때 합법 체류자격을 부여하고, 대신 교육, 보건, 납세 등을 조건으로 두는 방안, 모든 이주배경 아동·청소년에게 외국인등록을 허용하는 방안 등을 제시하였다.

둘째는 법무부의 데이터 수집방법의 개선으로, 현재 가장 문제가 되는 외국인가정의 통계를 가구단위로 수집할 수 있는 방안을 모색할 필요가 있다는 것이었다. 앞에서 언급한 바와 같이 비자신청서의 가족관계 정보를 전산화 하여 이주배경 아동·청소년의 배경에 따른 유형을 구분하여 통계를 생산할 수 있도록 하는 방안이 현재로서 가장 가능한 방안이라고 볼 수 있다. 또는 임시식별번호를 사업별로 부여하기보다 주민등록번호와 같이 고유한 ID를 부여하는 방안이 필요하다는 의견도 있었다.

셋째는 일차적으로 새로운 조사를 통하여 모집단을 파악하는 작업을 제안하기도 하였는데, 전국에 있는 건강가정다문화가족지원센터를 통하여 해당 지역의 모든 이주배경 아동·청소년을 조사하여 일제히 등록시키는 방안을 제안하기도 하였고, 또는 이주배경 아동·청소년을 위한 교육, 보건, 복지 서비스를 개발하고 서비스 이용자 통계를 구축하는 방안도 제안하였다.

넷째는 출생등록제를 이용하는 방안으로 출생통보제를 이용하여 모든 아동의 출생을 파악하고, 그 중 출생등록한 외국인가정자녀를 파악하는 방안을 제시하였다.

다섯째로 직접 조사가 어려운 경우 추정하는 방법을 제안하였는데, 행정자료로 전수를 파악하는 것은 어려우므로 일정한 수준의 표집을 한 후 가중치를 부여하여 산출하는 방식이다. 이 경우 가중치를 부여할 수 있는 모집단 정보가 없기 때문에

가능성 여부에 대해서는 고민할 필요가 있다.

마지막으로 미등록자들이 스스로 등록을 할 수 있도록 하는 방안으로, 법무부가 2021년 4월에 국내출생 미등록 이주아동의 한시적 체류자격을 부여하는 ‘국내출생 불법체류 아동 조건부 구제대책’(21.4.19)이 그 예가 될 수 있다(법무부, 2021.4.19.). 「국내출생 불법체류 아동 조건부 구제대책」의 주요 내용은 국내출생 자이고, 15년 이상 국내에 체류하고 있으며, 신청일 기준 국내 중·고교 재학 또는 고교졸업자에게 체류를 허용하는 방안인데, 전문가들은 실제로 그 기준에 맞는 대상자가 500명이 안 되는 수이고 여전히 대다수의 아동들이 사각지대에 있다는 한계를 제기하기도 하였다. 따라서 위의 조건부 구제대책이 아닌 조건이 아닌 모든 미등록 이주아동들에게 한시적으로 체류자격을 부여하게 된다면, 미등록 이주아동의 통계를 파악할 수 있을 것이라는 의견이 있었다.

**표 III-9. 현재의 행정통계 연계 이외의 이주배경 아동·청소년 규모 파악 방안**

방안	전문가 의견
신분보장을 통한 참여 분위기 조성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법무부의 협조가 가장 선행되어야 할 것으로, 각 지자체와 유관기관을 통해 이주배경 아동·청소년의 부모가 일정 시기 안에 등록할 수 있는 방안을 모색해 볼 필요가 있음. 즉, 부모의 체류자격 유무와 상관없이 아동권리협약에 따른 아동의 보호자를 강제출국하지 않는다는 단서 조항을 두고, 등록 시 정부와 지자체 및 유관기관으로부터 받을 수 있는 서비스 연계가 가능하다는 점을 적극 홍보하는 방안임.</li> <li>● 행정자료가 연계되지만 이민당국이나 법무부와는 공유되지 않음을 명확히 하고, 역으로 이민당국이나 법무부와 업무협조를 하여 일정기간 국내에서 교육받고 자란 청소년에게 성인이 되는 때를 기해 국내 합법 체류 자격을 부여하는 제도를 도입하고, 교육과 보건, 납세 등을 그 조건으로 두는 방안을 고안해 볼 수 있음. 유사한 제도로 미국의 ‘DACA’와 ‘DREAMer’가 있음.</li> <li>● 모든 이주배경 아동·청소년에게 외국인등록을 허용하는 방법임. 외국인등록 시 부모를 포함한 가족 사항을 기재토록 하되, 이를 근거로 부모에게 범칙금 부과, 보호명령, 강제퇴거명령을 내리지 않는 방법임.</li> <li>● 현 상황에서 할 수 있는 방법은 최대한 이주 인권 단체들과의 협업을 하는 방안임. 행정통계의 연계가 어려운 이주배경 아동·청소년들이 안전하게 통계의 안으로 들어올 수 있는 사회적 분위기를 마련할 필요 있음.</li> </ul>

방안	전문가 의견
법무부 데이터 수집방법 개선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현재 가장 문제가 되는 범주는 가구관계가 확인되지 않는 외국인가정임. 따라서 입국심사 또는 외국인등록, 비자신청 등 국내 체류 외국인이 필수적으로 거치게 되는 행정절차 상에 가족관계에 대한 정보를 함께 수집하여 입국 당시 기준으로 라도 외국인가정의 현황을 파악하는 것이 바람직함.</li> <li>• 법무부에서 입국하는 이주민들에게 외국인으로서의 개인적 정보만 파악하는 것이 아니라 가족단위로 파악하도록 함.</li> <li>• 무국적, 출생미신고 아동·청소년의 경우 임의번호 제도를 음지에서 양지로 올리고, 최소한 안전한 성장과 교육을 위한 체계적인 임의번호 부여제도 마련 (생년월일+성별+지역 등의 조합기준 통일).</li> </ul>
직접 조사 및 새로운 통계 개발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각 지자체별로 전국에 모두 있는 건강가정다문화가족지원센터를 이용하여 지자체에 거주하는 외국인 국적별 자녀들을 모두 등록하게 하는 방법. 등록기간을 두고 모든 아동·청소년을 무국적자, 미등록자, 외국국적자 등 모두 일제히 등록 시키면 적어도 그 지자체 내 이주배경 아동·청소년의 전체 규모를 파악할 수 있을 것으로 생각됨.</li> <li>• 이주배경 아동·청소년을 위한 교육, 보건, 복지 서비스를 개발하고 이를 바탕으로 서비스 이용자 통계를 만드는 방안.</li> </ul>
출생 시 정보수집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출생통보제를 통하여 전체 출생의 발생건수를 파악하고, 외국인아동 출생등록제 마련을 통해 출생등록이 완료된 사안을 적용하면 출생미신고 아동, 외국 국적 출생아동 등의 파악이 가능할 것으로 생각됨.</li> <li>• 현재로는 한국 출생 아동은 출생등록제를 활용하고 외국출생 아동은 입국시 정보 관리를 통해 모니터링 하는 방식 정도가 있지 않을까 생각됨.</li> </ul>
통계추정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행정통계만으로 정확한 규모 추정은 어려울 것임. 여기에는 가족 관련 변인이 부족한 경우가 많음. 이를 보완하기 위해서는 일부 샘플을 취해서, 실태조사를 병행하고, 이를 통해 일종의 가중치나 레이킹 비 등을 확보하는 방안을 생각해 볼 수 있음. 주의할 점은 이때의 조사는 아동·청소년을 표집하는 것이 아니라, 행정통계의 대상집단을 대상으로 해야 할 것임.</li> <li>• 직접 파악은 어렵고 다양한 통계자료를 연계하여 규모를 통계적으로 추정하는 것이 최선으로 판단됨. 다만 이 과정에서 오차의 범위가 어느 정도 확대되는가를 파악할 필요가 있음.</li> <li>• 추정 이외에는 별 대안이 없을 것으로 생각됨.</li> <li>• 이민자 체류실태 및 고용조사를 활용하는 방안, 현재 이민자 체류실태 및 고용조사에 자녀에 대한 문항이 있기는 하지만, 국내출생 여부를 묻는 문항이 없어 아쉬운데, 향후 이러한 문항이 포함되면 (미등록이나 무국적자는 여전히 한계가 있지만) 적어도 고용허가제 외국인근로자의 국내출생 자녀에 대한 추정치는 확보할 수 있을 것으로 생각됨.</li> </ul>

방안	전문가 의견
기타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법무부가 2021.4.19.부터 시행 중인 미등록 이주아동 구제 대책을 대폭 개선해서 모든 미등록 아동·청소년에게 체류자격을 부여하는 제도를 시행한다면, 미등록 이주아동 규모 파악에 큰 도움이 될 것이라 생각함.</li> <li>• 법무부에서 2021년 4월 19일부터 2025년 2월 28일까지 국내출생 불법체류 아동 조건부 구제대책을 시행할 것을 결정하였으나, 여기에 해당되는 아동은 500명 이하의 소수 이주아동만 해당된다는 비판이 있음. 따라서 유엔아동권리협약에 의거하여 미등록 이주아동에 대한 특별체류 심사를 국가인권위원회와 여성가족부에서 담당하여 관리하는 것도 한 방안이라 생각됨.</li> </ul>

### 5) 임시식별번호 활용확대 방안에 대한 의견

국내 체류 외국인 아동 중 체류 허가를 취득하지 못하고 생활 중인 미등록 이주아동이 인권사각지대에 놓이는 문제를 해결하고자 하는 최근의 정책 중 하나가 임시식별번호의 확대이다. 이는 지난 사회관계장관회의(2021-21, 1호)에서 발표된 「미등록 이주아동 사회적 기본권 보장방안」의 내용으로, 이 내용에 따르면 각 부처별로 미등록 이주아동에 대한 서비스를 제공하기 위해 사업별 임시식별번호 활용을 확대하는 내용으로 되어 있다. 임시식별번호가 현행 사용되는 사업은 유치원 재원관리, 초·중·고 입학, 어린이집 입소, 예방접종, 응급의료 등 총 세 가지 범주인데, 추가로 한국사능력검증시험 응시, 위기청소년통합지원정보시스템 등록, 학교밖청소년 건강검진 참여, 아동복지시설이용, 정부청사 견학 등 총 6개 사업의 임시식별번호 활용을 확대하는 것이다.

이에 대하여 전문가들은 미등록 아동·청소년 포용을 위한 가장 기초적이고 전체적인 조건으로, 이를 공식화, 제도화하고 실행하는 것 자체가 매우 큰 의미를 갖는다는 평가를 하고 있었다. 또한 이를 통해 이주배경 아동·청소년들이 교육, 보건, 의료, 활동 등에서 배제되지 않을 수 있다는 점에서 긍정적으로 평가하고 있었다.

그러나 임시식별번호는 그야말로 임시적인 식별번호로 한 개인에 대한 고유한 번호가 아닌 사업에 따라 다른 번호이고 각 번호별 연계도 불가능한 상황이기

때문에 현 상태에서는 이들의 규모를 파악하기 위한 방법으로는 한계가 많다는 의견이었다. 그보다는 개인별로 고유한 식별번호를 부여하는 것이 바람직한데, 기존의 외국인등록번호를 부여하는 것이 가장 간단하고 바람직하다는 의견이었다. 또 다른 의견으로는 고유한 하나의 번호를 부여하는 것에 대하여 찬성을 하되 주민등록번호나 합법 외국인등록번호와 유사한 형태로 부여하여 번호로 인한 낙인이 생성되지 않도록 유의할 필요가 있다는 의견도 있었다.

표 III-10. 임시식별번호 활용확대방안에 대한 의견

	전문가 의견
<p>긍정적 측면</p>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임시식별번호 활용확대」와 「외국인 아동 출생등록제 도입」은, 시민사회진영에서 꾸준히 제기했던 미등록 아동·청소년 포용을 위한 가장 기초적이고 전제적인 조치이므로, 그를 공식화, 제도화, 실행하는 것 자체가 매우 큰 의미를 갖는다고 생각됨.</li> <li>• 백신접종 등에서 생성된 임시식별번호나 학생증·재학증명서를 활용하여 외국인 등록번호가 없는 이주배경 아동·청소년의 신분증으로 활용할 수 있도록 하는 방안은 현 상황에서는 이들의 사회복지서비스 이용을 확대하는데 중요한 장애를 낮추는 효과를 가질 수 있을 것으로 봄. 단, 이러한 신분증 대안들이 제대로 활용되기 위해서는 현장 담당자들에 대한 홍보와 교육이 중요할 것으로 생각됨.</li> <li>• 미등록 아동의 경우 권리의 사각지대에 있기 때문에 외국인 아동 출생등록제 도입은 필요하고, 임시식별번호가 부여되면 교육, 복지 등에 있어 보다 체계적인 관리도 가능해질 것이기 때문에 물론 긍정적으로 봄.</li> <li>• 아동의 인권을 생각했을 때 임의식별번호 부여는 기본적 생존과 발달에 영향을 끼치며, 아동이 자신의 존재 자체를 증명할 수 있는 제도로서 빠른 도입 필요.</li> <li>• 미등록 이주아동에게 개인 식별번호를 부여하는 것은 바람직한 정책 방향이라고 생각함. 불법체류 중인 외국인의 자녀에게 식별번호를 부여하여 이들을 위한 보호 조치를 취할 수 있게 하는 것은 그들의 학습권, 건강권 등의 인권 보장에 도움이 될 수 있기 때문임. 다만 이 개인 식별번호 부여가 부모의 불법체류 상황에 대한 파악과 같은 불이익을 줄 수 있는 가능성을 법적으로 차단하는 것이 필요함.</li> <li>• 임시식별번호를 발급하여 관리하는 것에 찬성함. 이 번호로 복지혜택을 받을 수 있도록 제도화하면 이들의 권리 보장 측면에서 긍정적인 효과가 있을 것이기 때문에 적극 추진해야 할 것으로 생각함.</li> <li>• 미등록 이주아동의 다양한 권리가 보장될 수 있다는 점, 그리고 정부입장에서는 현황이나 규모 파악이 가능해진다는 점 등의 효과가 기대됨. 그리고 코로나19</li> </ul>

전문가 의견	
	<p>등에서 볼 수 있었듯이 전염병이 있을 경우에는 이들에게도 검사와 백신접종이 체계적으로 이루어질 수 있기 때문에 사회 전체적인 안전에도 기여할 수 있음.</p>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임시식별번호를 이용하여 학교 활동, 입시, 의료접근권 강화 등을 꾀한다면 이는 외국인등록번호가 있는 등록외국인은 제외하고, 미등록 이주아동에 한하여 의미 있는 제도일 것이며, 국내출생 미등록 이주아동의 경우 출생등록제를 통해 임시 식별번호를 부여받는다면 활용가능성은 높을 것임.</li> <li>• 미등록 이주아동의 경우 학교생활(수련회 참여등)에서 배제되는 경우가 있었음. 임시식별번호 확대에 의해 교육권 등 기본권을 제대로 보장받을 수 있다고 판단함.</li> </ul>
신분 보장의 필요성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신분 노출 및 그로 인한 강제퇴거의 두려움을 최소화시킬 수 있어야 함. 실효성제고를 위한 추가조치와 관련, 통보의무의 완전폐지 등의 조치(미국의 몇몇 주와 같이, 사회복지 담당 공무원의 ‘클라이언트의 국적, 인종, 체류자격, 등록 여부 등에 대한 질문의 원천적 금지의 규범화)가 필요함.</li> <li>• 실제로 미등록 이주민들이 모두 이 번호를 받도록 유도하기 위해서는 이 번호를 받음으로써 혹시 당국에 의해 발각되거나 추방될 수 있다는 불안감을 해소할 수 있는 법제도적 장치도 함께 마련될 필요가 있음.</li> </ul>
한계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통일된 번호 발급은 자칫 이들에 대한 통제나 단속에 사용될 수 있기 때문에 부처별 데이터 수집이 필요하다고 봄.</li> <li>• 어떠한 번호로 관리를 하든 그것보다 중요한 것은 그 번호로 등록하는 순간 미등록임이 확인되어 추방 위험으로부터 자유롭지 못하다는 것임. 통보의무 유예 조치가 과연 실효성이 있을지, 그것을 미등록 체류 당사자들이 과연 신뢰할 수 있을지 의문임.</li> <li>• 속지주의 국적 제도가 도입되지 않는 한 근본적인 문제에는 큰 변화가 없다고 생각됨.</li> <li>• 기존의 임시식별번호는 사업별로 다르며 서로 연계되지 않음. 따라서 하나의 고유한 ID가 필요한데, 이것을 새로운 번호로 만든다면 혼란만 가중될 것으로 생각됨. 따라서 차라리 ‘외국인등록번호’를 부여하는 것이 가장 간단한 방법임. 한시적이라도 모든 미등록 이주아동·청소년들에게 체류자격을 주고 ‘외국인등록번호’를 부여한다면 통계 파악에 큰 도움이 될 것이라 생각됨.</li> <li>• 임시식별번호가 권리보장보다는 출입국 관리나 통제를 위한 것이라고 느낄 때, 미등록 이주배경 아동·청소년이 임시식별번호를 사용하지 않을 가능성이 클 것으로 생각됨.</li> <li>• 국내 출생하지 않은 미등록 체류자의 경우 출생등록의 대상에서 제외되며, 임시 식별번호 부여를 자발적으로 받고자 하는 유인이 있지 않으면 통계 생성에 어려움이 있을 것으로 생각됨.</li> </ul>

전문가 의견	
임시번호 보다는 고유한 식별번호 필요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기본적으로 미등록 이주아동에 대한 권리는 ‘이주아동권리보장법’과 같은 법 제정이 되어야 한다고 생각함. 임시식별번호는 말 그대로 임시인 것이고, 이것이 우리나라의 각종 전자정부 시스템 안에서 통용되지 않기 때문에 실효성이 크지 않다고 봄. 과도기적 도입은 필요하다고 생각함.</li> <li>• 사안별 임시식별번호가 아니라 내국인의 주민등록번호와 같이 미등록 이주아동에게 고유의 식별번호를 부여한다면 그 번호를 통해 행정연계가 더욱 효율적으로 가능할 것으로 보임. 다만 미등록 이주아동 고유식별번호가 내국인 주민등록번호나 합법 외국인등록번호 등과 눈에 띄는 차이가 없어야 할 것임.</li> <li>• 현재와 같이 임의로 발급하는 임시식별번호를 사용하여 현황통계를 생성할 경우 과대 추정 문제 발생 가능성이 있으므로 통합된 하나의 임시식별번호를 사용할 필요가 있음. 미등록 아동이 서비스 기관에 방문할 때 해당 아동의 기본 정보(출생년도, 성별, 이름, 거주지 등)와 함께 고유식별번호를 부여하여 관리할 필요가 있음. 다만 임시식별번호 바탕의 통계를 생성할 때에는 모든 미등록 아동에게 부여된 것이 아니므로 반대로 과소 추정 문제 발생 가능.</li> <li>• 임시식별번호가 또 하나의 낙인을 만들 수 있다는 우려가 있음. 주민등록번호와는 구별되지만 그 식별이 최소화 되는 것이 필요함.</li> <li>• 외국인 가정의 증가와 미등록 이주아동의 증가 등을 고려하고, 이들이 한국 사회에 편입될 가능성을 고려한다면, 주민등록번호 수준의 관리번호의 발급이 필요함.</li> <li>• 임시식별번호라는 용어 자체에서 주는 ‘임시’라는 것이 문제가 있어 보임. 저 태어나는 순간 주민권을 갖게 되는 특별한 고유식별 번호를 주는 것이 바람직함.</li> <li>• 임시식별번호도 지금 임시방편이고, 아이가 자라면서 어떻게 식별번호를 주민번호로 변경할 수 있을지 등에 대한 대책도 함께 고려해야 할 것임.</li> </ul>

## 6) 출생등록제 도입에 대한 의견

임시식별번호와 함께 출생등록제에 대한 내용도 앞에서 언급한 사회관계장관회의에서 발표되었는데, 이를 통한 미등록 이주아동 통계 사각지대 해소의 가능성을 파악하고자 전문가들에게 출생등록제에 대하여 질문하였다. 출생등록제는 현재 출생신고가 안 되는 아동이 없도록 하기 위하여 병원에서 출생정보를 건강보험심사평가원에 통보하는 방안이다. 이는 2021년 6월 21일 법무부 ‘가족관계의 등록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 법률안으로 입법예고 되어 있는 상태이다(법무부, 2021.6.21.).

출생등록제에 대하여 긍정적인 측면이 있고, 아동권리 보호 측면에서 진전된 결과이며, 통계구축에 활용할 수 있을 것이라는 긍정적 평가도 있으나, 출생등록을 부모가 하는 경우 부모가 불법체류이면 병원에 가지 않게 되고, 산부인과에서 통보하는 경우 역시 신분노출에 대한 염려로 인하여 등록을 하지 않을 수 있는 가능성을 제시하였다. 이런 경우 병원에 가지 못하고 오히려 병원이 아닌 곳에서 아이를 낳는 문제가 발생할 수 있고, 이로 인해 산모가 위험한 상황에 처하는 등의 2차적인 문제도 발생할 수 있다는 의견이 제시되었다.

이와 더불어 새로 출생한 아이들만 등록을 하게 되면 기존에 태어난 아이들은 제외되는 경우 미등록 이주아동·청소년 현황통계는 여전히 불완전한 상태로 남아 있게 되기 때문에 기존의 미등록 이주아동을 포함하기 위한 방안이 필요하다는 의견도 있었다. 따라서 미등록 이주아동의 규모를 파악하기 위한 방안으로 활용될 수는 있으나 이것만으로는 부족하고, 이미 태어나서 등록되지 않은 이주배경 아동의 수를 파악할 수 있는 방안이 함께 모색될 필요가 있음을 시사하였다.

마지막으로 임시식별번호나 가족관계등록부 허용이 미등록 체류자 부모로부터 태어난 아동에게 즉시 국적이나 체류자격이 인정되는 것으로 오인될 우려가 있으므로, 이에 대한 이에 대한 명확한 해석이 필요하고, 이에 대해 제도 시행 전 사전 홍보가 필요하다는 의견도 있었고, 보편적출생등록이라는 대의적 측면에서 진행한다면 실효성이 있다고 보지만, 자녀의 출생으로 한국에서 거주를 피하는 성인들의 경우에 대하여 어떻게 해결할 것인지에 대한 우려의 목소리도 있었다.

표 III-11. 출생등록제 도입에 대한 의견

전문가 의견	
긍정적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국내출생 미등록 이주배경 아동을 위한 '외국인아동 출생등록제'를 실시할 수 있도록 법제를 구축한다는 것은 아동권리 보호 측면에서 중요한 진전이라고 생각됨. 문제는 이러한 법제가 국회를 통과할 수 있도록 이를 추구하는 목적과 실효성에 대한 정확한 정보로 국민적 이해를 구하고 공감대를 형성하는 것이 무엇보다</li> </ul>

전문가 의견

중요하다고 생각함.

- 출생등록제의 경우 역시 국내 모든 아동에게 보편적으로 필요한 제도로서 이주아동 역시 예외 없이 등록될 수 있도록 함으로써 방임, 학대, 범죄에서 보호할 수 있음.
- 출생등록제가 단순히 통계규모를 파악하는 것뿐만 아니라, 아주 기본적인 건강권 혜택을 누릴 수 있는 복지지원방안으로 활용될 수 있기 바람.
- 미등록 예방을 위한 출생통보제를 통한 보편적 출생등록제를 적극 옹호함. 더 나아가 유엔은 1954년 '무국적자 지위에 관한 협약'과 1961년 '무국적자 감소에 관한 협약'을 각각 결의하였으나, 한국은 두 번째 협약에 아직까지 서명하지 않음. 협약에 가입 시 부모의 국적이나 법률상 지위에 상관없이 태어나는 즉시 국적을 주도록 의무화하는 '보편적 출생등록제'를 도입해야 하나 한국 정부는 아직 꺼리고 있음. 15개 시민사회단체가 참여하는 '보편적 출생신고 네트워크'가 이 제도를 도입하는 것을 촉구하고 국가인권위원회 역시 이를 권고하고 있는 상황임.
- 외국인아동 출생등록제의 경우 미등록 체류자의 자녀 출산 및 현황 파악에 도움이 될 수 있을 것으로 보임.

한계

- 출생신고가 안 되는 아동이 없도록 하기 위해 병원에서 출생정보를 건강보험심사평가원에 통보하는(출생신고는 아니고 태어난 아동을 알리는 목적의 등록) 출생등록제를 도입하려 하고 있음(21.6.21. 법무부 '가족관계의 등록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입법예고). 그렇게 되면 한국에서 태어났음에도 출생신고가 안 되는 아동이 파악될 것이라는 의견이 있지만, 한편으로는 병원에서 태어나지 않는 아동에 대한 파악이 안 되며 자신의 출산이 알려지지 원하지 않는 여성들이 일부러 병원이 아닌 집이나 다른 곳에서 출산을 하다 더 위험한 상황이 될 수 있다는 의견도 있음.
- 출생등록제가 도입이 되면 자녀를 한국에 출산한 외국인의 경우도 적용될 것이나. 이 경우는 통보 면제임에도 불구하고 불법체류 외국인은 불법체류 사실이 적발될 불안함에 가정출산이나 위험한 환경에서 출산할 수 있는 가능성이 있음.
- '외국인아동의 출생등록에 관한 법률' 제정을 추진하고 국내출생 외국인 아동에게 출생등록번호를 부여해 신원확인에 활용할 계획이라고 밝혔으나(2021.11.24. 제21차 사회관계장관회의), 이 역시 불법체류 부모의 아동은 파악에 한계가 있을 수 있음.
- 국내출생 외국인 아동에 대한 '출생등록제' 도입을 추진하겠다고 발표했지만, 제도 마련 이전에 태어난 아동들에게 소급 적용되지는 않을 것이고, 출생등록이 외국인등록(체류자격 부여)으로 연계되지 않는 한 미등록 체류자들이 제도를 이용할 가능성도 높아 보이지 않음.
- 외국인아동 출생등록제는 신고 주체가 누구인가가 중요함. 신생아 부모(불법체류자)가 직접 복지센터에 가서 신고하게 한다면 본인의 신분이 노출될까 두려워

	전문가 의견
	<p>등록 건수가 실제 출산에 비해 많지 않을 가능성이 있음. 따라서 산부인과에서 바로 등록이 가능하도록 하는 방안이 필요함.</p>
<p>개선방안 및 추가 고려사항</p>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외국인 아동만 출생등록제를 할 것이 아니라, 궁극적으로 출생신고제도의 변화에 발맞춰 대한민국에서 태어난 아이를 출산한 의료기관에서 신고할 수 있도록 하 되, 외국인의 경우도 예외를 두지 않는 제도로 구축하는 것이 필요함.</li> <li>• 실효적으로 출생등록이 가능하려면 보편적으로 출생등록이 가능한 공적장부를 갖출 필요가 있음. 즉, 이주아동만을 따로 등록하는 등록장부는 출입국행정예 사용하기 수월함. 당연히 가족관계등록과 연계가 될 가능성이 많으므로 관리도 법무부가 아닌 법원행정처에서 하는 것이 적당함. 다만, 체류자격이 끝난 후 국내에 체류하고 있는 가족과 자녀들의 경우 현황 파악을 위하여, 법무부와 행정 안전부의 연계 관리가 필요한 것으로 보임.</li> <li>• 외국인 아동 출생등록제는 단순히 규모 파악이나 통계구축을 넘어 미등록 이주 아동의 권리보장 측면에서 필요한 사안이라 판단됨. 다만, 외국인 아동에게 임시 식별번호 부여나 가족관계등록부 허용이 미등록 체류자 부모로부터 태어난 아동 에게 즉시 국적이나 체류자격이 인정되는 것으로 오인될 우려가 있음. 따라서 이에 대한 명확한 해석과 제도 시행 전 사전 홍보가 필요함.</li> <li>• 보편적출생등록이라는 대의적 측면에서 진행한다면 실효성이 있다고 봄. 단, 자녀의 출생으로 한국에서 거주를 피하는 성인들의 경우에 대한 대안을 마련할 필요가 있음.</li> </ul>

## 7) 기타

기타 사항으로 통계청, 여성가족부, 교육부 회의에서 현재 도출된 데이터 중 탈북자와 외국인가정의 자녀를 탈북배경청소년과 국제결혼가정자녀 중 어떤 범주로 분류하는 것이 바람직한가에 대한 문제가 제기되어 이에 대한 전문가의 의견을 수렴하였다. 현재 생산된 통계에서 여성가족부는 국제결혼가정자녀로, 교육부는 탈북배경학생으로 구분을 한 상태이다. 전문가들 중 일부는 국제결혼가정자녀에 포함하는 것이 합당하다는 의견을 제시하였고, 일부는 탈북배경청소년에 포함시키는 것이 합당하다는 의견이었는데, 두 가지 범주를 가르는 것은 결국 탈북자와 외국인결혼으로 이루어진 가족의 자녀가 일반적인 국제결혼가정자녀와 그 특성에

서 차별성이 있는가에 대한 판단이었다. 국제결혼가정자녀로 분류해야 한다는 입장에서는 탈북자도 결국 한국인이고 이주민의 특성보다 한국인의 특성이 강하며, 국제결혼가정이 더 포괄적인 범주이며 욕구 또한 이주배경에 더 적합하다는 것이 주요 의견이었다.

이에 비하여 탈북배경청소년으로 분류하는 것이 타당하다고 응답한 전문가들은 해당 청소년들의 경우 단순히 국제결혼가정자녀로 분류하기에는 그들만의 독특한 특성과 정책적 요구도가 있기 때문에 탈북배경으로 분류를 하는 것이 더 낫고, 행정적으로나 정책적 관점에서도 이들은 다른 이주배경 아동·청소년들과는 다르기 때문에 탈북배경청소년으로 구분해야 한다는 의견이었다.

또 다른 의견으로는 양쪽 범주에 모두 넣고 중복되었음을 표기하는 방식을 제안하였다. 즉, 탈북배경가정이면서 국제결혼가정자녀임을 별도로 표시하는 방법이다. 또는 국제결혼가정에서 하위유형으로 범주화하여 표시하는 방법 등을 제시하였다. 이 경우 통계 사용자의 목적에 따라 각자 원하는 방식으로 통계를 활용할 수 있다는 점에서 바람직한 방법으로 생각된다.

그 이외에 별도의 하위 유형을 만드는 방법으로 혼합형 범주를 생성하는 방안을 제시하였고, 기타 이주배경 아동·청소년의 범주에 탈북배경청소년을 포함시키는 것 자체가 적절치 않다는 의견도 있었다.

표 III-12. 탈북자와 외국인가정 자녀의 분류에 대한 의견

구분	전문가 의견
국제결혼 가정자녀 (10)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국제결혼가정이 정책적 수요측면에서 더 포괄적임.</li> <li>●국제결혼가정이 탈북배경가정보다 더 포괄적이고 욕구 또한 이주배경에 더 적합</li> <li>●한국인과 외국인 혹은 귀화자로 구성된 가정이기 때문임.</li> <li>●탈북자도 한국국적자이고 이주민보다는 한국인의 특성이 강함.</li> </ul>
탈북배경 청소년 (13)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남한사회 적응 양상과 그 과정에서 활용하는 사회적 자원 등을 감안할 때 국제결혼이라는 특성보다는 탈북민이 구성한 가정이라는 특성이 강함.</li> <li>●정책적으로 특수한 대상이므로</li> <li>●탈북은 정책적 지원내용이 다른 국제결혼가정과 다를 수 있기 때문임.</li> </ul>

구분	전문가 의견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탈북으로의 범주화는 현재의 국적이 아닌 탈북배경이 중심이므로</li> <li>●행정 및 정책적 관점에서 국제결혼 및 외국인 자녀들과 다른 특성을 갖고 있음.</li> <li>●탈북청소년들의 특수성이 존재함.</li> </ul>
이중통계 (5)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양쪽 통계에 다 넣고 중복되었음을 따로 표기</li> <li>●탈북배경가정이면서 국제결혼가정인 것으로 중복 포함하고 별도 표시</li> <li>●국제결혼가정에서 하위 유형으로 범주화하여 중복적으로 포함</li> <li>●중복통계를 제시하고 표시</li> </ul>
별도 유형화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별도로 유형화</li> <li>●혼합형으로 범주화 할 필요도 있음.</li> </ul>
기타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이주배경 아동·청소년의 범주에 ‘탈북청소년’을 포함시키는 것 자체가 무리가 있음.</li> <li>●포함에 찬성하지는 않음.</li> </ul>

#### 4. 행정통계 연계를 통한 이주배경 아동·청소년 현황통계 정확성 제고방안

지금까지 이주배경 아동·청소년 현황통계 작성을 위한 행정자료 연계의 성과와 한계에 대하여 분석하고, 각 사안에 대한 전문가들의 자문의견을 요약 제시하였다. 이에 근거하여 볼 때, 향후 행정통계 연계를 통하여 이주배경 아동·청소년의 현황통계를 보다 정확하게 파악하기 위한 방안으로 다음과 같은 것들을 제안할 수 있다. 현재 상태에서 통계구축이 어려운 부분이 외국인가정자녀의 국내출생, 국외출생구분, 제3국 출생 탈북배경 청소년의 규모, 미등록 이주 아동·청소년의 규모 등 크게 세 가지 부분이다. 이와 관련하여 대안을 생각해보면 다음과 같다.

첫째, 외국인가정의 가족관계를 파악할 수 있는 방안으로 통계청에서 추진하고 있는 이민자·외국인통계등록부를 가구단위로 생성하는 방안을 생각해볼 수 있다. 이를 위해서는 가구단위의 정보가 필요한데, 이는 법무부의 사증발급신청양식에 있는 배우자 및 자녀정보를 전산화하는 작업이 선행될 필요가 있다. 현재 비자사증신청양식에는 개인의 성별, 생년월일, 국적, 출생국가, 국가신분증번호, 여권번호 등 인적사항과 체류자격, 체류기간, 사증의 종류 등이 포함되어 있고, 혼인사항

및 가족사항으로 배우자 인적사항, 자녀유무 등이 포함되어 있으며, 학력, 직업, 방문목적, 국내체류가족, 동반입국가족 등을 조사하고 있다. 이 때 동반가족의 성명, 생년월일, 국적, 관계 등을 작성하도록 되어있기 때문에 이 정보를 연계하게 되면 외국인가정의 가족관계정보가 통계로 작성될 수 있을 것으로 생각된다. 만일 이 내용을 전산화한다면, 동반입국가족 또는 현재 함께 살고 있는 가족의 여권번호나 외국인등록번호 등 개인 ID를 기입하도록 하면, 좀 더 쉽게 연계가 가능할 것으로 생각된다.

둘째, 제3국 출생 탈북청소년 통계 구축방안으로는 외국인가정과 마찬가지로 통일부의 하나넷 자료를 가구단위로 생성하는 작업이 필요하다. 통일부에서 보유하고 있는 북한이탈주민 통계의 경우는 외국인 통계에 비하여 훨씬 수월할 수 있다. 통일부에서 북한이탈주민 전수에 대한 정보를 가지고 있고, 외국인이나 이민자에 비하여 그 수가 훨씬 적기 때문이다. 따라서 하나넷에 있는 북한이탈주민 전수를 대상으로 가족관계를 조사하고, 그 중 자녀의 정보에서 자녀의 출생지를 조사하는 항목을 추가하게 된다면, 본 연구에서 정의하는 모든 하위유형의 탈북배경청소년 규모가 정확히 파악될 수 있을 것으로 생각된다.

셋째, 미등록이주아동·청소년 통계구축 방안은 단순하지 않고, 보다 다각적 접근이 필요하다. 일단 체류기간의 만료로 인하여 미등록이 된 경우와 같이 개인별 등록번호가 존재하는 경우는 제외하고, 국내출생 미등록 이주아동의 경우를 살펴보면, 일차적으로는 출생등록제를 통하여 등록번호를 부여하고, 이미 출생하였으나 개인식별번호를 소지하지 못한 아동·청소년에 대해서는 한시적으로 체류자격을 부여하여 등록번호를 제공하는 등의 조치를 취하여 통계청 이민자·외국인통계 등록부에 포함을 시키는 방법을 생각해 볼 수 있다. 물론 한시적으로 체류자격을 부여하기 위한 조건에 따라 여전히 사각지대가 존재할 수 있으나, 이 두 가지 방식을 통하여 장기적으로 통계를 보완해 나가면 점차 정확성을 높일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한다.

이러한 내용들은 사실상 단기간에 해결되기 어려운 것이 사실이다. 그러나 현 시점에서 당장 실현되기 어렵다 할지라도 다음 단계에서 추진해야 할 과제를 구체적으로 파악 및 제시할 때 목표 달성이 더 빨라질 수 있다고 생각하기 때문에 장기적으로 지속적으로 노력해야 할 과제로 제시하였다.

# ○ — 제Ⅳ장 이주배경 아동· 청소년 통계작성을 위한 법제화방안

- 1. 이주배경 아동·청소년 현황통계 및 실태조사 법제화의 필요성
- 2. 이주배경 아동·청소년 현황통계 및 실태조사 관련법 검토
- 3. 전문가 의견조사
- 4. 이주배경 아동·청소년 현황통계 및 실태조사 법제화방안



### 1. 이주배경 아동·청소년 현황통계 및 실태조사 법제화의 필요성

본 연구는 앞서도 언급한 바와 같이 「포용사회구현을 위한 이주배경 아동·청소년 성장기회격차 해소방안연구: 통계구축방안을 중심으로」의 후속 연구이다. 위 연구에서는 각 부처의 이주배경 아동·청소년의 개념 및 용어를 통일하고, 각 통계별 연령 발표단위를 통일하며, 국내 이주배경 아동·청소년 관련 통계의 연계 시스템을 구축하고, 국내출생 미등록이주아동·청소년의 규모를 파악하며, 이주배경 아동·청소년의 통계구축을 위한 총괄기관 지정, 통계연계 및 공표 등과 관련한 법적 근거 마련이 필요함을 제시한 바 있다(양계민 외, 2020). 법적 근거가 필요한 이유는 이주배경 아동·청소년의 현황통계 및 실태조사를 위해서는 다부처, 다기관이 모두 관련이 될 수밖에 없는 상황에서 연계의 법적 근거가 없으면 통계작성의 추진과정에서 많은 걸림돌이 있기 때문이다. 예를 들면, 이미 본 연구과정에서 통계청에서 교육부와 통일부 데이터를 연계하기는 하였으나 이 과정에서 개인정보보호의 문제가 제기되었다. 이에 데이터 연계 작업이 개인정보 보호법의 예외조항에 해당되어 문제가 없음을 확인하였고, 교육부는 초·중등교육법 시행령을 근거로 연계가 가능하였다. 향후 이주배경 아동·청소년의 행정자료 연계작업은 더 많은 부처 데이터를 포함할 수 있는데, 그 과정에서 각 부처별로 법적 근거를 찾는 과정이나 부처의 정책적 판단과정을 반복적으로 거치기보다는 명확한 근거법을 마련함으로써 보다 안정적으로 통계작성이 가능하도록 할 필요가 있기 때문

이다. 이주배경 아동·청소년 실태조사 역시 안정적으로 추진되기 위해서는 법적 근거를 마련하는 것이 필요하다.

## 2. 이주배경 아동·청소년 현황통계 및 실태조사 관련법 검토

이주배경 아동·청소년 현황통계 및 실태조사의 법적 근거를 검토하기 위하여 「이주배경 아동·청소년 현황통계 생성을 위한 행정자료 연계방안 연구」에서 이미 청소년복지 지원법, 청소년 기본법, 다문화가족지원법, 이주가족지원법(안), 이주배경 아동·청소년지원법(신설) 등의 특징과 장점, 그리고 한계 등을 아래의 <표 IV-1>과 같이 분석하여 제시한 바 있다.

표 IV-1. 이주배경 아동·청소년 관련 법률 특성 비교

법률	특징
청소년 복지지원법	(장점) 이미 이주배경 아동·청소년을 규정하고 있는 법이라는 점에서 가장 근접함. (한계) : 법의 대상이 만 9세에서 24세로 8세 이하의 아동이 제외되는 문제. : 국내로 이주하여 사회적응 및 학업수행에 어려움을 겪는 청소년이라고 규정하는 점.
청소년 기본법	(현황) 청소년종합실태조사에 대한 규정이 있음. (한계) 9세 미만의 아동연령층에 대한 포괄이 어렵다는 점.
다문화가족 지원법	(현황) 다문화가족실태조사에 대한 내용이 포함되어 있음. (한계) 외국인가정 아동·청소년과 탈북청소년이 배제되는 문제. (기타) 현재 이주가족지원법으로 개정하는 개정안이 제출됨.
이주가족지원법 (안)	(장점) 제3조 아동·청소년이란 24세 이하인 사람을 말한다고 되어있어서 연령의 문제없음. : 대상자에 결혼이민자, 귀화자, 북한이탈주민, 난민도 포함. (한계) : 외국인가정자녀를 포함하지는 않는다는 한계. : 중도입국아동·청소년의 지원에 관한 언급(제 15조)이 별도로 규정됨. : 법안이 통과될 가능성이 낮음.
이주배경 아동·청소년 지원법(신설)	(특징) 별도의 법률을 정하여 이주배경 아동·청소년의 연령과 배경 상관없이 발달에 필요한 정책적 지원의 내용을 모두 포함하는 방안. (장점) 이주배경 아동·청소년의 지원, 현황통계작성, 실태조사 등 청소년에게 필요한 내용을 모두 포함할 수 있음. (한계) : 새로운 법률을 만들어서 통과시키는 데 시간이 소요됨. : 탈북청소년을 포함했을 때 통일부의 반발이 예상됨. : 기존의 다문화가족지원법이나 청소년복지 지원법과의 중복문제로 가능성 낮음.

\* 출처: 양계민 외, 2021: 186의 <표 5-5>

분석결과, 이주배경 아동·청소년지원법의 경우 신설가능성을 검토하였으나 기존에 유사한 법이 이미 존재하고 있는 상황에서 중복의 문제가 발생하기 때문에 기존의 법제 중에서 가장 이주배경 아동·청소년과 밀접한 관계를 갖는 ‘청소년복지 지원법’의 개정안을 제시하였다(양계민 외, 2021; 186). 이 때, 현 법체계에서는 아동연령 중 8세 이하의 연령층이 청소년복지 지원법에 포함될 수 없다는 문제점이 있어 이를 현황통계 조사 대상 연령규정의 확대로 해결하고자 하였다. 그러나 장기적인 입법전략에서는 이주배경 아동과 청소년을 아우를 수 있는 개념의 형성이나 단행 법률의 제정도 검토할 필요가 있다고 결론을 내린 바 있다(양계민 외, 2021; 186).

### 3. 전문가 의견조사

위 연구에서 검토한 결과에 더하여 본 연구에서는 법제화와 관련하여 아래의 <표 IV-2>에 제시된 바와 같이 이주배경청소년전문가, 이주 및 통계전문가, 탈북 청소년전문가 및 법전문가 등 총 35명을 대상으로 전문가 의견조사를 실시하였다. 전년도에 협동과제 ‘이주배경 아동·청소년 현황통계 생성을 위한 행정자료연계방안연구’에서도 관련법에 대한 장단점을 검토한 바 있으나, 그 연구에서는 청소년기본법, 청소년복지 지원법, 이주배경 아동·청소년지원법(안), 다문화가족지원법, 이주가족지원법 등에 관하여 전반적으로 다루었다. 연구결과 청소년복지 지원법의 개정이 가장 현실적인 안으로 제시되었다. 그러나 청소년복지 지원법이 가지는 현실적인 장점에 비하여 여전히 한계가 존재한다는 점에서, 새로운 법제도를 모색하는 방안을 고려하고자 전문가들 대상의 전문가 의견조사를 실시하였다.

이와 같이 전문가들을 대상으로 이주배경 아동·청소년의 통계구축을 위한 법제화방안을 마련하기 위하여 i) 이주배경 아동·청소년의 개념과 하위유형에 대한 의견, ii) 이주배경 아동·청소년 관련 기존 법안의 특성 및 한계, iii) 이주배경

아동·청소년의 통계 관련 조항 포함에 적합한 법안, iv) 이주배경 아동·청소년의 통계 관련 법안에 포함되어야 할 내용, v) 이주배경 아동·청소년지원법 제정 시 포함범위, vi) 이주배경 아동·청소년지원법 제정 시 포함해야 할 내용 등에 대한 의견을 수렴하였다.

표 IV-2. 전문가 의견수렴 참여자 명단 (영역별, 가나다순)

영역	연번	이름	소속
이주배경 청소년 전문가	1	강○○	□□건강가정다문화가족지원센터, 센터장
	2	김○○	□□연구소, 연구위원
	3	김○○	서울□□청소년센터, 센터장
	4	김○○	□□청소년지원재단, 소장
	5	김○○	한국□□연구원, 연구위원
	6	신○○	서울시□□개발원, 원장
	7	오○○	경기도□□지원센터, 소장
	8	이○○	□□시청소년센터, 센터장
	9	장○○	□□대학교, 교수
	10	전○○	□□대학교, 교수
	11	조○○	□□대학교 교육대학원, 교수
	12	최○○	□□도여성가족재단, 부연구위원
	13	최○○	한국□□연구원, 연구위원
	14	허○○	□□시청소년드림센터, 부센터장
이주 및 통계 전문가	15	변○○	한국□□연구원, 연구위원
	16	오○○	한국□□개발원, 연구사업운영원
	17	유○○	한국□□연구원, 선임연구위원
	18	이○○	□□연구원, 연구위원
	19	임○○	한국□□개발원, 선임연구위원
	20	정○○	□□대학교 사회발전연구소, 객원연구원
	21	조○○	한국□□연구원, 부연구위원
	22	최○○	□□정책연구원, 연구위원

영역	연번	이름	소속
탈북청소년 전문가	23	김○○	한국□□개발원, 연구위원
	24	김○○	□□대학교, 연구교수
	25	윤○○	□□플랜, 연구원
	26	이○○	□□대학교, 교수
	27	장○○	□□재단, 조사개발팀장
	28	조○○	□□연구원, 선임연구위원
	29	최○○	□□도청, 평화대변인
법전문가	30	권○○	□□대학교 대학원, 조교수
	31	마○○	사단법인 □□루, 변호사
	32	이○○	이주민센터 □□, 변호사
	33	이○○	이주민센터 □□, 변호사
	34	최○○	□□연구원, 연구위원
	35	최○○	□□연구원, 연구위원

### 1) 이주배경 아동·청소년 관련 기존 법안의 특성 및 한계

다문화가족지원법, 청소년복지 지원법, 「북한이탈주민의 보호 및 정착지원에 관한 법률」 등이 이주배경 아동·청소년들의 현황통계 및 실태조사를 추진하는 등의 내용을 담기에 적절한지에 대한 판단을 위하여 이주배경 아동·청소년과 관련된 기존의 법안에 대한 전문가 의견을 수렴하고자 하였다. 전문가들의 의견을 수렴한 결과를 제시하면 다음과 같다.

첫 번째로 다문화가족지원법의 한계로 대부분의 전문가들은 대상 및 범위의 협소함을 언급하고 있었다. 즉, 한국인과 결혼한 가정의 자녀들만을 지원의 범주로 한다는 점에서 그 외 다양한 유형의 이주배경 아동·청소년을 포괄하지 못한다는 한계가 있다는 점을 가장 큰 문제로 제기하고 있었다.

두 번째로 청소년복지 지원법의 경우, 원래 목적이 청소년 일반집단에 대한 복지지원의 내용을 골자로 한 법으로, 이주배경청소년에 대한 언급이 있는 유일한

법이기는 하나 이주배경청소년 지원과 관련하여 대상의 정의, 지원체계와 방법, 지원내용, 전달체계 등 다양한 영역에서 구체성이 떨어지고, 지원의 범위도 매우 협소하다. 또한 일반 청소년들에게 해당되는 지원들이 이주배경청소년들에게는 적용이 안 되는 측면에 대한 비차별원칙 등이 포함되어 있지 않아 현재의 이주배경 아동·청소년을 위한 지원정책을 추진하는 데 한계가 있다. 결정적으로 통계를 생산하기 위해서는 청소년 연령인 만 9세에서 24세까지의 범위뿐 아니라 9세 미만의 아동에 대한 통계도 필요한 상황인데, 현재 상태에서는 9세 미만 연령대를 포함하지 못하고 있다는 점 또한 청소년복지 지원법의 한계로 지적되었다.

세 번째로 「북한이탈주민의 보호 및 정착지원에 관한 법률」은 북한에서 태어나고 남한에 입국한 북한이탈주민들만을 대상으로 하고 있기 때문에 역시 지원대상 범주의 협소함이 문제로 제기되었는데, 탈북배경청소년들의 경우 북한도 남한도 아닌 제3국에서 출생하여 남한에 입국을 한 사례들이 많고, 이들의 경우 제3국에서 출생하여 어느 정도 성장한 후 입국하기 때문에 기존의 ‘중도입국청소년’이라고 지칭되는 이주배경청소년의 범주로 구분되기도 하는 것이 현실이다. 이들은 「북한이탈주민의 보호 및 정착지원에 관한 법률」에서는 포괄하지 못하는 한계가 있기 때문에 제3국 출생 청소년 등 보다 다양한 탈북배경아동·청소년의 발달현황을 파악하고자 한다면 별도의 「이주배경 아동·청소년지원법」과 같이 이주배경이라는 점을 포괄하여 지원하는 법률이 필요하다는 의견이 있었다. 현재 「북한이탈주민의 보호 및 정착지원에 관한 법률」에서 대상을 확대하는 것은 어려운 일이기 때문이다.

마지막으로 현재의 「다문화가족지원법」, 「청소년복지 지원법」, 「북한이탈주민의 보호 및 정착지원에 관한 법률」 모두 지원의 대상 및 지원내용 등에서 이주배경 아동·청소년과 관련하여 필요한 내용을 모두 포괄하기 어렵기 때문에 하나의 일관된 정책으로써 이주배경 아동·청소년을 다루고자 한다면 기존법을 개정하는 방식 보다는 별도의 법령제정과 시행이 더 바람직하다는 의견이 제시되었다. 또한 이와

관련하여 이주배경 아동·청소년 정책을 효율화하기 위해서는 광의의 이주배경 아동·청소년의 현황을 파악하고 관리하는 부처 및 기관을 지정하고, 실질적 지원과 관련해서는 교육부나 보건복지부 등으로 연계한다는 내용의 법률을 제정하는 것이 필요하다는 의견도 제시되었다.

표 IV-3. 이주배경 아동·청소년 관련 기존 법안의 특성 및 한계

	전문가 의견
다문화가족 지원법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다문화가족지원법은, 다양한 '이주배경' 가정 가운데, 매우 제한적인 한국인 배우자와 결혼한 국제 결혼가정만을 그 대상으로 간주함으로써, 다수의 국제결혼가정(외국인노동자 가정, 동포가정, 난민가정, 재혼가정, 비혼가정, 미등록가정) 및 국제결혼의 다양성 자체를 인정하지 않는다는 한계를 지님.</li> <li>• 다문화가족지원법은 그 지원 대상이 국제결혼가정을 주요 대상으로 하고 있어 개별 이주 청소년, 혼인신고가 되지 않은 부부사이에 태어난 자녀, 외국인 부부 자녀 등 이주배경 아동·청소년을 포괄하지 못하는 한계가 있음.</li> <li>• 다문화가족지원법은 법 적용대상을 결혼이민자와 귀화자에 한정함으로써 결혼이민자 이외 체류자격 외국인의 자녀들, 특히 영주권자의 자녀들조차도 아동·청소년 발달에 필요한 기본적인 서비스를 받지 못하는 문제가 있음.</li> <li>• 다문화가족지원법은 한 명이상의 국민(귀화자 포함)이 포함된 가족을 기본적인 지원 대상으로 한정한다는 문제가 있음.</li> <li>• 다문화가족지원법은 사실 가족단위의 지원을 위주로, 이주배경 아동·청소년을 가족의 한 자녀로 취급하는 경향이 있음. 더군다나 다문화가족의 정의에는 부모 중 한명이 한국국적자로 제한을 두고 있기 때문에 이주배경 아동·청소년 대상 범주의 일부만 이야기하고 있음.</li> <li>• 다문화가족지원법은 그 지원대상이 국제결혼 가족 자녀 대상이기 때문에 기타 다른 외국인 가정 등이 배제될 수밖에 없는 구조임. 기본적으로 다문화가족 중심의 지원이 변화하기 전에는 지원대상 배제의 문제는 늘 제기될 수밖에 없음. 오히려 청소년복지 지원법에서 이주배경청소년에 대한 포괄적 지원이 18조에 규정되어 있기 때문에 청소년복지 지원법이 더 타당하다고 판단함.</li> <li>• 다문화가족지원법은 다문화가족의 정의 내에 있어야만 각종 서비스를 받을 수 있으므로 외국인+외국인의 결합으로 이루어진 가족의 이주배경 아동·청소년은 보호대상에서 제외됨.</li> <li>• 다문화가족지원법, '북한이탈주민의 보호 및 정착지원에 관한 법률'은 각각 지원 대상 자체가 이주배경 집단 중 일부만을 대상으로 하고 있고 핵심 대상이 그 자신이 이주 또는 탈북한 부모세대여서 청소년의 특성과 요구에 적합한 정책의 근간으로서는 한계가 있다고 생각됨.</li> </ul>

### 전문가 의견

- 다문화가족지원법은 결혼이주가족지원법이므로, 다양한 이주배경 가족을 포괄하지 못함.
- 최근 안산은 외국인가정의 자녀가 국제결혼자녀 규모의 3배에 달하며, 전체적으로 국제결혼자녀수의 증가보다 외국인가정자녀수가 가파른 증가세를 보이고 있으나, 다문화가족지원법의 대상은 국제결혼가정 자녀로 한정하고 있어, 이주배경청소년의 전체를 다 아우르지 못함.
- 다문화가족지원법은 법률의 적용 대상이 매우 제한적임. 보육·교육 외 구체적인 내용이 없음.
- 다문화가족지원법은 대상 측면에서 국민과 혼인관계로 구성된 가족만을 그 적용범위로 하고 있다는 점이 가장 큰 한계이고, 그 외의 여러 가족배경을 가지고 있으면서 한국에 장기체류 해야 하는 이주아동·청소년을 포섭하지 못하며, 지원 정책 역시 혼인이주민 당사자 위주로 구성되어 있어서, 이주배경 아동·청소년을 대상으로 한 서비스가 제한적임.
- 다문화가족지원법은 한국인배우자-외국인배우자로 이루어진 가정에 대해서만 지원을 할 수 있도록 되어있고 그와 관련된 통계만 집계되는 것도 문제임. 모든 이주배경 아동·청소년 내지는 이주배경 관련 가정으로 해당 지원 내용이 확대되어야 함.

#### 청소년복지 지원법

- 청소년복지 지원법은 이주배경청소년에 대한 지원을 명시하고 있긴 하지만, 내용상 구체성이 떨어짐.
- 청소년복지 지원법이나 북한이탈주민정책지원에 관한 법률은 국내에서 자라고 있는 아동·청소년 중 이주배경 아동·청소년의 정책적 수요의 관점이 충분히 반영되지 못한 한계가 있음.
- 청소년복지 지원법에는 막연하게 필요한 시책을 마련하고 시행해야 된다는 정도의 기술 밖에 없음. 현행 법률의 부분 개정으로는 피부에 와 닿는 변화를 체감하기 어려울 것으로 보임.
- 청소년복지 지원법의 경우 이주배경청소년에 대한 언급이 있는 유일한 법이기는 하지만, 대상의 정의, 지원체계와 방법, 지원내용에 대한 전면 수정·보완이 필요함.
- 청소년복지 지원법에 의해 다문화가족의 자녀 외에 그밖에 국내로 이주하여 사회적이거나 학업수행에 어려움을 겪는 청소년이라고 정의되어있지만, 현실적으로 그들을 지원할 수 있는 국가·광역시도-지방자치단체를 타고 내려오는 전달체계나 정책, 제도가 미비하여 지역별 서비스 편차가 매우 크고 거의 부재하다고 볼 수 있음.
- 청소년복지 지원법은 기본적으로 이주배경집단 만이 아닌 청소년 전체를 대상으로 하고 있는데, 현행법에 이주배경청소년에 대한 지원(제18조), 이주배경청

## 전문가 의견

소년지원센터(제30조) 등 관련 조항이 들어있기는 하지만 핵심대상이 아니고 주변화 되어 있어 실행력에 한계가 있음. 또한 제18조에서는 이주배경청소년을 다문화가족의 청소년과 국내로 이주하여 사회적응 및 학업수행에 어려움을 겪는 청소년으로 규정하고 있어 다문화가족지원법과 중복되고, 부모는 이주했지만 그 자신은 국내에서 출생한 청소년(이러한 집단이 이주배경청소년의 대다수를 차지할 듯)은 제외되어 있음. 또한 이밖에 사회적응, 학업 수행 이외에 취업 지원 등 청소년 지원의 핵심적 부분은 해당 법에서는 다루지 못하고 있다는 점에서도 한계가 있음.

- 18조에서 이주배경청소년의 정의는 다문화가족지원법보다 포괄적이며, 이주배경청소년의 전유형으로 포괄할 수 있으나, 그 지원을 위해 법률에 정하는 바가 매우 제한적임. 예를 들면 제30조에서 이주배경청소년지원센터의 설치·운영에 관하여 2개 조항이 있을 뿐임.
- 이주배경청소년이 누구인지 명확한 정의 없고, 지원 범위도 사회적응(상담)과 교육으로 협소함.
- 아동복지법과 달리 비차별 원칙을 밝히고 있지 않음. 이주배경, 장애, 성소수자 등 모든 청소년이 차별 없이 권리를 보장받기 위한 특별한 고려와 시책의 개발을 국가 또는 지자체에 책무로 추가하고, 이들 '청소년'이 서비스에서 거절당하지 않아야 한다는 원칙이 추가될 필요가 있음.
- 청소년복지 지원법은 이주배경청소년을 비교적 폭넓게 규정하고 있으나, 사회적응, 학습능력 향상을 위한 상담, 교육 등을 할 수 있다는 정책 범위가 협소하여, 이주배경청소년에 특화된 위기청소년지원, 가정밖청소년 지원 등은 고려되지 않고 있음. 예로, 제4조 청소년증의 경우, 외국국적자에게는 발급되지 않고 있어, 미등록 이주배경청소년이 신분을 증명할 수 있는 수단으로 활용할 수 있음에도 불구하고 적용되지 못하는 등, 이주배경청소년에게 평등하게 적용된다고 보기 어려운 측면이 있고, 특별한 처우가 필요한 대상에 대한 고려가 충분하지 못함.
- 청소년복지 지원법의 이주배경 아동·청소년이 그나마 가장 폭넓게 이주배경 아동·청소년을 포괄하는 법이기는 하나, 이주배경청소년을 지원하는 단체 설립에 대한 내용 외에 구체적인 지원서비스나 의무 등을 이야기한 것이 많이 없음.
- 청소년복지 지원법에서 이주배경청소년들에 대한 정의가 있다고 하더라도 기존의 다문화가족지원법이나 다른 법률과의 연계가 따로 없기 때문에 실질적인 지원과 연결되지 않는 한계가 있음.
- 아동을 포함하지 못하는 한계가 있음.
- 청소년복지 지원법에서 0세부터 8세까지의 아동이 배제되어 아동에 대한 것은 빠져있다는 한계

### 전문가 의견

북한이탈  
주민의  
보호 및  
정착지원에  
관한 법률

- ‘북한이탈주민의 보호 및 정착지원에 관한 법률’은 이주배경을 가진 아동·청소년을 대상으로 하지 않고, 탈북배경아동·청소년을 적절하게 포괄하지 못하고 있음.
- 국내에서 자라고 있는 아동·청소년 중 이주배경 아동·청소년의 정책적 수요의 관점이 충분히 반영되지 못함.
- 직접 북한에서 이탈한 주민을 주요 대상으로 정의하고 있어 각 법률에서 지정한 지원대상의 범위가 차이가 있고, 외국에서 태어난 탈북자의 자녀 등은 포함되지 않는다는 한계가 있음.
- ‘북한이탈주민의 보호 및 정착지원에 관한 법률’은 탈북민 당사자에게만 지원을 제공하는데 초점이 두어진 법률로, 지원 대상을 탈북민 당사자만으로 규정할 것이 아니라 ‘탈북민과 그 법적 배우자 및 자녀’로 지원 대상을 확대하는 것이 바람직함.
- ‘북한이탈주민의 보호 및 정착지원에 관한 법률’ 상에서는 제3국 출생 탈북배경 청소년은 지원 대상에서 제외됨.
- 이 법은 이주에 초점을 맞춘 것이 아니라 ‘탈북’에 초점을 맞춘 법률이기 때문에 북한 출생자에 대한 보호와 정착지원을 규정하고 있는 법률임. 이 법의 관점에서는 중국출생 북한배경 청소년은 ‘비보호’라는 범주로 구분됨. 북한배경 청소년들의 적응, 성장에서 ‘북한’이라는 요인만큼 중요한 것은 ‘이주’라는 개인과 가정의 배경이라는 점을 생각할 때, 출생지에 초점을 맞춘 법안보다는 개인과 가정의 (북한 관련) 이주배경에 초점을 맞춘 포괄적인 법안 제정이 필요하다고 생각됨.
- 지원의 중복성과 타 집단과의 형평성(역차별 문제) 측면이 있음. 즉, 현재 북한 출생 청소년에 대해서는 ‘북한이탈주민의 보호 및 정착지원에 관한 법률’에 근거하여 대학특례입학과 각종 지원이 이루어지고 있으나, 제3국 출생 청소년에 대해서는 별도의 지원이 이루어지지 않고 있음. 이에, 제3국 출생 청소년에 까지 교육지원을 확대해야 한다는 탈북민 사회의 요구가 있는 반면, 탈북청소년에 대한 특례입학이 역차별에 해당한다는 주장도 제기되고 있는 상황임. 따라서 ‘북한이탈주민의 보호 및 정착지원에 관한 법률’의 대상을 확대하는 방향이 아니라 현행법에 의한 지원을 받지 못하고 있는 북한배경 청소년들을 지원할 수 있도록 ‘이주 배경’에 초점을 둔 포괄적 법률을 제정하는 방향으로 추진될 필요가 있음.
- ‘북한이탈주민의 보호 및 정착지원에 관한 법률’은 ‘탈북청소년’을 0세부터 24세까지 포괄하고 있어 연령포괄성은 높음. 그러나 용어에서 청소년이 아니라 탈북 아동·청소년으로 변경이 되어야 법적 혼란을 줄일 것임. 그럼에도 근본적으로 이 법은 탈북민 ‘보호’와 ‘지원’이라는 목적들이 상충되는 측면이 있어 ‘지원’법으로서의 성격이 제한됨.
- ‘북한이탈주민의 보호 및 정착지원에 관한 법률’의 경우, 북한이 아닌 곳(제3국,

	<b>전문가 의견</b>
	<p>남한 등)에서 출생한 탈북배경청소년이 해당되지 않아 현행법상의 보호를 받기 어려움.</p>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북한이탈주민의 보호 및 정착지원에 관한 법률’은 ‘북한을 탈출한’ 배경을 지닌 탈북민만을 대상으로 하기 때문에 북한출생아동·청소년만을 포함하고 있음. 통일부는 법률을 폭넓게 해석하여 북한이탈주민 가구에 포함되기 때문에 정착지원 대상에 포함시킬 수도 있다고 해석하고 있으나, 법률에 명확하게 명시되어 있기 않기 때문에 지원의 내용과 범위, 규모 등에서 차이가 있음.</li> <li>• ‘북한이탈주민의 보호 및 정착지원에 관한 법률’이 탈북민들의 안정적인 정착을 지원하기 위한 법률이라는 점을 고려한다면, 행복한 자녀들의 삶이 탈북배경 가정의 안정적인 정착과 삶의 질에 주요한 영향을 미치는 점을 고려 할 때 개선이 필요함.</li> </ul>
총괄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다문화가족지원법과 청소년복지 지원법은 정주 외국인 가정 아동·청소년이나 탈북청소년에 대한 지원을 규정하지 못함. 이를 포괄할 수 있는 새로운 개념이 법에 규정될 필요가 있음.</li> <li>• 다문화가족지원법은 아동에 초점이 맞춰 있기보다 가족이고, 청소년복지 지원법에서는 이주배경이라는 특성을 담지 못하고 있는 것 같고, 북한이탈주민법은 북한에만 초점을 맞추고 있으므로 이주배경 아동·청소년을 커버하기에 무리가 있을 것 같음. 따라서 ‘이주배경 아동·청소년 기본법(지원법 등)’ 등 이들만을 위한 법을 별도로 제정할 필요가 있음.</li> <li>• 각 법령이 적용되는 대상과 내용 등이 조금씩 상이하여 이주배경 아동·청소년 관련 필요한 법 규정을 포괄하기 어려울 것으로 생각됨. 기존 법령에 반영 가능한 규정은 포함하도록 개정할 필요는 있으나, 하나의 일관된 정책으로서 이주배경 아동·청소년 문제를 다룰 수 있는 법령의 제정 및 시행이 필요하다고 생각함.</li> <li>• 각기 다른 법률이 정의하는 지원대상의 차이도 문제지만 각 법률의 정부부처가 다른 것 역시 이주배경 아동·청소년의 성장지원의 걸림돌로 작용함. 따라서 광의의 이주배경 아동·청소년의 현황을 파악하고 관리하는 역할을 담당할 부처(또는 기관)를 지정하고, 실질적으로 지원을 제공할 수 있는 교육부, 보건복지부 등으로 연계하는 권한을 부여하는 법률을 제정하는 방안이 필요함.</li> <li>• 다문화가족지원법은 자녀로 표현하고 있고, 청소년복지 지원법은 이주배경청소년의 개념만 정의되어 있으며, 각 법이 규정하는 대상이 전체 대상을 포괄할 수 없다는 근원적 한계가 있음.</li> <li>• 국가와 각 지방자치단체 대상의 실태조사, 통계구축, 종합적 서비스 제공에 대한 역할과 책임이 명시될 필요가 있음. 나아가 이주배경아동·청소년지원법 제정이 필요함.</li> <li>• 현재 이주배경 아동·청소년 지원은 다문화가족지원법과 청소년복지 지원법으로 이원화되어 있는 구조이므로 정기적 실태조사나 통계구축에 관한 조항도</li> </ul>

### 전문가 의견

- 부재하고, 이주배경청소년 지원 근거가 미약한 한계를 지님.
- ‘북한이탈주민의 보호 및 정착지원에 관한 법률’에서는 제 3조(적용범위)에서 ‘대한민국의 보호를 받으려는 의사를 표시한 북한이탈주민’에 한함. 즉, 당사자의 신청에 의해 이루어지는 것이기 때문에 만약, 탈북배경의 부모가 이를 신청하지 않을 경우 자녀인 아동·청소년은 법의 지원을 받지 못할 수 있음. 따라서 탈북배경 아동·청소년에게 공평한 기회를 제공하고 건강한 성장을 지원하기 위하여 부모의 보호신청 유무와 관계없이 국가와 지방자치단체가 보다 적극적으로 대응해야 할 필요가 있음.
  - 중국 등 제 3국에 체류하다가 또는 제 3국의 국적을 가진 채로 이후에 입국한 경우나 남한에서 출생한 자녀에 대해서는 적극적인 대응을 하지 않고 있음. 따라서 탈북아동·청소년의 다양한 출생배경과 입국배경에 대하여 구분하고, 이들을 전체적으로 포괄할 수 있도록 탈북배경청소년을 정의하고 이를 법안에 명시하는 것이 필요함.
  - 위에 언급한 세 가지 법률은 사실상 이주배경아동·청소년이라는 집단을 포괄적으로 다루고 있지 않기 때문에 사실상 관련법은 부재함.

## 2) 이주배경 아동·청소년의 통계 관련 조항 포함에 적합한 법안

다음으로 이주배경 아동·청소년의 통계 및 지원에 관한 내용을 포함하는 법안을 만든다고 할 때 어떤 법률에 담는 것이 적절하다고 생각하는지에 대하여 전문가들의 의견을 수렴하였다. 즉, 청소년복지 지원법을 개정하는 방안, 이주배경 아동·청소년지원법을 제정하는 방안 또는 그 외에 기타 의견이나 대안을 제시하도록 하였다. 그 결과 아래에 제시된 바와 같이 청소년복지 지원법을 개정하는 것이 바람직하다는 의견과 근거, 이주배경 아동·청소년지원법을 새로이 제정하는 것이 바람직하다는 의견이 있었고, 두 가지 방안의 장단점을 제시한 의견도 있었다. 우선 청소년복지 지원법에 이주배경 아동·청소년의 통계구축 및 지원 관련 내용을 포함하는 것이 바람직하다는 의견을 제시하는 전문가들의 근거는 두 가지를 들 수 있다. 첫째는 새로운 법을 제정하는 것이 바람직할 수 있으나 새로운 법을 제정하는 일이 매우 어려운 현실인데 비하여 통계구축이나 다양한 유형의 이주배경 아동·청

소년 대상의 추진과제 및 정책들은 가능한 빠른 시일 내에 효율적으로 추진되는 것이 바람직하다는 점이였다. 따라서 가능한 현재의 법을 개정하거나 시행령을 개정하여 가능한 빨리 근거기반의 이주배경 아동·청소년 정책이 추진될 수 있는 기반을 마련하는 것이 바람직하다는 점을 강조하고 있었다. 두 번째는 이주배경 아동·청소년들이 일반적인 아동·청소년과 별도의 존재가 아닌 대한민국에 거주하는 보편적인 존재로 인식하는 것이 바람직하기 때문에 보편적인 청소년 대상의 법률안에 포함시키되, 이주배경 아동·청소년의 특수성을 고려한 별도의 통계구축이나 지원의 내용을 포함하는 방안이 바람직하다는 시각이였다. 또는 더 나아가 별도의 법을 제정하기 보다는 국내 일반 청소년들에게 적용되는 모든 복지지원에서 이주배경 아동·청소년들이 배제되지 않는 보편적 지원의 방향이 바람직하다는 것이 청소년복지 지원법을 선호하는 이유였다.

이에 비하여 이주배경 아동·청소년지원법(가칭)을 새로이 제정하는 것이 바람직하다는 의견을 제시한 전문가들은 현재의 청소년복지 지원법의 한계에 좀 더 초점을 두고 있었다. 특히 통계구축과 관련된 내용의 경우는 청소년복지 지원법 보다는 이주배경 아동·청소년에 대한 개념과 범주의 정의를 근거로 새로운 법을 제정하는 것이 바람직하고, 보다 다양한 지원의 내용까지 포함하게 되면 종합적인 영역에 대하여 좀 더 효율적으로 정책을 추진할 수 있는 기반을 마련할 수 있기 때문이라는 의견이였다.

그 외에 기타 의견으로는 청소년복지 지원법의 개정을 통해 일차적으로 정책을 추진하고, 점진적으로 이주배경 아동·청소년법 제정을 위한 노력을 할 필요가 있다는 의견, 현재의 다문화가족지원법을 이주가족지원법으로 개정하는 것이 바람직하다는 의견 등도 제시되였다.

표 IV-4. 이주배경 아동·청소년의 통계 관련 조항 포함에 적합한 법안

	전문가 의견
<p>청소년복지 지원법 개정</p>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이주배경 청소년지원법이라는 별도의 법안을 만들기 보다는 기존의 청소년복지 지원법이 이주배경 아동·청소년의 정책적 수요도 충분히 반영할 수 있도록 개정하는 것이 더 바람직하다고 생각함. 그 이유는 '다문화가족지원법'처럼 매우 좋은 취지로 다문화가족의 정책적 수요를 제대로 반영하기 위해서 만들어졌음에도 나중에는 일반가족과는 분리(차별)된 '다문화가족' 이미지가 생성되어 또 다른 차별을 낳는 결과를 초래하였음을 상기할 때, 이주배경 아동·청소년지원법도 그렇게 될 위험성을 내포하고 있다고 생각함.</li> <li>• 청소년복지 지원법은 아동·청소년의 범위 및 동법 제18조에서 사용하고 있는 이주배경청소년에 관한 규정으로 인해 맞지 않은 면이 있음.</li> <li>• 현행 법제와 분명히 맞아 떨어지지 않을 때 별도의 법률을 제정하는 것을 제안하는 것이 가장 용이하기는 하나, 이런 식으로 법률의 개수가 빠르게 증가하는 것은 바람직하다고 생각하지 않기 때문에 그럴만한 실익이 있는지 충분히 고려되어야 할 것임. 예를 들면, 청소년복지 지원법의 제18조를 삭제하고, 이주배경청소년에 관한 몇몇 규정을 신설하여 운용하다가 추후 필요 시 해당 내용만 분법해도 된다고 생각됨.</li> <li>• 이주배경 아동·청소년지원법 제정의 장점은 이주배경 아동을 포함하는 것이 수월하고, 대상 특성에 맞추어 구체적이고 확실하게 내용을 구성할 수 있다는 장점이 있으나, 특정 아동·청소년들을 위한 법 제정 자체가 반대여론으로 무산되기 쉽다는 단점을 지님.</li> <li>• 청소년복지 지원법 개정 경우는 가장 현실적으로 가능성 있고, 시간을 단축할 수 있는 방안이라고 생각함. 왜냐하면 이미 현재 이주배경청소년 지원에 대한 내용이 있고 수정·보완하여 개정하는 작업으로 가능함.</li> <li>• 청소년복지 지원법 개정 및 청소년복지 지원법 시행령에 포함. '이주배경'이라는 식별자를 두기보다 청소년 범주 안에 포괄하는 것이 합당함.</li> <li>• 바람직하기로는 이주배경 아동·청소년지원법 제정이 바람직하지만, 현재로서는 실현 가능성이 낮으므로 청소년복지 지원법 개정이 현실적임. 다만, 대상 집단을 확대하고 취업 지원도 가능하게 하는 등 주요한 개정이 함께 이루어져야 함.</li> <li>• 청소년복지 지원법 개정 및 청소년복지 지원법 시행령에 포함하는 것이 현실적으로 보임. 다만, 청소년복지 지원법에 이주배경청소년 지원에 관한 내용을 하나의 장으로 신설을 하여 설치운영의 주체를 분명히 하고 전달체계, 역할과 권한, 임무를 밝히는 것이 필요해보임.</li> <li>• 청소년복지 지원법이나 그 시행령에 포함되는 것이 장기적으로 바람직한 방향이라고 생각됨. 다만, '아동'이 포함이 된다면 동법의 대상에서 벗어난다는 문제를 해결해야 함.</li> <li>• 향후 이주민 또는 이주배경자를 대상으로 하는 법이 새로이 제정되는 것보다는 국내 기존법에 이주민, 이주배경 아동·청소년이 각종 권리와 보장의 대상으로</li> </ul>

### 전문가 의견

	<p>포함되는 것이 사회통합 차원에서도 바람직한 방향이라고 생각됨.</p>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청소년복지에서 다루어야 할 집단 중 하나로 이해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생각됨. 청소년 중 이주배경이 있는 청소년으로 두는 것이 구분을 덜 하는 방식이기 때문임.</li> <li>• 청소년복지 지원법 개정 및 청소년복지 지원법 시행령에 포함이 바람직함. 이주배경은 청소년이 가진 개별적인 욕구의 배경이긴 하지만, 기본적으로 모든 청소년은 차별받지 않아야 하고, 개별화된 지원이 이루어져야 한다는 원칙을 고려하면 청소년복지전달체계에서 차별받거나 배제되지 않도록 하는 것이 정책적인 목적이 되어야 할 것으로 생각됨.</li> <li>• 청소년복지 지원법 개정 및 청소년복지 지원법 시행령에 포함이 바람직함. 청소년복지 지원법에 '3년마다 청소년의 인식·태도·생활 등에 관한 실태조사를 실시하고 그 결과를 공표'가 명시되어 있음. 이 법률에 이주배경 아동·청소년을 대상으로 하는 실태파악을 포함하는 것이 적절하다고 판단됨.</li> <li>• 각계각층에서 분절적이고 산발적인 조사가 이루어지기 보다는 청소년복지 지원법을 근거로 총괄하는 부처의 주도 하에 조사설계와 공통문항을 개발하고, 조사방법, 조사시기 등을 통일적으로 운영하며 비교분석하고, 맞춤형 정책적 시사점을 도출하는 것이 필요함.</li> </ul>
<p>이주배경 아동·청소년 지원법 제정</p>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이주배경청소년 지원법을 이주배경 아동·청소년지원법으로 명칭을 수정하여 신설하는 방안이 바람직함.</li> <li>• 청소년복지 지원법의 경우 이주배경청소년에 대한 지원을 명시하고 있지만, 여전히 내용에 한계가 있고, 복지 전반에 대한 법령이므로 별도의 법령을 만들으로써 보다 적절한 정책적 지원의 근거를 마련한다는 데에 의의가 있음(학교밖 청소년 지원에 관한 법률과 유사한 사례).</li> <li>• 이주배경 아동·청소년지원법(이주아동권리보장법의 확장)및 시행령의 제정이 필요할 것으로 생각됨.</li> <li>• 단일법령 제정이 아무래도 이 법에서 이루고자 하는 목적에 맞게 법조문 및 시행령을 구성할 수 있어 이주배경아동·청소년 지원법 및 시행령 제정이 바람직함.</li> <li>• 청소년복지 지원법에 포함하는 쪽으로 기존 연구가 이루어졌던 것은 제정법의 부담이나 현실적 한계를 고려한 것으로 보이지만, 이주배경 아동·청소년의 규모를 파악하고 조사, 지원하는 것은 청소년복지 지원법으로 담기보다 개별 법령의 제정이 더욱 바람직함.</li> <li>• 청소년복지 지원법 개정의 장점은 현재의 법에서 최소한의 노력으로 반영이 가능하고, 모든 청소년들의 보편적 권리로서 접근 가능하다는 점이고, 단점은 청소년 전체를 위한 법이다보니 이주배경청소년들의 특성을 강조하여 반영하기 어렵다는 점임.</li> <li>• 이주배경아동·청소년지원법 및 시행령 제정이 적절함. 기존의 법령을 개정하는 방법이 조금 더 쉬울 수는 있으나 취지에 맞게 업무를 수행하는 법령 근거를</li> </ul>

## 전문가 의견

만들기 위해서는 법령 제정이 현재로서는 더 적절함.

- 이주배경아동·청소년지원법의 장점은 더 효율적인 지원의 내용을 더 고민하여 아예 새롭게 체계화할 수 있다고 생각됨. 예를 들면 보육·돌봄, 교육, 심리상담, 진로·노동 등등 지원의 영역을 확대하여 더 구체적으로 지원의 효율성을 고려한 법적인 틀을 마련할 수 있음. 또한, 기존의 법안에 대한 여러 단점들을 모두 아우르는 이주배경 아동·청소년의 지원에 대한 법적 근거를 마련할 수 있음.
- 기존법을 개정하기엔 무리가 있고, 새롭게 법을 마련하는 것이 좋다고 생각함. 일명 '이주배경청소년지원법'이 좋을 듯함.
- 청소년복지 지원법보다는 이주배경청소년지원법과 시행령에 관련 내용을 적시하는 것이 적절할 것으로 생각함.
- 이주배경청소년지원법 및 시행령이 제정된다면 이주배경청소년에 관한 모든 조항(지원 내용, 규모파악, 실태조사 등)을 포함한 종합대책 마련의 근거가 될 것이므로 가장 바람직함.
- 이주배경청소년의 정의, 범주, 그와 관련한 업무 담당부처와 전달체계, 운영방법 등 구체적인 조항들을 제정하여 시행하는 것이 바람직함.
- 미등록 이주아동의 인권 사각지대 보완과 필수적 사회활동을 위해 다양한 지원방안이 논의되고 있다는 점과 이주배경청소년 수가 매년 꾸준히 증가하고 있어 별도 관리 및 지원 정책이 필요하다는 관점에서는 이주배경청소년지원법 및 시행령을 새롭게 재정하는 것이 바람직함.
- 각 법들이 각각 한계가 있다는 점에서 새로운 법을 제정할 필요가 있음.
- 기존의 파편화된 법률들은 이주배경 전반, 아동과 청소년을 포함하는 개념을 다루기에 제한적이고, 현재 이주배경 아동·청소년에 대한 사회 제도의 준비 뿐 아니라 앞으로 이민 2세대 3세대 등 미래의 사회 구성원의 모습을 예측하고 준비하는 관점에서 새로운 법제도 마련이 필요함.
- 이주배경 아동·청소년의 범주에서 다루고자 하는 집단이 다양한 만큼 다부처 소관 법률을 제정하여 동 사업을 추진하는 것이 바람직함.
- 이주배경청소년지원법을 새로 제정하는 경우, 기존에 있는 법령 등 자원을 활용하지 못하고 다시 처음부터 만들어야 한다는 어려움이 있으나, 이주배경청소년의 특성과 환경에 맞는 조항을 구성할 수 있으며, 특히 차별금지나 아동이익 최상의 원칙 등을 국가 및 지자체의 책무로 규정하고, 그에 근거하여 지원정책 등을 수립할 때 고려할 수 있도록 함으로써 이주배경 아동·청소년이 내국인에 비해 차별받는 영역을 최소화할 수 있다는 장점이 있음.
- 이주배경청소년지원법을 별도로 제정한다면, 이주배경 아동·청소년의 규모 파악, 실태조사, 지원에 있어서 가장 적합한 형태로 법을 마련할 수 있을 것으로 생각됨. 특히, 이주배경 아동·청소년들에게 필요한 내용과 국가·지방의 책무를 (이주라는 특성의 관점에서) 다른 조항과의 충돌 없이 더 자세하고 맞춤형으로 기술할 수 있을 것임.

전문가 의견	
기타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이주배경청소년의 증가를 고려한다면, 특정 계층으로 파악하기 보다는 전체 청소년의 관점에서 접근하는 것이 타당해 보임. 청소년복지 지원법의 개정을 통해 이주배경청소년을 지원할 수 있는 법적 근거를 만드는 것이 향후 규모 증가에 따른 일반화에 보다 유연하게 대응할 수 있다고 봄.</li> <li>• 이주배경청소년지원법 제정이 어려울 경우, 차선책으로 현행 청소년복지 지원법을 개정하여 이주배경청소년 지원 및 규모 파악, 실태조사 등의 내용을 추가함.</li> <li>• 별도의 법률을 만들기보다, 기존의 아동·청소년 관련법에서 해당 법에 '국적'이나 '체류자격'에 따른 비차별 규정을 마련하고, 필요한 경우 이주배경 아동·청소년에 대한 별도의 통계 구축, 실태조사, 그리고 특별히 고려되어야 할 사회·문화적 차이에 따른 지원 등을 포함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생각됨.</li> <li>• 현 시점에서 현실적으로는 청소년복지 지원법에 새로운 장(이주배경청소년 실태조사 및 지원)을 만드는 것이 더 용이하다고 생각됨. 그러나 좀 더 미래지향적으로 생각하면(아동·청소년의 입장 및 인구학적 측면을 고려해볼 때) 이주배경청소년지원법을 제정하는 것이 좋을 것 같음.</li> <li>• 가장 이상적인 방법은 현재 다문화가족법을 이주가족지원법으로 바꾸고, 대상 집단을 확대한 후, 이 틀 안에서 개별 구성원별 정책을 설계하는 것이 적절하다고 생각됨.</li> </ul>

### 3) 탈북배경청소년을 포함할 경우의 주요 이슈

다음으로 이주배경 아동·청소년의 범위에 탈북배경청소년을 포함하는 문제에 대한 전문가의견을 수렴하였다. 탈북배경청소년의 경우 통일부가 전담하는 대상으로, 이들을 이주배경 아동·청소년의 범주에 포함시키고 법률에 포함시킬 때 부처 간 이견이 발생할 수 있기 때문이었다. 따라서 탈북배경청소년을 이주배경 아동·청소년의 범위에 포함하고, 법률에 포함시킬 때 발생할 수 있는 문제와 이에 대한 해결방안에 대한 의견을 구하였고, 전문가들의 의견을 정리하여 제시하면 다음과 같다. 우선 첫 번째로, 탈북배경청소년을 다문화의 범주로 포함하지만 않는다면, 이주의 경험에 초점을 두어서 추진이 가능하며, 기존의 북한이탈주민의 보호 및 정착지원에 관한 법률의 정의와 다르게 북한을 배경으로 하는 청소년이라는 개념에 근거하여 조사를 하는 것이기 때문에 문제가 없다는 의견이 있었다.

그러나 이에 비하여 여러 가지 예상되는 문제를 제시한 의견들도 있었는데, 탈북단체의 반발과 통일부의 동의를 이끌어내는 문제였다. 탈북단체는 기본적으로 한민족정체성이 매우 강하고 다문화와 같은 집단으로 범주화되는 것에 대하여 거부감을 지니기 때문에 이주배경이라는 범주로 묶는 것에 대하여 반대할 가능성이 높다는 것이었다. 또한 통일부의 경우도 북한이탈주민정착지원 업무를 담당하는 주무부처이기 때문에 부정적 태도를 보일 가능성이 높고, 따라서 탈북배경 아동·청소년들을 이주배경집단에 포함시키기 위해서는 많은 설득을 통한 공감을 도출하는 작업이 필요할 것이라는 의견이었다. 또한 통일부에서 북한배경이나 제3국 출생자들에 대한 지원을 하고 있기 때문에 이주배경 아동·청소년지원법을 제정하는 것은 정책의 중복을 가져올 것이라는 점을 제시하기도 하였다.

이러한 문제를 해결하기 위한 방안으로 북한이탈주민 자녀 중 남한출생자와 제3국 출생자 등 기존의 북한이탈주민지원과 관련된 법령에 포함되지 않는다는 점을 명확히 하고, 특히 현행 정착지원법에서는 포용하지 못하는 북한이탈주민의 자녀를 지원하기 위한 조치임을 적극적으로 어필하는 작업이 필요하다는 의견이었다. 따라서 탈북민 단체 등과의 공청회, 간담회 등도 필요하다고 하였다. 또한 법안에 포함이 되지 않는다 할지라도 탈북배경청소년의 규모 파악이나 실태조사에 대해서는 통일부와 협력하여 대상, 내용, 시기 등을 협력하는 방안이 필요하다는 의견도 제시되었다.

표 IV-5. 탈북배경청소년을 포함할 경우의 주요 이슈

전문가 의견	
문제없음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국제이주’의 경험에 초점을 맞추고, 그로 인한 정책적 수요를 해소하기 위한 목적임을 명확히 할 때는 크게 문제가 생길 것으로 보이지 않음. 즉, ‘다문화’ 범주로 포괄하지 않는 한도 내에서.</li> <li>• 북한이탈주민의 보호 및 정착지원에 관한 법률에서 규정하고 있는 북한이탈주민에 대한 정의를 활용하는 것이 아니라 북한배경청소년이라는 새로운 개념을 활용하여 실태조사를 포함한 법령을 만드는 것이라면 크게 문제가 없을 것이라고</li> </ul>

전문가 의견	
	<p>생각함. 법령에서 북한이탈주민과 북한배경청소년의 관계에 대한 규정을 명확히 해주는 것을 필요함.</p>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이주배경청소년의 범주에 북한배경청소년이 포함되는 것에 동의함. 탈북이라는 특수성이 있으나 청소년의 성장 발달에 맞도록 포괄적인 범주에서 지원하는 것이 필요하다고 생각됨.</li> </ul>
예상되는 문제 및 반대 이슈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탈북 단체의 반발(정서적으로 '이주배경'의 범주에 포함되는 것을 거부하는)</li> <li>통일부와의 협의가 필요함. 북한배경청소년 대상의 특수성 때문에 주무부처인 통일부는 포함시키는 법안에 대해서 부정적일 가능성이 높음. 그렇기 때문에 설득이 필요함.</li> <li>탈북배경청소년을 포함할 경우 탈북민을 지원하는 기관 및 정부부처에서의 반발이 예상됨.</li> <li>현재 탈북청소년에 대한 지원은 "북한이탈주민의 보호 및 정착지원에 관한 법률"에 의거하고 있는데, 이 법안에서 지원의 근거는 북한이라는 특정 지역에서 출생했다는 것임. 이주배경청소년지원법을 제정할 경우, 이는 탈북청소년 지원의 패러다임을 북한이라는 특정 지역 출생자에 대한 지원에서 이주자 가정의 청소년에 대한 지원으로 바꾸는 것임. 장기적으로 그렇게 가야 한다고 생각하지만, 단기적으로는 구체적인 지원정책과 관련하여 이전 패러다임과의 충돌이 있을 수 있음.</li> <li>탈북배경청소년은 타 이주배경청소년 유형과는 달리, 다소 이질적인 집단이고, 현재 '북한이탈주민의 보호 및 정착지원에 관한 법률' 등에 근거하여 통일부에서 실태조사와 지원대책을 마련하고 있으므로 중복 조사의 우려가 있음.</li> <li>북한배경이나 제3국 출생의 경우는 통일부에서 이미 막대한 예산과 인력으로 지원하고 있고, 학교나 전달체계, 상담원 등 어느 정도 마련되어 있다고 생각됨, 또한 이 경우 외국의 이주배경 아동·청소년과는 또 다른 특성이 있기 때문에 포함시키지 않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생각함.</li> <li>제3국 출생 이외의 북한배경청소년은 헌법상 국민인 것으로 알고 있음. 엄연한 국민을 출신지역을 이유로 외국인과 같은 범주로 접근하는 것은 명백한 차별로, 국가가 국민을 대상으로 명백한 차별행위를 하는 것이 될 수 있다고 생각됨. 고려하는 것 자체가 부적절하다고 생각됨. 또한 당사자들도 한민족 정체성이 강해서 자신들을 외국국적자와 연관시키는 것 자체에 대한 반발이 매우 클 것으로 생각됨.</li> <li>가장 예상되는 문제는 탈북민에 대한 정보가 보안 사항인데, 전체 규모 파악을 위하여 통일부가 정보를 어떻게 연계할 것인가 임.</li> <li>남한출생 탈북(북한)배경 청소년의 경우 자신의 부모가 북한배경을 가지고 있는지 모르는 상황이 있을 수 있음. 규모파악 또는 실태조사를 통해 이러한 사실이 드러나게 될 경우, 사회적 편견으로 인한 피해가 가지 않도록 예방조치가 마련되</li> </ul>

전문가 의견	
	<p>어야 할 것임.</p>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주무부처, 관련 법제도, 추진체계 등의 차이로 인해 탈북배경인구는 이 법률안에 포함되지 않는 것이 좋을 것으로 생각됨.</li> <li>• 문제는 북한배경청소년의 특수성을 인정하고 타자화한다는 우리사회의 인식이 더욱 고착된다는 점임.</li> </ul>
대안 및 협조방안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탈북배경청소년에 대한 조항을 포함하고, 여기서 북한이탈주민자녀 범주를 구분하여, 북한이탈주민지원법령에 포함되지 않는 주민은 이주배경 아동·청소년지원에 관한 법률의 대상이 되는 것으로 법조항을 제시하는 방안이 있음.</li> <li>• 통일부의 반대를 설득하는 것이 중요할 것으로 보임.</li> <li>• 현행 정착지원법으로는 포용하지 못하는 북한이탈주민의 자녀를 지원하기 위한 조치임을 적극 어필하는 것이 필요함. 따라서 탈북민 단체 등과의 공청회, 간담회 개최 등 적극적 태도가 필요함.</li> <li>• 법안에 포함이 안 된다고 하더라도, 규모파악, 실태조사에 있어서 통일부 북한이탈주민지원재단에서 자체적으로 만들어내는 통계, 조사와의 대상 및 내용 공유, 시기에 대한 협력이 필요할 수 있음.</li> <li>• 단순히 민족이 아닌 국경의 개념으로 이주를 정의한다는 개념으로 접근하면 해결이 될 수도 있을 듯함.</li> <li>• 현재 '북한이탈주민의 보호 및 정착지원에 관한 법률'에 의거하여 남북하나재단에 탈북민 대상 실태조사의 권한이 부여되어 있음. 이주배경청소년지원법에서 별도의 실태조사 실시에 대해 규정한다면, 조사의 중복성을 피하기 위한 조정 작업이 필요할 것임.</li> <li>• 향후 탈북배경청소년에 대해서는 현행대로 통일부에서 규모 파악, 실태조사, 지원대책 마련 등을 담당하는 것이 바람직할 것으로 판단됨.</li> <li>• 개인적으로는 이주배경 아동·청소년에 북한출신도 포함되어야 한다고 생각하지만, 북한출신이 이주배경 아동·청소년 범주에 들어가는 것 자체에 대해 의문을 제기하는 쪽도 있을 것으로 생각됨. 따라서 사회적 합의가 요구될 수 있다고 생각함.</li> <li>• 탈북배경청소년의 규모를 파악하는 것은 보안상의 이유로 정보수집과 가공, 활용이 쉽지 않을 것으로 생각됨. 정보 공개 및 활용 범위에 대한 구체적인 가이드가 마련될 필요가 있음.</li> <li>• 탈북배경청소년지원도 기본적으로는 청소년 복지의 영역으로 포섭되어야 하고 이를 위해 통일부와의 업무 분장 및 협력이 필요하지만 실제로 이런 협력이 가능할지 의심스러움. 따라서 각 부처의 역할과 기능을 법이나 시행령에 구체적으로 명시하는 것이 중요할 것으로 생각됨.</li> </ul>

#### 4) 이주배경 아동·청소년지원법 제정 시 포함범위

이주배경 아동·청소년지원법을 제정한다고 했을 때 어떤 범주까지를 포함할 것인가에 대한 전문가들의 의견을 분석하면 크게 연령과 대상범위에 대한 의견이었는데, 연령적으로는 청소년 기본법의 연령인 만 9세에서 24세가 적절하다는 의견과 그보다는 더 넓게 만 24세 이하의 아동·청소년을 모두 포함하는 것이 적절하다는 의견이 다수였다. 그러나 대상의 명확성을 위하여 만 18세 이하로 정하는 것이 적절하다는 의견도 있었다. 이는 연령의 문제가 바로 대상범주의 문제로 이어지기 때문인데, 만 19세가 넘을 경우 사실상 성인으로 결혼이주여성이나 이주노동자 등이 포함되는 현상이 발생하여 법 제정 시 복잡한 문제가 발생하기 때문이다. 반대로 만 19세에서 24세까지의 후기청소년들도 포함해야 한다는 입장에서는 한국의 청소년 기본법 상에서도 포함이 되기 때문에 모두 포함해야 한다는 입장인데, 이 때 결혼이주자나 이주노동자들이 포함되는 문제에 대해서도 다시 두 가지 입장이 제시되었다. 즉, 결혼이주자나 유학생, 이주노동자 등을 포함해야 한다는 입장에서는 보편적으로 모든 집단을 포함시키는 것이 적절하다는 입장과 결혼이주자나 이주노동자와 같이 본인의 의사로 이주가 결정된 집단은 배제하는 것이 적절하다는 의견이었다. 이러한 문제에 대한 해결방안으로 통계구축과 관련해서는 모든 집단을 포함하여 각 집단별 변화추이를 살펴보고, 범주에 포함시키 되, 지원에 있어서는 각 집단별 특화된 범주에 우선적으로 따른다는 조항을 포함하는 것 의견을 제시하기도 하였다. 즉, 통계는 모두 구축하고 지원과 관련해서는 결혼이주여성, 다문화가족지원법, 유학생은 이주배경청소년지원법, 이주노동자는 재한외국인 처우 기본법 등을 우선적으로 따른다는 등으로 단서조항을 포함하는 방식 등을 대안으로 제시하였다.

표 IV-6. 이주배경 아동·청소년지원법 제정 시 포함범위

주제	전문가 의견
연령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연령범위 조정 필요함. 정책의 효과성을 높이려면, 한국의 주류 국민들이 공감할 수 있는, ‘연령대의 조정(18세 미만 등)’이 우선 필요함.</li> <li>• 만 9세에서 24세</li> <li>• 이주배경 아동이라 정의하면, 만 18세까지가 맞겠으나 이주배경청소년에 대한 법을 제정한다면 24세 이하로 정의하는 것이 맞다고 봄.</li> <li>• 만 24세 이하 국제결혼가정자녀, 외국인가정자녀, 북한배경청소년(북한 출생 탈북청소년, 제3국 출생 북한이탈주민자녀, 한국출생 북한이탈주민자녀)</li> <li>• 이주배경아동·청소년지원법을 제정할 경우에는 전체 규모 파악이 중요하므로 0세부터 만 24세 이하의 후기청소년 유학생, 결혼이주자, 이주노동자 등도 포함되어야 함.</li> <li>• 만18세까지 청소년을 대상으로 하는 것이 적절하다고 생각함. 그 이후 연령을 포함하게 되면 다른 범주의 이주민까지 교차 포함이 되기 때문임.</li> </ul>
대상범위	<p><b>(연령기준만 적용하고 모든 집단 포함)</b></p>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24세 이하의 유학생, 결혼이주자, 이주노동자들도 조사 범위에 포함</li> <li>• 결혼이주여성과 이주노동자, 유학생도 포함</li> <li>• 만 24세 이하 후기청소년 유학생, 결혼이주자, 이주노동자 당사자도 동 법의 범주 안에서 정책대상이 되어야 할 것임.</li> <li>• 유학생, 결혼이주자, 이주노동자뿐 아니라 법의 사각시대에 놓여있는 난민 아동, 무국적 아동들까지도 포함</li> <li>• 후기청소년 유학생, 결혼이주자, 이주노동자 등도 포함이 될 수 있음</li> <li>• 일정한 연령을 기준으로 하는 아동 및 청소년에 대해서는 체류자격이 상정하는 목적 기준이 아닌 연령을 객관적 기준으로 하여 보편적으로 적용</li> <li>• 청소년은 연령적인 규정이며 이들이 유학생이든, 결혼이주자이든, 이주노동자이든 그들의 체류자격이나 역할에 따라 포함 또는 배제가 결정될 필요는 없다고 봄.</li> </ul> <p><b>(부모자격에 귀속되는 집단 등에 한정)</b></p>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학교나 어떤 기관에 속해 서비스 안내를 받을 수 없는 거주비자(F-1.2.3.4.5 와 H-2 등) 아동·청소년으로 한정함.</li> <li>• 부모의 자격에 귀속되는 아동뿐만 아니라 독립적인 체류자격을 소지한 외국인까지 포함시키는 것은 여타 정책과의 충돌 가능성을 배제할 수 없어 이들 집단은 배제하는 것이 바람직함.</li> <li>• 나이나 체류자격으로 자르기보다는, 부모(또는 직계존속)의 이주에 영향을 받아 이주한 경우를 이주배경청소년으로 함.</li> <li>• 결혼이주자는 다문화가족지원법으로, 유학생은 이주배경청소년으로, 이주노동자는 외국인근로자의 범주로 포괄하는 것이 적절함.</li> <li>• 결혼이주자의 경우 성인이 되어 결혼을 하였는데 ‘청소년’으로 포함하기에는 무리가 있음. 혼인의 경우 제외하는 것으로 설계 가능함.</li> </ul>

## 5) 이주배경 아동·청소년지원법 제정 시 포함해야 할 내용

마지막으로 만일 이주배경 아동·청소년지원법을 제정한다고 할 때 어떤 내용이 포함되어야 한다고 생각되는지에 대한 전문가 의견을 제시하면 다음과 같다. 우선 첫째로 법안의 명칭에 대하여 법안의 목적과 정의, 각종 용어의 개념, 절차 등에 대한 조항을 포함해야 한다는 의견이 있었고, 둘째로 연령은 0세부터 24세까지 모두 포함하는 것이 바람직하나 아동연령과 청소년연령의 각 법령 간 일관성을 고려하여 대상을 정할 필요가 있음을 제시하기도 하였다. 셋째는 대상을 누구로 할 것인지 대상을 분명히 정의하는 것이 바람직하다는 의견과 우리 사회가 관심을 두어야 하는 이주배경의 유형을 정의해야 한다는 의견, 특히 미등록 체류자 자녀나 무국적 자녀, 난민 자녀 등 포괄적인 범위의 청소년들이 서비스를 받을 수 있도록 대상을 포괄적으로 정할 필요가 있다는 의견이 있었다. 넷째로는 이주배경 아동·청소년 정책 추진체계와 관련된 내용을 포함할 필요가 있다는 의견도 제시되었다. 즉, 정책담당부서와 전달체계, 예산수립과정 등이 포함된 기본계획에 대한 내용, 국무총리산하 이주배경 아동·청소년 정책위원회 설치 내용, 이주배경 아동·청소년 관련 중앙정부의 역할과 지자체의 역할과 책무 등에 대한 내용도 포함되는 것이 필요하다는 내용이다. 다섯째로, 정기적인 실태조사를 실시한다는 내용과 행정자료 연계와 관련된 내용, 조사와 관련한 대상, 내용, 절차 및 공개 관련 자세한 내용을 포함하면 좋겠다는 의견도 있었고, 여섯째는 이주배경 아동·청소년의 지원과 관련된 내용을 구체적으로 포함하는 것이 좋겠다는 의견이었는데, 지원의 원칙이 필요하다는 의견도 있었고, 지원의 내용으로 교육, 복지, 돌봄, 건강, 심리상담, 진로 및 노동 등 다양한 영역에서의 지원을 언급하였다. 그 외에 일반 국민 대상 다문화수용성을 제고할 수 있는 교육과 청소년 지도자 대상 다문화교육의 의무화와 같이 청소년을 둘러싼 지도인력의 다문화수용성 제고방안이 포함될 필요가 있다는 의견도 있었다. 지금까지의 의견들은 이주배경 아동·청소년에게 어떤

지원을 해줄 것인가와 관련된 내용을 포함해야 한다는 내용이었는데, 그와 다른 시각으로 특별한 지원이 필요하다기 보다는 이주배경으로 인하여 차별받지 않아야 한다는 내용을 포함하는 것이 바람직하다는 의견도 다수 있었다. 즉, 이주배경 아동·청소년들이 청소년복지 지원법에서 대상이 되는 일반적인 아동·청소년이 받을 수 있는 지원을 보편적으로 모두 받을 수 있다는 조항으로 구성하는 것이 바람직하다는 의견이었다.

**표 IV-7. 이주배경 아동·청소년지원법 제정 시 포함해야 할 내용**

	전문가 의견
정의 및 목적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법안의 목적과 각종 개념 정의</li> <li>• 개념, 범위, 정보수집 목적, 방법, 절차 등에 관한 조항</li> </ul>
연령범위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연령은 0세부터 24세까지 명시</li> <li>• 0세~18세미만 (아동), 9세부터~24세 (청소년) 등 법령 간 자료의 일관성</li> </ul>
대상 정의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대상에 대한 분명한 정의</li> <li>• 이주배경, 청소년, 지원 등에 대한 명확한 정의와 범주가 필요함.</li> <li>• 우리 사회가 관심을 두어야 하는 이주배경의 유형, 대상으로서 청소년의 범주.</li> <li>• 일반적인 법률에서 담고 있는 정책대상의 정의 및 범위, 지원 서비스, 실태조사 외에, 미등록 체류자 자녀, 무국적자 자녀, 미인정 난민 자녀 등 포괄적 범위와 서비스를 다루는 것이 바람직함.</li> </ul>
추진체계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담당정책부서와 담당자, 전달체계, 예산에 관련된 계획 수립과정</li> <li>• 국무총리를 위원장으로 하는 이주배경아동·청소년정책위원회 설치</li> <li>• 지자체의 역할과 책임 명시/ 지자체 전달체계 구축 권고, 중앙 컨트롤 타워</li> <li>• 이주배경청소년 지원기관의 설치와 운영에서 '중앙정부의 역할'</li> <li>• 지원체계에서 중앙 역할을 하는 기관과 지역의 센터간의 역할</li> <li>• 지원체계(위원회나 기본계획)</li> <li>• 국가와 지방자치단체의 책무(관련 기관, 담당 공무원 배치, 담당자 교육, 인식 개선 등)</li> </ul>
통계구축 및 실태조사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실태조사</li> <li>• 실태조사, 자료의 연계</li> <li>• 규모파악 등 데이터 구축</li> <li>• 이주배경 아동·청소년 행정자료 연계 관련 조항</li> </ul>

	<b>전문가 의견</b>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정기적 실태조사 등 연구, 통계구축,</li> <li>• 실태 및 지원 욕구 파악이 가능한 실태조사 실시</li> <li>• 법과 시행령에서 조사 대상, 조사 내용, 조사의 절차 및 결과 공개</li> </ul>
지원원칙 및 내용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지원원칙</li> <li>• 생존을 위한 모든 서비스, 보호받을 수 있는 권리, 발달단계에 따른 지원, 교육받을 수 있는 권리 등</li> <li>• 지원내용(보육/돌봄, 건강/보건, 교육, 심리/상담, 권익, 진로/노동 등)</li> <li>• 교육기회의 보장</li> <li>• 보육 및 건강지원</li> <li>• 후기청소년의 진로 및 취업지원, 학교밖 청소년들의 보호 등</li> <li>• 사회적응 지원(한국어 교육 등)</li> <li>• 학교밖 이주배경청소년지원 및 상담</li> </ul>
일반국민 대상 다문화교육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사회적응과 통합을 위한 세계시민교육</li> <li>• 일반 국민을 대상으로 하는 인식 개선 활동</li> <li>• 전 국민대상 인식개선 및 청소년시설 종사자 교육의 의무화</li> </ul>
차별금지 및 보편적 권리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차별금지 또는 비차별 원칙</li> <li>• 국적, 체류자격에 따른 비차별 조항 포함.</li> <li>• 출신 국가, 민족, 인종 등을 이유로 한 공공 및 사적 영역에서의 차별 금지</li> <li>• 아동학대 피해자에 대하여 국민과 동일한 사회보장</li> <li>• 국적, 출신, 인종 등을 이유로 한 차별금지내용, 특히 국적이거나 체류자격에 따라 차별하지 않을 차별금지조항</li> <li>• 청소년복지 지원법에 포함된 모든 조항을 이주배경청소년에게도 적용.</li> <li>• 기존의 한국인인 아동·청소년이 누릴 수 있는 다양한 지원체계를 동일하게 누릴 수 있되, 이주아동으로서 겪을 취약성에 대해 특별히 더 보호하는 내용 (아동학대 피해 시 지원체계 및 체류자격에 관한 것, 무국적일 경우, 미등록 일 경우에도 지원을 받을 수 있게 하거나 신분에 대한 보장이 이루어질 수 있는 내용을 포함하는 것 등)</li> <li>• 아동 최상의 이익을 고려한 원칙들이 반영된 조항</li> </ul>

#### 4. 이주배경 아동·청소년 현황통계 및 실태조사 법제화방안

본 연구는 전년도에 논의된 법제화방안에 더하여 청소년복지 지원법 개정안과 이주배경아동·청소년지원법 제정안에 대하여 전문가들의 의견을 수렴하고, 통계

작성을 위한 법안에 포함되어야 할 내용, 즉, 통계작성의 주체, 통계작성의 대상과 범주, 통계의 목적, 통계작성과 공개, 자료의 요청과 연계, 제3제 제공, 통계조사기관의 지정과 그 밖의 절차에 관한 사항 등을 좀 더 구체적으로 살펴며, 이를 청소년복지 지원법 개정(안)과 이주배경 아동·청소년지원법(안)에 포함할 경우의 법안을 각각 제시하고자 하였다. 본 연구에서는 어떤 것이 더 바람직하다고 제안하는 것은 아니다. 두 가지 안을 모두 제시하여, 그 중 현실적으로 좀 더 가능한 안을 채택할 경우 사용할 수 있는 법안의 내용을 제시하는 것이 연구의 목적이다.

### 1) 청소년복지 지원법 개정(안)<sup>2)</sup>

청소년복지 지원법에 포함할 경우 만 9세 이하의 아동들이 포함되지 않는다는 한계를 지닌다. 이에 대하여 조사대상자를 다음의 1에서 6과 같이 명시하는 방안을 제시하였다.

1. 24세 이하의 국내 또는 국외에서 출생한 국제결혼가정 청소년
2. 24세 이하의 국내 또는 국외에서 출생한 외국인 가정 청소년
3. 24세 이하의 남한출생 북한배경 청소년
4. 24세 이하의 북한에서 출생한 청소년
5. 24세 이하의 제3국에서 출생한 북한배경 청소년
6. 그 밖에 국내로 이주하여 사회 적응 및 학업 수행에 어려움을 겪는 청소년

그러나 청소년복지 지원법의 대상 자체가 청소년 연령인 만 9세에서 24세로 규정된 상태에서 연령을 24세 이하로 하는 것은 서로 상충된다는 전문가 의견에 따라 대상은 현행대로 두고, 행정통계 연계를 통한 통계구축 시에는 24세 이하의 통계를 산출하는 것을 제안하였다. 다만, 현재는 ‘이주배경청소년의 상담 및 교육

---

2) 청소년복지 지원법 개정(안)은 양계민 외(2021)의 「이주배경 아동·청소년 현황통계 생성을 위한 행정자료 연계방안 연구」의 내용을 제시함.

등 필요한 시책을 마련하고 시행하여야 한다'고 되어 있는 것을 '상담, 교육 및 조사 등'으로 '조사'항목을 추가로 포함함으로써 통계구축의 근거를 마련하고, 제18조 2항에 통계작성 및 실태조사의 내용에 구체적인 내용을 제시하였다.

현행	개정안
<p>제18조(이주배경청소년에 대한 지원)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청소년의 사회 적응 및 학습능력 향상을 위하여 상담 및 교육 등 필요한 시책을 마련하고 시행하여야 한다.</p> <ol style="list-style-type: none"> <li>1. 「다문화가족지원법」 제2조제1호에 따른 다문화가족의 청소년</li> <li>2. 그 밖에 국내로 이주하여 사회 적응 및 학업 수행에 어려움을 겪는 청소년</li> </ol>	<p>제18조(이주배경 아동·청소년에 대한 지원)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청소년의 사회 적응 및 학습능력 향상을 위하여 상담, 교육 및 조사 등 필요한 시책을 마련하고 시행하여야 한다.</p> <ol style="list-style-type: none"> <li>1. 「다문화가족지원법」 제2조제1호에 따른 다문화가족의 아동·청소년</li> <li>2. 그 밖에 국내로 이주하여 사회 적응 및 학업 수행에 어려움을 겪는 아동·청소년</li> </ol>
<p>〈신 설〉</p>	<p>제18조의2(통계작성 및 실태조사 등) ① 여성가족부장관은 제18조에 따른 이주배경 아동·청소년 정책의 효율적인 추진과 성장격차해소 및 사회통합을 위하여 이주배경 아동·청소년의 현황을 파악하여 매년 공표하여야 하며, 이주배경 아동·청소년에 대한 기초자료 수집을 위한 실태조사를 3년 주기로 실시하고 그 결과를 통계로 작성하여 공개하여야 한다.</p> <p>② 여성가족부장관은 제1항에 따른 이주배경 아동·청소년 통계작성 및 실태조사의 정확성 제고 및 조사업무 경감을 위하여 관련 자료를 보유한 중앙행정기관의 장 및 「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에 따른 공공기관 등 관계 기관의 장에게 자료의 제공을 요청할 수 있다. 이 경우 자료 간 연계를 요청받은 기관의 장은 특별한 사유가 없으면 이에 따라야 한다.</p> <p>③ 여성가족부장관은 이주배경 아동·청소년 현황 통계 작성을 위하여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사람의 주민등록번호가 포함된 개인정보를 수집할 수 있으며, 이를 제5항에 따라 연계를 요청받은 기관에 통계조사 및 분석, 검증 등을 목적으로 제공하거나</p>

현행	개정안
	<p>제공받을 수 있다.</p> <ol style="list-style-type: none"> <li>1. 조사대상 이주배경 아동·청소년</li> <li>2. 조사대상 이주배경 아동·청소년의 부모(보호자)</li> </ol> <p>④ 여성가족부장관은 이주배경 아동·청소년 통계 조사에 의하여 수집된 자료를 이용하고자 하는 자에게 이를 제공할 수 있다. 이 경우 특정의 개인이나 법인 또는 단체를 식별할 수 없는 형태로 자료를 제공한다.</p> <p>⑤ 여성가족부장관은 이주배경 아동·청소년 현황 통계작성 및 실태조사 등의 업무를 위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전문기관에게 그 업무를 위탁할 수 있다. 이 경우 여성가족부장관은 지정이나 업무 위탁에 필요한 경비를 지원할 수 있다.</p> <p>⑥ 제1항부터 제5항까지에서 규정한 사항 외에 이주배경 아동·청소년 통계조사의 조사대상, 절차 및 결과 공개, 자료보관과 폐기 등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p>

## 2) 청소년복지 지원법 시행령 개정(안)<sup>3)</sup>

청소년복지 지원법을 개정하는 방안 이외에 청소년복지 지원법 시행령을 개정하는 방안을 제시하였는데, 시행령에 다음과 같은 내용 추가하는 방안을 제시하였다.

<p>제00조의(통계작성 및 실태조사 등)</p> <ol style="list-style-type: none"> <li>① 여성가족부장관은 제18조에 따른 이주배경 아동·청소년 정책의 효율적인 추진과 성장격차 해소 및 사회통합을 위하여 이주배경 아동·청소년의 현황을 파악하여 매년 공표하여야 하며, 이주배경 아동·청소년에 대한 기초자료 수집을 위한 실태조사를 3년 주기로 실시하고 그 결과를 통계로 작성하여 공개하여야 한다.</li> <li>② 여성가족부장관은 제1항에 따른 이주배경 아동·청소년 통계작성 및 실태조사의 정확성 제고 및 조사업무 경감을 위하여 관련 자료를 보유한 중앙행정기관의 장 및 「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에 따른 공공기관 등 관계 기관의 장에게 자료의 제공을 요청할 수 있다. 이 경우 자료 간 연계를 요청받은 기관의 장은 특별한 사유가 없으면 이에 따라야 한다.</li> <li>③ 여성가족부장관은 이주배경 아동·청소년 현황통계 작성을 위하여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li> </ol>
---

3) 청소년복지 지원법 개정(안)은 양계민 외(2021)의 「이주배경 아동·청소년 현황통계 생성을 위한 행정자료 연계방안 연구」의 내용을 제시함.

사람의 주민등록번호가 포함된 개인정보를 수집할 수 있으며, 이를 제5항에 따라 연계를 요청받은 기관에 통계조사 및 분석, 검증 등을 목적으로 제공하거나 제공받을 수 있다.

1. 조사대상 이주배경 아동·청소년
2. 조사대상 이주배경 아동·청소년의 부모

④ 여성가족부장관은 이주배경 아동·청소년 통계조사에 의하여 수집된 자료를 이용하고자 하는 자에게 이를 제공할 수 있다. 이 경우 특정의 개인이나 법인 또는 단체를 식별할 수 없는 형태로 자료를 제공한다.

⑤ 여성가족부장관은 이주배경 아동·청소년 현황통계 작성 및 실태조사 등의 업무를 위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전문기관에게 그 업무를 위탁할 수 있다. 이 경우 여성가족부장관은 지정이나 업무 위탁에 필요한 경비를 지원할 수 있다.

⑥ 제1항부터 제5항까지에서 규정한 사항 외에 이주배경 아동·청소년 통계조사의 조사대상, 절차 및 결과 공개, 자료보관과 폐기 등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 3) 이주배경 아동·청소년지원법(안)

본 연구에서는 이주배경 아동·청소년지원법 중 통계작성을 위한 내용을 구성하기 위하여 필요한 기초적 조문들을 중심으로 구성하고자 하였다. 포함된 내용으로는 이주배경 아동·청소년지원법의 i)목적, ii)정의, iii)국가와 지방자치단체의 책무, iv)기본계획수립, v)이주배경 아동·청소년에 대한 지원, vi)현황조사 및 실태조사, vii)이주배경 아동·청소년 통계센터 지정 및 업무위탁에 대한 내용 등 총 7개 조문을 구성하였다. 그 내용은 아래와 같다.

제1조(목적) 이 법은 이주배경 아동·청소년 정책의 성장격차 해소 및 사회통합을 위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이주배경 아동·청소년이란 '본인 또는 부모가 외국(북한을 포함한다. 이하 같다)에서 대한민국으로 이주를 한 24세 이하의 사람으로서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을 말한다.

1. 국제결혼가정자녀(국내 및 국외에서 출생한 자녀를 포함한다)
2. 외국인가정의 자녀(국내 및 국외에서 출생한 자녀를 포함한다)
3. 「북한이탈주민의 보호 및 정착지원에 관한 법률」제 2조제1호에 따른 북한이탈주민과 그 자녀(국외에서 출생한 자녀를 포함한다)
4. 그 밖에 외국에서 대한민국으로 이주하여 사회 적응 및 학업 수행에 어려움을 겪는 청소년으로서 여성가족부장관이 인정하는 사람

제3조(국가와 지방자치단체의 책무)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이주배경 아동·청소년의 성장격차 해소 및 사회통합을 위하여 필요한 시책을 수립·시행하여야 한다.

제4조(기본계획 수립 등) ① 여성가족부 장관은 이주배경 아동·청소년 지원을 위하여 5년마다 이주배경 아동·청소년 지원에 관한 기본계획(이하“기본계획”이라고 한다)을 수립하고, 매년 시행계획을 수립·시행하여야 한다.

② 기본계획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포함하여야 한다.

1. 이주배경 아동·청소년 지원 정책의 기본 방향
2. 이주배경 아동·청소년 지원 시책과 평가에 관한 사항
3. 이주배경 아동·청소년의 사회 적응 및 학습능력 향상을 위한 상담, 교육 및 홍보에 관한 사항
4. 이주배경 아동·청소년에 관한 현황 및 실태조사에 관한 사항
5. 그 밖에 이주배경 아동·청소년을 위하여 필요한 사항

③ 여성가족부장관은 기본계획을 수립할 때 미리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과 협의하여야 한다.

④ 기본계획은 「다문화가족지원법」 제3조의4에 따른 다문화가족정책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확정한다.

⑤ 여성가족부장관은 기본계획이나 시행계획을 수립하기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관계 기관의 장 또는 단체에 대하여 기본계획의 수립에 필요한 자료의 제출을 요구할 수 있다. 이 경우 관계 기관의 장 및 단체는 정당한 사유가 없으면 이에 따라야 한다.

⑥ 기본계획 및 시행계획의 수립·시행 등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제5조(이주배경 아동·청소년에 대한 지원)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는 이주배경 아동·청소년이 대한민국 사회에 적응하는 데 필요한 정보와 교육을 제공하고 초·중·고등학교 및 대학교에서의 학습능력 향상을 위한 지원 및 심리상담을 위하여 필요한 지원을 할 수 있다.

제6조(현황조사 및 실태조사 등) ① 여성가족부장관은 이주배경 아동·청소년정책의 효율적인 추진과 성장격차해소 및 사회통합을 위하여 여성가족부령으로 하는 이주배경 아동·청소년의 기초 현황을 조사하여 매년 공표하여야 한다.

② 여성가족부장관은 이주배경아동·청소년의 발달현황을 파악하기 위한 실태조사를 3년 주기로 실시하고, 그 결과를 통계로 작성하여 공개하여야 한다.

③ 여성가족부장관은 제1항 및 제2항에 따른 조사를 위하여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 지방자치단체의 장, 관계공공기관이나 관련 법인·단체에 대하여 협조를 요청할 수 있다. 이 경우 협조를 요청받은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 지방자치단체의 장, 관계 공공기관 또는 관련 법인·단체는 특별한 사유가 없으면 이에 따라야 한다.

④ 여성가족부장관은 제1항 및 제2항에 따른 조사를 위하여 이주배경 아동·청소년 및 그 부모의 성명이나 그 밖에 여성가족부령으로 정하는 개인정보를 수집할 수 있다.

⑤ 여성가족부장관은 이주배경 아동·청소년 통계조사에 의하여 수집된 자료를 이용하고자 하는 자에게 이를 제공할 수 있다. 이 경우 특정의 개인이나 법인 또는 단체를 식별할 수 없는 형태로 자료를 제공한다.

제7조(이주배경 아동·청소년 통계센터 지정 및 업무위탁) ① 여성가족부장관은 제6조제1항 및 제2항에 따른 조사 및 통계 등 결과 작성을 효율적으로 집행하기 위하여 이주배경 아동·청소년 통계센터(이하 “통계센터”라 한다)를 지정할 수 있다. 통계센터는 여성가족부장관으로부터

터 위탁을 받아 다음 각 호의 업무를 수행한다.

1. 이주배경 아동·청소년 현황통계 작성 업무
2. 이주배경 아동·청소년 실태조사 결과 분석 업무
- ② 여성가족부장관이 제1항 각 호의 업무 수행에 필요한 조사 자료를 통계센터에 제공할 때에는 개인을 식별할 수 없는 상태로 제공하여야 한다.
- ③ 여성가족부장관은 제2항 각 호의 업무를 수행하는 데 필요한 경비를 예산의 범위에서 지원할 수 있다.
- ④ 통계센터의 지정과 그 취소의 기준, 절차 및 운영 등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 부칙

제1조(시행일) 이 법은 공포 후 1년이 지난 날부터 시행한다.

제00조(다른 법률의 개정) 청소년복지 지원법 제 18조는 삭제한다.



○———— 참고문헌



---

## 참고문헌

---

관계부처 합동(2021). **미등록 이주아동 사회적 기본권 보장방안** (사회관계장관회의 2021-21, 1호). 관계부처 합동.

김기현, 문호영, 황세영, 유민상, 김균희, 이용해 (2021). **2020년 청소년종합실태 조사** (연구보고 2021-06). 서울, 세종: 여성가족부, 한국청소년정책연구원.

양계민, 김지연, 장윤선, 김사강, 김동진, 이택건, 김주영, 변수정, 조성호, 김은정, 이주연, 조혜영, 김성식, 김이선, 최윤정, 이명진, 동제연, 이민영, 장인숙, 김학령, 김유연 (2020). **포용사회 구현을위한 이주배경 아동·청소년 성장기회격차 해소방안연구: 통계구축방안을 중심으로** (연구보고서 19-R19). 세종: 경제·인문사회연구원.

양계민, 장윤선, 임후남, 최유, 최지연, 권채리 (2021). **이주배경아동·청소년 현황 통계 생성을 위한 행정자료 연계방안연구** (연구보고서 21-R00). 세종: 경제·인문사회연구원.

양계민, 장윤선, 정윤미 (2021). **이주배경청소년실태조사**. 서울: 이주배경청소년지원재단.

### [인터넷 자료]

법무부(2021. 4. 19). **국내출생 불법체류 아동 조건부 구제대책 시행방안**.

<https://www.immigration.go.kr/immigration/1473/subview.do?enc=Zm5jdDF8QEB8JTJGYmJzJTJGaW1taWdyYXRpb24lMkY0NyUyRjU0NjY4MSUyRmFydGNsVmllldy5kbyUzRg%3D%3D>에서 2021년 12월 10일 인출.

법무부(2021.6.21.). **가족관계의 등록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입법예고**.  
<https://www.moj.go.kr/bbs/moj/157/549096/artclView.do>에서 2021년  
12월 10일 인출.

한국교육개발원 교육통계서비스. **탈북학생현황**. <https://kess.kedi.re.kr/index>  
에서 2021년 10월 2일 인출.

[법령 자료]

**다문화가족지원법** (2020. 5. 19. 일부개정, 법률 제17281호). 법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https://www.law.go.kr/법령/다문화가족지원법>에서 2021년 12월  
10일 인출.

**북한이탈주민의 보호 및 정착지원에 관한 법률** (2021. 4. 20. 일부개정, 법률 제18082호). 법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https://www.law.go.kr/법령/북한이탈주민의보호및정착지원에관한법률>에서 2021년 12월 10일 인출.

**청소년복지 지원법** (2021. 4. 20. 일부개정, 법률 제18101호). 법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https://www.law.go.kr/법령/청소년복지지원법>에서 2021년 10월  
2일 인출.

**초·중등교육법** (2021. 3. 23. 일부개정, 법률 제17958호). 법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https://www.law.go.kr/법령/초·중등교육법>에서 2021년 10월 2일  
인출.

**출입국관리법** (2021. 7. 13. 일부개정, 법률 제18295호). 법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https://www.law.go.kr/법령/출입국관리법>에서 2021년 12월 10일 인출.

## 국문초록

본 연구는 우리 사회에 점차 증가하고 있는 이주배경 아동·청소년의 현황통계를 효율적으로 파악할 수 있는 방안으로써 행정통계연계방안을 모색하고, 이주배경 아동·청소년의 현황통계 및 실태조사를 안정적으로 추진할 수 있는 법적 근거를 모색하기 위하여 추진되었다. 연구목적에 위하여 크게 두 가지 과제를 추진하였다. 첫 번째로 현재까지 구축된 통계청, 교육부, 통일부 행정자료 현황을 분석하고, 현 상황의 데이터 사각지대를 해소하고 정확성을 제고하기 위한 방안을 모색하였다. 이와 관련하여 외국인가정의 통계의 가구단위 조사 및 등록방안, 제3국 출생 탈북청소년 통계 확보 방안, 그리고 국내출생 미등록 아동의 통계구축방안 등을 제시하였다. 두 번째로는 이주배경 아동·청소년지원법의 신규제정방안을 제시하였다. 이주배경 아동·청소년지원법에서는 이주배경 아동·청소년의 정의, 범위, 통계작성 및 실태조사, 이주배경 아동·청소년에 대한 지원, 등의 내용을 포함하였다.

**ABSTRACT**

The purposes of this study are to efficiently obtain the current statistics concerning increasing migrant background children and youths in our society through administrative statistical methods and to seek a legal basis to proceed with surveys of migrant background children and youths and to keep statistics up to date in a reliable manner. To achieve these purposes, firstly, the study has analyzed the current administrative data and information established so far in the National Statistical Office, Ministry of Education, and the Ministry of Unification and sought ways to build the unestablished data and to enhance statistical accuracy and reliability. For this, the study has proposed several plans and measures, including survey and registration of statistics on foreign families on a household unit basis, securing statistics on North Korean defectors born in third countries, and building statistics on unregistered children born in Korea. Second, this study has presented the Welfare Support Act for Migrant Background Children and Youths. The act includes that the definition and scope of migrant background children and youth, the ways to build the statistics and conduct surveys, the welfare support for them, and the statistics center for the migrant background child and youths.

## 2021년 한국청소년정책연구원 발간자료 목록

### 기관고유과제

- 21-R01 아동·청소년 대상 디지털 성범죄 현황 및 대응방안 연구 / 장근영·임지연
- 21-R02 지역사회 청소년 스포츠 활동 활성화 방안 연구 / 김정숙·정은주·정현우
- 21-R03 10대 청소년의 정신건강 실태조사 / 최정원·문호영·전진아·박용천
- 21-R04 청소년 정치참여 실태와 활성화방안 연구 / 모상현·최용환·남미자·정건희
- 21-R05 미래지향적 청소년 시설 및 공간 혁신방안 연구 / 김경숙·강경균·변나향
- 21-R06 아동·청소년의 놀이 실태 및 성장지원 방안연구 / 김영한·이유진
- 21-R07 청년의 사회적 고립 실태 및 지원방안 연구 / 유민상·신동훈
- 21-R08 장애청소년 친화적 청소년정책 추진방안 연구 / 김지연·김승경·오욱찬·정소연
- 21-R09 청소년 분야 한국판 뉴딜 대응전략 연구 / 최창욱·좌동훈·성은모·남화성
- 21-R10 2021 아동·청소년 권리에 관한 국제협약 이행 연구 -한국 아동·청소년 인권실태: 총괄보고서 / 김영지·최홍일·유설희·이민희·김진호
- 21-R10-1 2021 아동·청소년 권리에 관한 국제협약 이행 연구 -한국 아동·청소년 인권실태: 심화분석보고서 / 유성삼
- 21-R10-2 2021 아동·청소년 권리에 관한 국제협약 이행 연구 -한국 아동·청소년 인권실태: 총괄보고서 / 김영지·최홍일·유설희
- 21-R11 지역사회 네트워크를 활용한 청소년 성장지원정책 추진체계 구축 방안 연구Ⅲ / 황세영·이경상·송민경·조윤정
- 21-R12 포스트 코로나 시대의 청소년정책 대응 방안 연구 / 서정아·성윤숙·홍순구·권일남
- 21-R12-1 비정형 민원 데이터를 활용한 청소년 정책의제 도출 / 홍순구·임지연
- 21-R12-2 공공데이터를 활용한 청소년 정책의제 도출 / 홍성호
- 21-R13 2021 한국 아동·청소년 패널조사 / 하형석·황진구·김성은·이용해

- 21-R13-1 2021 한국 아동·청소년 패널조사: 데이터분석보고서 / 김성은·박찬호
- 21-R14 2021 다문화청소년 종단연구 / 양계민·장윤선·정윤미·한지형
- 21-R14-1 2021 다문화청소년 종단연구: 기초분석보고서(1기 패널) / 양계민·장윤선·정윤미·한지형
- 21-R14-2 2021 다문화청소년 종단연구: 기초분석보고서(2기 패널) / 양계민·장윤선·정윤미·한지형

## 협동연구과제

- 경제·인문사회연구회 협동연구총서 21-76-01 학교밖 청소년 지역사회 지원방안 연구Ⅳ:  
질적 패널조사를 중심으로 / 김희진·서고운·김은정 (자체번호 21-R15)
- 경제·인문사회연구회 협동연구총서 21-76-02 학교밖 청소년 지역사회 지원방안 연구Ⅳ:  
질적 종단자료 심층분석보고서 / 김희진·서고운·김미정·류정희·권지성 (자체번호 21-R15-1)
- 경제·인문사회연구회 협동연구총서 21-77-01 청소년의 건강권 보장을 위한 정책방안 연구Ⅲ:  
후기청소년 / 임희진·황여정·유성렬 (자체번호 21-R16)
- 경제·인문사회연구회 협동연구총서 21-77-02 청소년의 건강권 보장을 위한 정책방안 연구Ⅲ:  
후기청소년 - 해외사례 분석 / 임희진·박윤주·황여정 (자체번호 21-R16-1)
- 경제·인문사회연구회 협동연구총서 21-77-03 청소년의 건강권 보장을 위한 정책방안 연구Ⅲ:  
후기청소년 - 기초분석보고서 / 임희진·황여정 (자체번호 21-R16-2)
- 경제·인문사회연구회 협동연구총서 21-78-01 청소년 미디어 이용 실태 및 대상별 정책대응방안 연구Ⅱ:  
10대 청소년 / 배상률·이창호·김남두 (자체번호 21-R17)
- 경제·인문사회연구회 협동연구총서 21-78-02 청소년 미디어 이용 실태 및 대상별 정책대응방안 연구 Ⅱ:  
10대 청소년 -청소년 미디어 교육 지원을 위한 부모 참여 중심 소셜리빙랩 운영 방안 /  
정현선·조병영·권은선·김광희 (자체번호 21-R17-1)
- 경제·인문사회연구회 협동연구총서 21-78-03 청소년 미디어 이용 실태 및 대상별 정책대응방안 연구Ⅱ:  
10대 청소년 - 기초분석보고서 / 배상률·이창호 (자체번호 21-R17-2)
- 경제·인문사회연구회 협동연구총서 21-79-01 청년 빈곤 실태와 자립안전망 체계 구축방안 연구Ⅰ:  
김형주·연보라·정세정·변금선 (자체번호 21-R18)
- 경제·인문사회연구회 협동연구총서 21-80-01 청년 사회 첫 출발 실태 및 정책방안 연구Ⅰ:  
일자리 / 김기현·배정희·김창환·성재민 (자체번호 21-R19)
- 경제·인문사회연구회 협동연구총서 21-80-02 청년 사회 첫 출발 실태 및 정책방안 연구Ⅰ:  
일자리 - 기초분석보고서 / 김기현·배정희 (자체번호 21-R19-1)

## 수 시 과 제

- 21-R20 보호종료아동 및 자립준비청소년 자립지원 현안과 과제 / 김지연
- 21-R21 청소년 자살 원인 탐색 및 예방 대책 연구 / 서고운
- 21-R22 포스트 코로나 시대의 청소년활동 활성화 방안 연구 / 문호영
- 21-R23 청년정책연구 분야별 현황 분석 / 신동훈·김세현
- 21-R24 학교미디어교육센터 설치 유형별 지역 안착방안 / 배상률
- 21-R25 이주배경 아동·청소년 행정자료 연계 및 법제화방안 연구 / 양계민

## 연구개발적립금

- 21-R26 청소년 정책연구 동향 분석 / 이지연

## 수 탁 과 제

- 21-R27 제4차 청소년보호종합대책 수립을 위한 기초연구 / 김승경·배정희
- 21-R28 청소년지도자 처우개선 및 청소년시설 운영기준 수립 연구용역 / 최용환·이희철·장혜윤
- 21-R29 청소년 자살예방 교육프로그램 효과성 분석 연구 / 김형주·강영배
- 21-R30 2021년 학교폭력 예방교육 컨설팅 매뉴얼 / 성윤숙·방인자·김유민·조아라
- 21-R31 2020 학교폭력 예방교육 어울림 프로그램 적용효과 분석 / 성윤숙·홍성호·김현수·장원빈
- 21-R32 한국 아동·청소년 삶의 질 지표 구축 방안 연구Ⅱ / 유민상
- 21-R33 2015년 개정교육과정에 따른 학교폭력 예방 어울림 교과 연계 프로그램(중학교용-영어) / 성윤숙·임희진
- 21-R34 2015년 개정교육과정에 따른 학교폭력 예방 어울림 교과 연계 프로그램(중학교용-기술·가정) / 성윤숙·서정아
- 21-R35 2015년 개정교육과정에 따른 학교폭력 예방 어울림 교과 연계 프로그램(중학교용-체육) / 성윤숙·김영지
- 21-R36 2015년 개정교육과정에 따른 학교폭력 예방 어울림 교과 연계 프로그램(고등학교용-영어) / 성윤숙·임희진

- 21-R37 2015년 개정교육과정에 따른 학교폭력 예방 어울림 교과 연계 프로그램(고등학교용-기술·가정) / 성윤숙·서정아
- 21-R38 2015년 개정교육과정에 따른 학교폭력 예방 어울림 교과 연계 프로그램(고등학교용-체육) / 성윤숙·김영지
- 21-R39 2020년 학부모용 학교폭력 예방교육 소식지 모음집 / 성윤숙·김옥수
- 21-R40 어울림 프로그램으로 열어가는 학교폭력 예방교육 안내서(초등학교용) / 성윤숙·김정민·김효주·장원빈
- 21-R41 어울림 프로그램으로 열어가는 학교폭력 예방교육 안내서(중학교용) / 성윤숙·김옥수
- 21-R42 어울림 프로그램으로 열어가는 학교폭력 예방교육 안내서(고등학교용) / 성윤숙
- 21-R43 이주배경 아동·청소년 현황통계 생성을 위한 행정자료 연계방안 연구 / 양계민·장윤선
- 21-R44 2020년 청소년종합실태조사 / 김기현·문호영·황세영·유민상·이용해·김균희
- 21-R45 2021년 학교폭력 예방교육 어울림 학생서포터즈단 시범 운영 매뉴얼 / 성윤숙·장원빈·최동혁·김예원
- 21-R46 (초등용) 학업중단 위기 학생을 위한 비대면 꿈지락 / 황세영·송원일·배수인·유한별
- 21-R47 (중등용) 학업중단 위기 학생을 위한 비대면 꿈지락 / 황세영·송원일·배수인·유한별
- 21-R48 미디어 리더러시 교육 지원체계 구축방안 연구 / 배상률
- 21-R49 강원 2024 청소년 참여 기본계획 / 김정숙·김경준·정은주·이용해·김혁진
- 21-R50 보호대상아동 심리정서지원체계 통합구축방안 연구 / 김지연·이상정·정소연
- 21-R51 위기청소년 자립지원 표준화방안 및 평가지표 개발 연구 / 김지연·정경은·권해수
- 21-R52 인천 다문화교육 종합발전방안 연구 / 연보라·김정숙·신동훈·김재우
- 21-R53 지자체 및 중앙부처 청년정책 분야별 시행계획 평가방안 심화연구 / 배정희·장근영·이용해
- 21-R54 청소년상담사 자격제도 개선연구 / 최창욱·좌동훈
- 21-R55 청소년 참여활성화 및 권리의식 신장을 위한 제도적 기반 연구 / 좌동훈·김지수
- 21-R56 2021년 대학 성희롱·성폭력 전담기구 실태조사 / 정은주·문호영
- 21-R57 포스트코로나 시대의 성남시 청소년서비스 수요분석과 대안전략 수립 연구 / 최용환·곽창규·김민주
- 21-R58 2021 특수교육대상자 인권실태조사 / 김성은·김영지·김지연·강경균·서고운·최홍일·임경원
- 21-R59 학교 성희롱·성폭력 사안처리 컨설팅 매뉴얼 / 정은주·임지연
- 21-R60 (2022년 개정판)어울림 프로그램으로 열어가는 학교폭력 예방교육 안내서(초등학교용) / 성윤숙·유설희·장원빈

- 21-R61 (2022년 개정판)어울림 프로그램으로 열어나가는 학교폭력 예방교육 안내서(중학교용) / 성운숙·유설희·김예원
- 21-R62 (2022년 개정판)어울림 프로그램으로 열어나가는 학교폭력 예방교육 안내서(고등학교용) / 성운숙·유설희·신보람
- 21-R63 지속가능한 청소년국제교류사업 발전방안 연구 / 양계민·김민
- 21-R64 2021 경기도 다문화학생 직업교육 지원방안 / 양계민·장윤선·강희숙
- 21-R65 이주배경 청소년 실태조사 / 양계민·정윤미·장윤선
- 21-R66 학업중단 위기 청소년의 유형별·단계별 지원 방안 / 김영지·박하나·손진희
- 21-R67 학업중단 예방을 위한 지역자원 유형 조사 및 연계 방안 / 김성은·송원일·최홍일·배수인
- 21-R68 2021년 청소년방과후아카데미 효과만족도 조사 연구 / 서정아·조아미
- 21-R69 포스트코로나 시대의 한·중 청소년 생활실태 및 가치관 비교연구 / 배상률·장수·김수영
- 21-R70 니트 등 비경제활동 청년층의 노동시장 유입을 위한 정책방안 연구 / 김기현·유민상·배정희·신동훈
- 21-R71 청년정책 해외사례 및 시사점 / 김기현
- 21-R72 청년과 정의 연구 / 김기현
- 21-R73 이주배경 아동·청소년 지원 지역기관 연계 시범사업 모니터링, 평가 및 모델개발(2차) / 연보라·좌동훈·장윤선·김재우·오성배·장흥성
- 21-R74 2021 학교 밖 청소년 실태조사 / 김희진·임희진·김정숙·서고운
- 21-R75 다함께돌봄센터 운영 실무 개발 연구 / 황진구·좌동훈
- 21-R75-1 다함께돌봄센터 운영 실무 매뉴얼 / 황진구·좌동훈
- 21-R76 강진 청소년문화예술센터 건립 연구용역 / 김영한·이유진·선민철·이상선
- 21-R77 2021년 지역사회 청소년 성장지원 모델 운영사업 / 황세영·이경상·유민상·최홍일

## 세미나 및 워크숍 자료집

- 21-S01 2020 학교폭력 예방교육 어울림 프로그램 우수사례집 (1.28)
- 21-S02 2021년 학교폭력 예방교육 컨설팅단 워크숍(1.27)
- 21-S03 2020년 어울림 프로그램 운영 우수사례 시상 및 성과보고회(1.28)
- 21-S04 청년 연속기획포럼: 『2020 한국청년을 말한다』3차 포럼-한국청년, 무엇을 원하는가?(1.15)

- 21-S05 청소년정책 토론회 『코로나 팬데믹, 그리고 청소년』(2.26)
- 21-S06 2021년 학교폭력 예방교육 어울림 학생서포터즈단 발대식 및 사전교육 자료집(6.5)
- 21-S07 근거기반 이주배경청소년정책 추진방안모색을 위한 전문가 포럼(7.27)
- 21-S08 21세기 비전, 한국-몽골 청소년의 유라시아 이니셔티브(7.19)
- 21-S09 대안교실 프로그램(꿈지락) 이해 및 활용 직무연수 자료집(7.27)
- 21-S10 2021년 학교폭력 예방교육 컨설팅단 상반기 성과보고회(8.10)
- 21-S11 2021 학업중단 예방 및 대안교육 포럼: 미래 대안교육, 함께 길을 찾다-청소년에게 맞춤형 교육기회를(8.20)
- 21-S12 대안학교 및 대안교육특성화학교 역량강화 연수(8.18)
- 21-S13 2021년 학교폭력 예방교육 발전방안 포럼(8.18)
- 21-S14 2021 미디어교육 현장지원단 워크숍: 학교 미디어교육 활성화 제고 및 현장 적용 방안 수업의 실제와 사례 공 유(8.13)
- 21-S15 National Youth Policy Review: India(6.14)
- 21-S16 National Youth Policy Review: Malawi(6.21)
- 21-S17 제41회 청소년정책포럼: 미래 청소년 정책의 새로운 구상(11.5)
- 21-S18 National Youth Policy Review: Gambia(6.29)
- 21-S19 2021년 학교폭력 예방교육 어울림 학생서포터즈단 중간워크숍 자료집(8.21)
- 21-S20 제4회 한일진로교육포럼: 코로나 시대의 진로교육, '다양한 배움의 장'에서의 진로교육기회보장에 관한 한일비교 (9.25)
- 21-S21 미래를 대표하기: 핀란드 정부의 청소년 참여 정책(9.10)
- 21-S22 제12차 청년정책포럼: 청년의 사회적 고립 실태 및 대응방안(10.5)
- 21-S23 콜로키움 Mongolian Youth Policy Review 5차(10.1)
- 21-S24 콜로키움 Guatemalan Youth Policy Review 6차(10.8)
- 21-S25 Youth and Public Policy in Afghanistan(11.22)
- 21-S26 제42회 청소년정책포럼: 청소년 정치참여 현안과제 및 활성화 방안 모색(11.25)
- 21-S27 청소년정책 릴레이 토론회 자료집 '환경변화에 따른 청소년 위기상황 대응 및 보호지원 방향'(10.27)
- 21-S28 영국의 청년 고용 및 훈련 정책(11.23)
- 21-S29 청소년정책 릴레이 토론회 자료집 '뉴노멀 시대의 청소년 활동 환경 조성 방안'(11.3)
- 21-S30 청소년정책 릴레이 토론회 자료집 '뉴노멀 시대의 청소년 복지정책 방향'(11.10)
- 21-S31 직원역량 콜로키움: 실무자를 위한 예산 편성의 실제(11.22)

- 21-S32 2021 대안학교 관리자 및 담당자 역량 강화를 위한 랜선토크 워크숍 자료집(11.25)
- 21-S33 청소년 정책 토론회: 청소년활동 프로그램 성인지 감수성 제고 방안(12.2)
- 21-S34 지역사회 네트워크를 활용한 청소년 성장지원 정책 추진체계 구축 시범사업Ⅲ" 시범사업기관 성과공유 워크숍 (11.24)
- 21-S35 미국 연방정부 및 주정부의 주요 청소년 정책 사례(12.3)
- 21-S36 제10회 한국아동청소년패널 학술대회(11.19)
- 21-S37 2021년 우수 대안교육 위탁교육기관 지원사업 연차평가 사전 워크숍(12.17)
- 21-S38 2021 학업중단예방 집중지원학교 및 대안교실 성과공유회(12.16)
- 21-S39 2021 대안교육 위탁교육기관 담당자 역량강화 연수(12.16)
- 21-S40 청소년 정책 토론회: 청소년 참여활성화 및 권리의식 신장을 위한 제도(12.15)

## 학 술 지

- 「한국청소년연구」 제32권 제1호(통권 제100호)
- 「한국청소년연구」 제32권 제2호(통권 제101호)
- 「한국청소년연구」 제32권 제3호(통권 제102호)
- 「한국청소년연구」 제32권 제4호(통권 제103호)

## 기타 발간물

- NYPI Bluenote 이슈 & 정책 130호 : 청소년활동의 사회적 가치 제고방안 연구
- NYPI Bluenote 이슈 & 정책 131호 : 청소년지도자 양성시스템 재구축 방안 연구Ⅱ
- NYPI Bluenote 이슈 & 정책 132호 : 국가 미래 인적자원으로서 재외동포청소년 성장과 지원방안 연구 Ⅲ
- NYPI Bluenote 이슈 & 정책 133호 : 지역사회 네트워크를 활용한 청소년 성장지원 정책 추진체계 구축방안 연구 Ⅱ
- NYPI Bluenote 이슈 & 정책 134호 : 학교 밖 청소년 지역사회 지원방안 연구Ⅲ: 질적 패널조사를 중심으로
- NYPI Bluenote 이슈 & 정책 135호 : 청소년 빅데이터 체계 구축 및 활용방안 연구
- NYPI Bluenote 이슈 & 정책 136호 : 청소년·청년의 플랫폼 노동 실태와 대응 방안 연구

- NYPI Bluenote 통계 53호 : 위기청소년 실태 파악을 위한 예비조사 결과
- NYPI Bluenote 통계 54호 : 아동·청소년의 주거환경 인식조사
- NYPI Bluenote 통계 55호 : Z세대 10대 청소년의 가치관 변화 연구
- NYPI Bluenote 통계 56호 : 청년 사회·경제실태 및 정책방안 연구Ⅴ
- NYPI Bluenote 통계 57호 : 위기청소년 건강권 실태
- NYPI Bluenote 통계 58호 : 2020 다문화청소년 종단연구 2기 패널 주요 조사 결과
- NYPI Bluenote 통계 59호 : 청소년 혐오표현 노출 실태 연구
- NYPI Bluenote 통계 60호 : 청년 핵심정책 대상별 실태 및 지원방안 연구Ⅲ: 청년 이직자
- NYPI Bluenote 통계 61호 : 10대 청소년 미디어 이용 실태
- NYPI Bluenote 통계 62호 : 한국아동·청소년패널조사 2018 제3차년도 주요 조사 결과 및 데이터 분석·활용
- NYPI Bluenote 통계 63호 : 아동·청소년인권실태조사

연구보고 21-R25

---

## 이주배경 아동·청소년 행정자료 연계 및 법제화방안 연구

---

인 쇄 2021년 12월 23일

발 행 2021년 12월 30일

발행처 **한국청소년정책연구원**  
**세종특별자치시 시청대로 370**

발행인 김 현 철

등 록 1993. 10. 23 제 21-500호

인쇄처 (주)삼일기획 전화 044)866-3011

---

사전 승인없이 보고서 내용의 무단전재·복제를 금함.  
구독문의 : (044) 415-2125(학술정보관)

연구보고 21-R25

# 이주배경 아동·청소년 행정자료 연계 및 법제화방안 연구

 **한국청소년정책연구원**  
National Youth Policy Institute

30147 세종특별자치시 시청대로370 세종국책연구단지  
사회정책동(D동) 한국청소년정책연구원 6/7층  
Social Policy Building, Sejong National Research Complex, 370,  
Sicheong-daero, Sejong-si, 30147, Korea  
**Tel.** 82-44-415-2114 **Fax.** 82-44-415-2369